

지방의회 조례 입법평가 도입을 위한 표준조례안 연구

차 현 숙 · 최 혜 선



입법평가 연구 13-24-⑥

지방의회 조례 입법평가 도입을 위한 표준조례안 연구

차 현 숙 · 최 혜 선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지방의회 조례 입법평가 도입을 위한 표준조례안 연구

A Study on Local Assembly's Introduction of Legislative Evaluation of Ordinances

연구자 : 차현숙(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Cha, Hyun-Sook

최혜선(교토대학교 객원연구원)

Choi, Hye-Seon

2013. 10. 15.

요 약 문

I. 배경 및 목적

- 지방자치 시행 이후 20여년의 세월이 지나 지방의회의 위상이 강화되고 역할이 커지고 있는 시점임
- 특히 최근 들어 지방의회의 조례 발의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반하여 제정조례의 실효성, 적합성, 목적달성 여부 및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의 개정 필요성 검토 등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보다 나은 지방 조례로의 도약을 위하여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제도의 도입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현재 조례 사후입법평가 조례안이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있는 실정임
- 이 연구는 향후 지속적으로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의회의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지방의회가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활용 가능한 표준조례안을 마련하여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II. 주요 내용

- 지방의회 조례의 관련 현황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관련 현황 검토
 -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제도 도입의 필요성 검토
- 일본의 조례 평가 현황 및 시사점
 - 일본의 조례 평가 현황 분석
 - 일본의 조례 평가를 통한 시사점 도출
- 조례 입법평가 관련 조례 및 관련 조례안에 대한 분석
 - 광주광역시 조례 분석
 - 관련 조례안 분석
- 표준조례안 마련 및 제시

III. 기대효과

- 조례 입법평가 도입시 활용가능한 표준조례안을 제시함으로써 조례 입법평가의 제도화를 도모하고, 조례 입법평가의 실질화를 통하여 좋은 조례가 제정·개정되는데 일조함

▶ 주제어 : 입법평가, 지방의회, 조례 입법평가, 사후적 입법평가, 사전적 입법평가, 표준조례안

Abstract

I . Background and Purpose

- As more than 20 years have been passed since enforcement of local autonomy, it's been the point at which the status of local assembly has been strengthened, and the role of that has been enlarged.
- It's been pointed out as problems that the effectiveness and suitability of the enacted ordinances, whether or not the purpose of those was achieved, the review of the need for revision of ordinances associated with the higher law amendment and etc. were not performed properly, whereas there is a tendency that recently in particular, ordinances initiative number of local assembly has increased dramatically.
- To overcome these problems and to leap for better local ordinances, the debate of the introduction of legislative evaluation system of ordinances has been activated, and there are currently local governments that enact the ordinance of Ex-post legislative evaluation of Ordinances.
- This study intends to prepare and present the applicable Ordinance Standard, when the local assembly tries to introduce

legislative evaluation of Ordinances in connection with local assembly's introduction of legislative evaluation of Ordinances the demand of which will be expected to continuously occur.

II. Main Contents

- The present condition of the ordinances of local assembly
 - the review of the present condition of the ordinances of local governments
 - the review of the need for the introduction of legislative evaluation of Ordinances
- The thought-provoking and present condition of the ordinances evaluation of Japan
 - the analysis of the present condition of the ordinances evaluation of Japan
 - the presentation of the thought-provoking through the ordinances evaluation of Japan
- The analysis of the ordinances related legislative evaluation of Ordinances, and of the related ordinances
 - the analysis of the ordinances of Gwangju Metropolitan city
 - the analysis of the related ordinances

- The preparation and presentation of Ordinance Standard

III. Expectation

- In introducing legislative evaluation of Ordinances, by presenting applicable Ordinance Standard, this study intends to promote the systematization of legislative evaluation of Ordinances, and to help good ordinances be enacted and amended through the practical legislative evaluation of Ordinances.

► Key Words : legislative evaluation, local assembly, legislative evaluation of ordinances, ex-post legislative evaluation, proactive legislative evaluation, ordinance standard

목 차

요 약 문	3
Abstract	5
제 1 장 서 론	13
제 1 절 연구의 목적	13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4
I. 연구의 범위	14
II. 연구방법	15
제 2 장 조례 입법평가제도 도입의 필요성	17
제 1 절 입법평가 개요	17
I. 입법평가의 개념	17
II. 입법평가의 목적 및 기능	18
III. 입법평가의 범위와 방법	19
제 2 절 조례 입법평가제도 도입의 필요성	20
I. 조례 발의 및 제정절차	20
II. 조례 관련 현황 분석	23
III. 지방의회 조례 제·개정 의 문제점	27
IV. 조례 입법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요건	29
제 3 절 현행 조례입법평가 관련 조례 및 조례안 분석	31
I. 광주광역시 조례 분석	31

II. 경기도의회 조례안	38
제 3 장 일본의 조례 평가	47
제 1 절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법무	47
I. 정책법무의 의의	47
II. 정책법무의 배경	48
III. 정책법무(론)의 제 영역	49
제 2 절 일본의 조례 평가 개관	54
I. 법제평가 시스템의 필요성	54
II. 법제평가의 의의와 종류	56
III. 자치입법평가 시스템	57
IV. 조례평가의 관점과 기준	61
V. 종합적 평가의 한계와 가능성	68
제 3 절 일본의 주요 지방자치단체의 평가 조례 분석	74
I. 가나가와현(神奈川県)	74
II. 가나가와현 사가미하라시(神奈川県 相模原市)	79
III. 북해도(北海道)	85
IV. 시즈오카시(静岡市)	88
V. 니가타시(新潟市)	88
제 4 절 조례 입법평가 제도화의 시사점	89
I. 일본 조례 평가의 과제와 전망	89
II. 조례평가를 위한 평가법무의 구조	97
III. 조례 입법평가 도입에의 시사점	99
제 4 장 지방의회 조례 입법평가 표준조례안	101

제 1 절 조례평가와 관련된 지표	101
I.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입안심사기준표	101
II.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제도 도입방안” 연구에서의 평가기준	111
제 2 절 조례 입법평가를 위한 지표와 표준조례안	113
I. 조례 입법평가 지표	114
II. 조례 입법평가 표준조례(안)	119
제 3 절 향후 과제	126
참 고 문 헌	127
 【부 록】	
부록 1 일본 도도부현 의회기본조례규정항목등 비교표	133
부록 2 가나가와현(神奈川県)의 조례평가 결과	141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지방자치가 우리나라에 정착되어 시행된 지 어느덧 20여년의 세월이 지나서 현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섰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지방의회 위상이 강화되고 그 역할 또한 활발해지면서 지방의회의원의 조례 발의 건수도 해마다 기록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규모가 큰 지방의회 경우 연간 의원 발의 조례 건수가 백여건을 상회하는 등 조례의 발의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반하여 제정조례의 실효성, 적합성, 목적달성 여부 및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조례의 개정 필요성 검토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보다 나은 지방 조례로의 도약을 위하여 최근 논의되고 있는 사항이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제도의 도입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광주광역시의회에서는 “광주광역시 조례 사후입법 평가조례안”이 발의 된 바 있다. 또한 경기도의회의 경우에도 제정조례 및 개정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영향분석(입법평가)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경기도의회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안”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등 지방의회 차원에서의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도입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심과는 달리 어떤 조례를 대상으로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평가를 할 것인지에 대한 학문적인 접근이나 세부적인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동 연구는 향후 지속적으로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의회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조례를 대상

으로 한 사전평가 및 사후평가 지표를 포함하여 지방의회가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표준조례안을 마련하여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I.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평가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표준조례안을 마련하여 제시하는 것을 최종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현재 지방의회 조례관련 일반적인 현황 및 조례 제·개정 과정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는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제도의 외형을 설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작업이다. 다음으로 조례평가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조례평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현재 조례 입법평가와 관련하여 조례를 만들어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할 예정인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안을 대상으로 하는 분석을 실시한다. 현행 조례 입법평가 관련 조례의 분석을 통하여 표준조례안의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나아가 보다 발전적인 안을 마련하여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연구 결과로 마련된 표준조례안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 지방의회의 관련 전문가 및 입법평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결과로 제시하게 될 표준조례안을 확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위하여 다음의 연구방법을 활용한다.

II. 연구방법

지방의회의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조례를 대상으로 한 사전평가 및 사후평가 지표를 포함하여 지방의회가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표준조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문헌연구, 비교법적 연구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먼저 문헌연구는 조례에 대한 평가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대상으로 1차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기존의 조례에 대한 다양한 평가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하여 조례입법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조례 입법평가 도입에 관한 시사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현재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지방의회의 조례 및 조례안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다. 2013년 9월 현재 광주광역시의회 조례 제 4251호로 2013년 7월1일 제정된 「광주광역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와 발의 예정인 경기도의회의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안」을 대상으로 분석한다.

또한 비교법적 연구의 일환으로 일본의 조례평가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지방별 실시 현황 및 조례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주요 지방의 사례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일본의 조례평가 현황 및 사례에 대한 분석의 결과를 통해서 표준조례안 마련에 있어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조례평가에 관한 외국의 사례를 비교분석하는데 있어서 일본만을 대상으로 비교법적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수시과제의 연구기간이 3개월로 비교적 짧고, 예산이 한정적이라는 데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 이미 조례평가를 도입하여 수년간 시행해 왔다는 점에서 일본의 조례평가 관련 현황 및 사례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여도 유사한 체계 속에서 가지고 있는 시사점을 다수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제1장 서론

마지막으로 조례 입안 관련 전문가 및 입법평가 전문가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 입법평가의 제도화 방안 마련 및 표준조례안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보다 발전적인 표준조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 2 장 조례 입법평가제도 도입의 필요성

제 1 절 입법평가 개요

I. 입법평가의 개념

일반적으로 말하는 입법평가란 입법 활동에 계획성을 구비하여 법규의 무절제한 증식을 억제하고 입법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솔함을 제거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입법현상을 평가함으로써 과학적인 입법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입법학의 방법론적 연구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¹⁾ 입법과정과 관련하여 입법평가를 살펴본다면 입법자가 “좋은 법률”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입법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참고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칭하여 입법평가라고 할 수 있다.²⁾

현재까지 입법평가의 개념은 연구의 목적이나 연구의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용어와 개념이 명확하게 정의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즉, 독일어권 국가에서는 입법평가(Gesetzesfolgenabschätzung), 영미권 국가에서는 규제영향평가(Regulatory Impact Assessment, Impact Assessment)와 같은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용어를 우리나라에 소개한 학자들이 사용한 용어들을 살펴보면 ‘입법평가’ 뿐만 아니라 ‘법률결과예측’ 또는 ‘법률결과평가’, ‘입법영향평가’, ‘입법영향분석’ 등의 용어를 보다 적합한 용어로서 주장하는 의견³⁾도 있다. 이 연구에서는 ‘입법평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1) 박영도, 입법평가제도에 관한 연구, 법제 2002. 3., 20면.

2) 입법평가의 개념 및 용어사용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현재까지도 공존하고 있다.

3) 입법평가의 개념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논의는 박영도, 입법학입문, 한국법제연구원(2008), 533-538쪽; 최윤철/홍완식, 입법평가제도의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법제처 정책보고서(2005), 17-18쪽; 김기표, 앞의 논문(2011), 12-16쪽 참조.

II. 입법평가의 목적 및 기능

법률의 제정 내지 개정은 한 사회의 변화를 담아내는 과정이며, 사회변화에 따른 법률의 변화는 수범자의 법적 안정성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게 마련이다. 따라서 입법자는 법률의 제정과 개정, 폐지 등 법률의 변화와 관련하여서 신중을 기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사회변화 및 그에 따른 법률의 변화 및 그 필요성을 충분히 분석하여 입법에 반영해야 한다. 즉 입법자에게 “좋은 법률”을 만들어야 하는 당위적 의무가 있고 그러한 의무에 따라서 입법자는 “좋은 법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이 “좋은 법률”인가에 대해서는 개개인의 가치관이나 이념에 따라 각각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좋은 법률”은 헌법정신을 구현하여 국민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화롭게 조정해주는 법을 말한다.⁴⁾ “좋은 법률”은 또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으며, 국가 발전을 선도하고, 국민의 법 생활에 기여하는 내용을 가진 법률들이 국회에서 입법에 관한 자유로운 의견 개진·의견 교환 및 대화와 타협·설득의 과정을 포함하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적절한 시기에 입법함으로써 만들어질 수 있다.⁵⁾ 이러한 “좋은 법률”을 만드는 것은 입법의 궁극적 목적이며, “좋은 법률”을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 입법평가의 목적이라 할 것이다.

입법평가란 법령의 제정·개정에 따른 영향을 사전 및 사후에 분석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입법평가제도는 법률의 입안부터 법률안 초안이 작성되고 법률안이 법률로서 시행된 후 국민에게 미치는 효과까지를 분석·평가하여 보다

4) 김기표, “입법영향평가의 제도화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학위논문(2011), 9쪽.

5) 임종훈/박수철, 입법과정론, 박영사(2006), 278쪽.

나은 대안을 제시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입법평가는 생활관계의 복잡화, 다변화에 따라 나타나고 있는 법률의 홍수현상으로 인한 규범의 수용성, 실효성 저하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전적으로는 적절한 예방적 수단으로서의 작용을 함과 동시에 사후적 평가를 통하여 입법 활동에 계획성을 갖추도록 하여 입법과정에서의 발생할 수 있는 경솔함을 제거하고, 정기적으로 입법의 현상을 검토하여 과학적인 입법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그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⁶⁾

Ⅲ. 입법평가의 범위와 방법

입법과정의 합리성·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려된 입법평가가 다양한 방법론을 통한 학제적 연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그 시간 및 예산 소요 등에 있어서 장시간 및 고비용을 요하는 결과로 나타나기도 하여서 모든 입법을 대상으로 입법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법률”을 만들기 위하여 입법평가가 필요하고 유용하다면 입법평가가 시간적·비용적으로 부담이 높은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평가의 대상이 되는 법률의 범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예를들자면 법안 자체가 높은 비용 부담을 전제로 하거나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등에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평가의 규모나 실시여부는 법규범의 강도·기능·중요성 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이렇게 입법평가의 대상이 되는 법률의 범위를 좁힘으로써 입법평가가 가지는 순기능은 살리면서 시간·비용적 부담으로 인하여 입법 내지 입법과정이 지나치게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6) 차현숙, “의원입법의 입법평가와 평가방법론에 관한 소고”, 입법평가연구 제3호, 한국법제연구원(2010), 91-92쪽.

제 2 절 조례 입법평가제도 도입의 필요성

이상으로 살펴본 입법평가를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조례에 대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조례 입법평가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조례 입법평가 제도 도입과 관련된 이러한 논의는 최근 조례 발의 건수의 증가 등 조례 제·개정환경의 변화에서 기인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조례 입법평가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서 먼저 조례 제정 절차 등에 대하여 개관하고,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발의 등에 관한 현황을 분석하여 보기로 한다.

I. 조례 발의 및 제정절차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는 자치입법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하여 제정된다. 우리 헌법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자치입법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은 제2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리하자면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자치법의 하나로서 조례의 제정은 헌법규정에 의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인 경우 개개의 법률에 근거규정이 없더라도 제정이 가능하지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 벌칙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발의, 지방의회의원들의 의원발의, 주민발의의 세 가지 형태로 제·개정안이 발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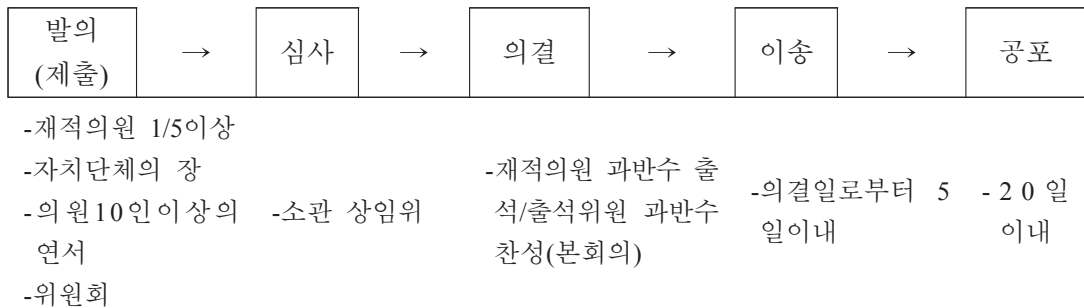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지방자치법 제66조제1항).

주민청구 조례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와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례가 발의되면 지방의회는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 주요 내용, 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66조의2).

조례제정의 절차를 도식화하여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조례 제정 절차>



조례제정의 절차에 따라 살펴보면 지방의회의 장은 조례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소관위원회에 회부한다. 소관위원회의 소속위원은 그 내용을 미리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수정안을 마련할 수 있다. 의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

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다음으로 위원회에 조례안이 회부되면 위원장은 이를 의사일정에 넣어 위원회의 회의시에 상정하고 심사한다. 조례안이 의사일정에 상정되면 취지설명서·조례안 기타 참고자료를 위원에게 배부한다.

조례안이 상정되면 제안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안 취지를 설명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조례안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명하고, 의원발의 조례안인 경우에는 발의한 의원이 설명하되 발의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이 대표하여 설명하며, 발의자가 설명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발의에 찬성한 의원이 대리하여 설명할 수 있다. 제안자의 조례 제정에 관한 취지 설명이 끝나면 소관 전문위원이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한다. 수정의견이 있을 때에는 조례안에 주서로 표시하여 의원들이 수정내용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하여 배포한다. 전문위원의 보고가 끝나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거친다. 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그 제안자를 대상으로 한다.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질의를 할 수 있다. 질의는 그 조례안에 관한 사항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찬·반 토론을 실시한다. 조례에 관련된 질의와 토론이 끝나면 표결을 통하여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한다.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된 조례는 5일안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되고, 이송을 받은 단체장이 20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면 효력을 발생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에 이의가 있을 때 재의를 요구할 수 있지만 조례안의 일부나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으며 재의에서 다시 의결되면 조례로서 확정된다.

II. 조례 관련 현황 분석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 동안에 지방의회별로 지방의회 의원 1인당 발의 건 수 및 조례 제·개정 건수를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전국 시도 현황(2007년~2012년)>

지자체명	구분	지방의회의원 1인당 조례 제·개정건수	지방의회의원 발의	지방의회의원
		(A÷B)	조례 제·개정건수(A)	정수(B)
		(단위 : 건)	(단위 : 건)	(단위 : 명)
서울특별시	2007	0.32	34	106
	2008	0.42	45	106
	2009	0.71	75	106
	2010	0.63	72	114
	2011	0.63	72	114
	2012	1.01	115	114
부산광역시	2007	0.32	15	47
	2008	0.34	16	47
	2009	0.47	22	47
	2010	0.3	16	53
	2011	0.87	46	53
	2012	0.87	46	53
대구광역시	2007	0.83	24	29
	2008	1.1	32	29
	2009	2.03	59	29
	2010	0.97	33	34
	2011	1.29	44	34
	2012	2.29	78	34

제 2 장 조례 입법평가제도 도입의 필요성

지자체명	구분	지방의회의원 1인당 조례 제·개정건수	지방의회의원 발의	지방의회의원
		(A÷B)	조례 제·개정건수(A)	정수(B)
		(단위 : 건)	(단위 : 건)	(단위 : 명)
인천광역시	2007	1.45	48	33
	2008	0.91	30	33
	2009	1.91	63	33
	2010	0.84	32	38
	2011	2.58	98	38
	2012	1.89	72	38
광주광역시	2007	1.37	26	19
	2008	0.68	13	19
	2009	2.11	40	19
	2010	1	26	26
	2011	1.65	43	26
	2012	2.77	72	26
대전광역시	2007	1.26	24	19
	2008	0.53	10	19
	2009	1.53	29	19
	2010	0.38	10	26
	2011	1.12	29	26
	2012	1.35	35	26
울산광역시	2007	0.79	15	19
	2008	0.37	7	19
	2009	1.47	28	19
	2010	0.5	13	26
	2011	0.58	15	26
	2012	0.5	13	26

제 2 절 조례 입법평가제도 도입의 필요성

지자체명	구분	지방의회의원 1인당 조례 제·개정건수	지방의회의원 발의	지방의회의원
		(A÷B)	조례 제·개정건수(A)	정수(B)
		(단위 : 건)	(단위 : 건)	(단위 : 명)
세종특별 자치시	2012	2	30	15
경기도	2007	0.42	50	119
	2008	0.44	52	119
	2009	0.73	87	119
	2010	0.37	49	131
	2011	0.73	96	131
	2012	0.93	122	131
강원도	2007	0.2	8	40
	2008	0.55	22	40
	2009	0.48	19	40
	2010	0.13	6	47
	2011	0.28	13	47
	2012	0.72	34	47
충청북도	2007	1.32	41	31
	2008	1.03	32	31
	2009	1.65	51	31
	2010	0.86	30	35
	2011	1.09	38	35
	2012	1.57	55	35
충청남도	2007	0.47	18	38
	2008	0.21	8	38
	2009	1.18	45	38
	2010	0.62	28	45
	2011	0.51	23	45
	2012	0.52	22	42

제 2 장 조례 입법평가제도 도입의 필요성

지자체명	구분	지방의회의원 1인당 조례 제·개정건수	지방의회의원 발의	지방의회의원
		(A÷B)	조례 제·개정건수(A)	정수(B)
		(단위 : 건)	(단위 : 건)	(단위 : 명)
전라북도	2007	0.34	13	38
	2008	0.34	13	38
	2009	0.55	21	38
	2010	0.3	13	43
	2011	1.16	50	43
	2012	0.37	16	43
전라남도	2007	0.31	16	51
	2008	0.88	45	51
	2009	0.76	39	51
	2010	0.47	29	62
	2011	1.15	71	62
	2012	1.05	65	62
경상북도	2007	0.27	15	55
	2008	0.27	15	55
	2009	0.27	15	55
	2010	0.25	16	63
	2011	0.33	21	63
	2012	0.68	43	63
경상남도	2007	0.32	17	53
	2008	0.36	19	53
	2009	0.94	50	53
	2010	0.24	14	59
	2011	0.68	40	59
	2012	0.9	53	59
제주특별 자치도	2007	0.78	32	41
	2008	0.78	32	41
	2009	0.56	23	41
	2010	0.44	18	41
	2011	0.78	32	41
	2012	0.78	32	41

위의 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의회 의원 1인당 조례 발의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서울시의회의 경우를 살펴보면 8대 시의회에서 발의된 691건의 조례안 중 의원발의가 419건이나 된다. 1인 당 평균 3.6건이며 역대 서울시의회 1인 당 평균 조례발의 건수를 살펴보면 6대는 0.2건 7대는 2.6건으로 비교해볼 때 증가폭이 크다고 할 것이다.⁷⁾ 이러한 수적 증가와 더불어 질적인 측면에 대한 문제점도 다양하게 제기⁸⁾되고 있어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제도 도입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는 것이다.

Ⅲ. 지방의회 조례 제·개정 의 문제점

현재 지방의회 조례의 제·개정 과정을 살펴보려면 조례의 종류에 따라 나누어 보아야 할 것이다. 통상적으로 조례는 법령과 달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개정되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가지고 있는 경우와 고유사무에 해당하는 조례로 나누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에 따라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의 도입 내지 제도화의 모양도 달라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조례는 법령의 위임여부에 따라서 위임조례와 자치조례로 나눌 수 있으며, 조례제정의 재량여부에 따라 필수조례와 임의조례로 나눌 수 있고, 주민과의 관계 여부에 따라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조례와 지방자치단체의 내부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나눌 수 있다.⁹⁾

7) 박종일, “진정한 지방자치로 가는 길”, 아시아경제, 2013년 6월 24일자,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3062406183441863> 참조(2013. 10. 2 검색)

8) 서보건,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지방의회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유럽헌법연구 제12호, 유럽헌법학회, 2012; 김병록, 조례제정권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토지공법연구 제43집, 한국토지공법학회, 2009 등

9) 한상우 외 3인,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제도 도입 방안, 제주발전연구원, 2012, 74면.

아래에서는 위임사무를 위한 조례 제·개정과 관련하여서는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 고유사무를 위한 조례 제·개정은 적합성 및 필요성의 측면에서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1. 위임사무 : 지속가능성 측면에서의 검토

위임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에서 국가나 상급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 사무인 단체위임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가 있다. 단체위임사무의 경우 일부비용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 처리되는 바 지방의회의 의결·동의·사무감독·회계감독의 범위에 속하나 보조금 등에 의하여 처리되는 기관위임사무의 경우에는 지방의회는 의견제시권한만을 가지고 사무처리에 간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위임사무에 대하여 규정하는 위임조례의 경우에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라는 한계를 가지고 출발하기 때문에 “법령의 범위 내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우선할 것이다. 이러한 제약 요소를 기반으로 평가를 수행하면 족하므로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통하여 평가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위임조례에 대한 개정에 따른 평가의 경우 지속가능성 측면의 검토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2. 고유사무 : 적합성 및 필요성 측면에서의 검토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란 지방자치단체가 그 존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사무를 말한다. 즉 헌법 제117조 1항에 규정된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 또는 지방자치법 제9조 1항에 규정된 「그 지방의 자치사무」를 말하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각종 사업의 경영 또는 시설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가 여기에 해당한다.

고유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치조례의 경우에는 적합성과 필요성 측면에서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IV. 조례 입법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요건

조례에 대하여 입법평가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누가 입법평가를 할 것인가의 문제인 입법평가의 주체 문제 및 사전평가·사후평가와 같이 평가의 시기에 관한 문제, 또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결과에 대하여 구속적인 효력을 부여할 것인가의 여부, 조례의 종류에 따라서 어떠한 방식으로 평가를 할 것인지의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1. 입법평가의 주체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를 지방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할 경우 자기시정의 결과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다만, 자기평가에 있어서 얼마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하여서는 의문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평가를 위한 제3의 기관을 설립하는 방안 또는 외부 기관에 위탁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2. 사전평가 또는 사후평가 : 평가의 시기

조례 제정 전에 사전적으로 입법평가를 실시할 것인지, 아니면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된 이후에 일정기간이 지난 후 입법평가를 실시할 것인지에 따라서 입법평가의 기준도 달라져야 할 것이다. 사전적인 평가의 경우에는 다양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체크사항을 확인하는 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지만 사후 평가의 경우에는 조례의 유효성, 실효성, 체계성, 효과성 등에 대한 다양한 평가를 수행하여야 조례의 계속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조례에 대한 평가시기에 적합한 입법평가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3. 조례의 종류에 따른 평가 기준 마련 여부

조례의 종류에 따라서 입법평가의 기준을 달리 마련할 것인가의 여부도 중요한 문제이다. 법령의 위임에 따른 조례의 경우 그 위임의 범위 등 위임의 한계에 따른 판단으로 족하게 될 것이지만, 고유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것인지, 적합한 것인지 등에 관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조례의 종류에 대응하는 입법평가의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결과 구속력 부여 여부

입법평가가 “좋은 법률(법령)이라는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라고 할 때, 입법평가에 대한 구속력은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입법평가에 대한 구속력을 인정하는 경우 의회 입법권 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의회 혹은 집행부가 스스로 입법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자기시정의 기회를 가진다는 측면에서는 입법평가에 대한 구속력을 일정 정도까지 인정하는 경우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다. 특히 의회가 자체적으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속력의 인정에 대한 필요성도 보다 커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의회가 자체적으로 입법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구속력의 범위나 한계 등에 관해서는 지방의회 의원간의 사전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제 3 절 현행 조례입법평가 관련 조례 및 조례안 분석

I. 광주광역시 조례 분석

조례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는 광주광역시의 조례는 다음과 같다.

<p>광주광역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p> <p>(제정) 2013-07-01 조례 제4251호</p> <p>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조례의 입법 목적과 목표가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평가하여 개선하도록 하는 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책 실현 도구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여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 2 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후 입법평가”란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목적의 실현성, 실효성 등을 평가하고 그 개선에 필요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p> <p>제 3 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의 집행기관으로서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사후 입법평가로 조례의 질적 향상과 입법목적의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 4 조(평가 대상) 사후 입법평가의 대상은 광주광역시 조례로 한다. 다만, 기관설치·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p> <p>제 5 조(평가 기준 및 시기) ① 사후 입법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입법 목적의 실현성 2. 비용과 편익 예측 등의 적정성 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여부 4. 예산 편성 및 집행 여부

- 5.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등 법적 정합성
 - 6. 인권·성평등 침해 또는 차별 여부
 - 7.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태
- ② 사후 입법평가는 2년마다 실시한다.

제 6 조(입법평가서의 작성) 제4조에 따라 평가 대상이 되는 조례의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를 검토하여 사후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작성하여 입법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제 7 조(입법평가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사후 입법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광주광역시 기획업무 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여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법률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등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임기는 사후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 작성이 완료되면 만료한다.

⑤ 위원회에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 8 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 1. 사후 입법평가 결과의 반영 및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
- 2. 사후 입법평가 결과통보서 작성 및 통보에 관한 사항
- 3. 그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9 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등에게 설명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평가결과 반영)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장으로부터 받은 사후 입법평가 결과통보서에 개선권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통지하고, 반영 여부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종합결과보고서 제출) 시장은 위원회의 사후 입법평가 결과통보서와 소관 부서의 개선권고안 반영 계획 등을 포함한 사후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를 해당 연도 6월 말까지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13.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주요 내용

광주광역시의 “광주광역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이하에서는 “광주광역시 입법평가 조례”로 약칭한다)”는 총 13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조는 목적 규정으로 광주광역시 입법평가 조례는 “광주광역시 조례의 입법 목적과 목표가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평가하여 개선하도록 하는 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책 실현 도구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여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제2조에서는 광주광역시 입법평가 조례는 사후입법평가로 한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입법평가의 대상은 광주광역시 조례 중에서 기관설치·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평가 대상을 확정하고 있다(제4조). 사후 입법평가는 2년마다 실시하며, ① 입법 목적의 실현성, ② 비용과 편익 예측 등의 적정성, ③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여부, ④ 예산 편성 및 집행 여부, ⑤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등 법적 정합성, ⑥ 인권·성평등 침해 또는 차별 여부,

⑦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태에 관한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제5조). 입법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광주광역시 기획업무 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여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법률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등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7조).

평가결과의 반영과 관련해서는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장으로부터 받은 사후 입법평가 결과통보서에 개선권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통지하고, 반영 여부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제10조).

2. 분석

(1) 사전적 입법평가의 부재

광주광역시 입법평가 조례는 입법평가를 사후 입법평가로 한정하여 수행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조례의 제정시 입법평가를 통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는 여지를 없애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조례에 대하여 사전적인 입법평가를 함으로써 위임조례 등의 경우에는 특히 간단한 평가를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입법적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입법평가위원회 관련

광주광역시 입법평가 조례 제7조에서는 시장이 입법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연간 발의 되는 조례의 건수에 대비하여 입법

평가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구성인지 논의가 더 필요하다. 조례 발의 건수 및 평가 대상 조례의 건수, 평가의 수준 등에 따라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식이 결정되어야만 실효적인 입법평가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위원회의 구성원을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법률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등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고 있어서 입법평가의 전문성 확보 및 다양한 관점에서의 평가 수행을 통한 더 좋은 입법 만들기라는 입법평가의 목적에서 살펴볼 때 다양한 전문가 집단을 참여시킬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3) 입법평가 기본자료의 작성

평가대상이 되는 조례의 주관부서의 장이 해당조례를 검토하여 사후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작성하여 입법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6조) 기본자료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 입법평가 조례에서는 밝히고 있지 않다. 입법평가를 위한 기본자료의 작성은 입법평가 절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단계라고 할 것인바, 기본자료에 포함되어야 하는 대강의 내용을 조례에서 밝혀주었다더라면 내실 있는 입법평가를 준비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4) 평가기간 및 조례일몰제 관련

조례일몰제도는 규제일몰제도에서 착안한 제도이다. 규제일몰제도는 제로베이스(zero base) 방식이라고도 한다. 규제를 신설할 때는 규제 상한선에 맞춰 기존의 규제를 폐지하는 제도인 규제총량제(規制總量制)와 함께 도입된 개념이다. 김대중 정부 때인 1998년부터 4년 동안 정부는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각종 규제를 폐지하였다.

그러나 규제가 폐지되면 새로운 규제가 만들어져 실질적인 규제는 줄어들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2004년 4월부터 규제총량제와 함께 도입되었다. 새로운 규제를 만들 때는 반드시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그 기한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폐기되는 제도를 일컫는다. 규제의 존속기한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안에서 설정하되, 원칙적으로 5년을 넘길 수 없다. 규제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해당 규제의 존속기한이 끝나기 1년 전까지 규제의 신설·강화의 절차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규제의 신설·강화와 존속기한을 연장할 때는 규제영향을 분석해 그 결과를 자체적으로 심사해야 하며,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때는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예를 들어 2004년 4월부터 시행된 주택거래 신고제에 따르면, 연립주택에 대해서는 2년간만 한시적으로 신고제를 운영하고, 필요하면 더 연장하기로 하였는데, 이렇듯 한시적으로 규제가 제한되는 제도가 규제일몰제이다. 그 외에 존속할 명백한 이유가 없는 규제도 5년을 넘길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5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효력이 상실된다.¹⁰⁾ 이와 같은 규제일몰제도를 조례에 도입한 것이 조례일몰제도라고 할 것이다. 조례일몰제도 역시 규제일몰제도와 유사하게 기간을 정해서 존속할 이유가 명백하지 않은 조례의 경우에 자동적으로 효력이 상실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광주광역시의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는 2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관설치·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및 시행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2년마다 조례의 효력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를 평가하고자 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를

10) 네이버 백과사전, 규제일몰제,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25204&cid=200000000&categoryId=200000205> (2013년 10월1일 검색) 참조.

대상으로 하는 입법평가라기 보다는 조례일몰제도와 닮아 있다고 할 것이다. 특히 입법평가서의 작성을 평가 대상이 되는 조례의 주관부서의 장에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조례일몰제와의 유사성이 확인된다. 일반적으로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입법평가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광주광역시의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제4조에서는 평가대상에서 위임조례를 제외하고 있어서 평가대상 조례가 한정적이라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다.

(5) 평가기준의 실효성 관련

광주광역시의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는 입법 목적의 실현성, 비용과 편익 예측 등의 적정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여부, 예산 편성 및 집행여부,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등 법적 적합성, 인권·성평등 침해 또는 차별 여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태를 기준으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광주광역시의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제4조에서는 평가대상에서 위임조례를 제외하고 있어서 자치조례만을 입법평가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할 것인바, 이 경우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제5조의 기준을 적용하는 조례는 자치조례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제5조의 기준에 따라 입법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도록 하고 있는데, 입법평가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법률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등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 조례가 예정하고 있는 입법평가위원회의 구성원들이 제5조의 기준을 적용하여 충분한 조례입법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II. 경기도의회 조례안

발의가 준비되고 있는 경기도의회의 조례안은 다음과 같다.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안					
(원미정의원 대표발의)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padding: 5px;">의 안</td> <td style="width: 100px;"></td> </tr> <tr> <td style="padding: 5px;">번호</td> <td></td> </tr> </table>	의 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13년 월 일 발 의 자 : 찬 성 자 :
의 안					
번호					
<p>1. 제정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자치법규에 대한 사전 및 사후 관리 뿐만 아니라, 의회 내 객관적 입법영향분석도 미흡한 실정임. 이에 따라 자치법규의 실효성 및 적합성, 목적 달성여부, 관련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재검토 등의 적절한 입법영향분석을 하려고 제정하는 것임. <p>2. 주요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경기도 자치법규에 대해 정기적으로 입법영향분석을 함으로써 실질적인 입법활동 지원 및 도민의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경기도에서 심의하는 제정조례를 입법영향분석대상으로 하되 전부개정조례도 제정조례로 보아 적용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입법영향분석지표에 따라 사전 입법영향분석은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실시하도록 하고, 사후 입법영향분석은 경기도의회 의원 입법 활동 지원 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함. 그리고 사후 입법영향분석 용역의 근거를 규정함(안 제4조 ~ 안 제6조) 라. 입법영향분석지표 수정에 대한 심의를 규정함(안 제7조) 마. 입법영향분석 결과 활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경기도 조례 제 호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안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자치법규에 대하여 그 시행효과와 목적달성 등을 분석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경기도의회 의원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며 나아가 경기도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조례에서 “입법영향분석”이란 제4조의 분석지표에 따라 자치법규의 실효성·적합성 등에 대하여 사전 또는 사후에 입법의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제 3 조(적용범위 등) ① 이 조례에 의한 사전 입법영향분석은 경기도에서 의원 발의하여 제출하거나 집행부에서 제출하여 제정되거나 전부 개정하는 조례를 대상으로 한다.

② 이 조례에 의한 사후 입법영향분석은 경기도에서 제정되거나 전부 개정된 조례 중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조례를 대상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사전·사후 입법영향분석 대상 조례 중 기관설치·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기술적 내용의 조례는 사전·사후 입법영향분석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 4 조(입법영향분석 기준) ① 사전 입법영향분석은 별표1을 기준으로 한다.

② 사후 입법영향분석은 별표2를 기준으로 한다.

제 5 조(사전 입법영향분석) ①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은 별표1을 기준으로 해당 조례에 대한 사전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상임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 입법영향분석의 결과를 해당 상임위원회 조례심의 전에 공표할 수 있다.

제 6 조(사후 입법영향분석) ① 사후 입법영향분석은 「경기도의회 의원 입법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기도의회 의원 입법 활동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별표2를 기준으로 실시한다.

② 위원회는 입법영향분석을 위하여 조례를 발의한 의원 및 제출한 집행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입법영향분석을 위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④ 위원회는 입법영향분석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 등에 의한 입법영향분석 용역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기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법영향분석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 7 조(입법영향분석기준 수정의 심의) 별표에서 정한 입법영향분석지표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입법영향분석지표를 추가하는 경우 위원회는 이를 심의할 수 있다.

제 8 조(입법영향분석 결과의 공표 및 활용 등) ① 제5조제1항의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은 조례를 발의한 의원 또는 제출한 집행부에 사전 입법영향분석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② 제6조제1항의 위원회는 사후 입법영향분석 후 해당 조례를 발의한 의원 또는 제출한 집행부에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③ 소관 상임위원회 및 위원회는 사전·사후 입법영향분석 결과를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사전 입법영향분석 결과가 충실히 반영된 경우, 이를 모범조례로 선정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사후 입법영향분석 결과에 따라 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한 조례를 선정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의장은 제4항에 따라 선정된 모범조례에 공적이 있는 사람과 제5항에 따른 조례를 개정 또는 폐지에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경기도의회 의원 입법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 9 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입법영향분석주기) ① 최초의 사후 입법영향분석은 이 조례 시행 후 2016년 12월 중에 시행한다.

② 사후 입법영향분석은 최초 사후 입법영향분석 이후 4년마다 매년 12월 중에 시행한다.

제 3 절 현행 조례입법평가 관련 조례 및 조례안 분석

[별표1] <사전 입법영향분석지표>

입법영향분석항목	세부항목	입법영향분석척도
1. 입법의 필요성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이거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가?	① 그렇다 ② 그렇지않다
	공익 및 정책실현에 필요한 조례인가?	① 그렇다 ② 그렇지않다
	조례로 규정해야 할 사항인가? (규칙으로 정하거나 국가에서 법령으로 정해야 할 사항은 아닌가?)	① 그렇다 ② 그렇지않다
2. 적법성 / 중복성	입안내용이 헌법 및 상위법령에 부합하는가?	① 그렇다 ② 그렇지않다
	중복되는 법령 및 다른 자치법규가 있는가?	① 그렇다 ② 그렇지않다
	중복되는 법령이나 자치법규가 있음에도 별도로 제정할 필요가 있는가?	① 그렇다 ② 그렇지않다 ③ 해당없음
3. 비용 / 의견수렴	비용이 많이 수반되어 재정건전성을 해칠 소지는 없는가?	① 그렇다 ② 그렇지않다
	비용추계는 이루어졌는가?	① 그렇다 ② 그렇지않다
	조례제정시 입법예고,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쳤는가?	① 그렇다 ② 그렇지않다
	조례시행에 따른 이해당사자의 의견 및 반대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였는가?	① 그렇다 ② 그렇지않다

[별표2] <사후 입법영향분석지표>

입법영향분석항목	세부항목	입법영향분석척도
1. 입법목적의 실현성	조례의 입법 당시 설정한 입법목적은 그 의도대로 수행되었거나 수행되고 있는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조례의 입법 당시 설정한 입법목적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새로운 사정이나 위험이 나타났거나 나타날 우려가 있는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2. 유효성 및 효율성	조례의 집행비용과 그로 인하여 얻은 편익은 입법당시 기획하였던 효과를 달성하고 있는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예상하지 못한 집행비용/부작용이 발생한 경우가 있는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제 2 장 조례 입법평가제도 도입의 필요성

입법영향분석항목	세부항목	입법영향분석척도
3. 법적합성	조례내용이 헌정질서 및 상위법령에 배치되거나 위임이 없음에도 무리하게 시행하고 있지는 않는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해당 근거법령이 없는 경우 자치사무로 인정될 수 있는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 또는 모순이나 대립적인 경우가 발생하지는 않았는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조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남녀(성별영향)/장애인(장애인차별금지) 등을 차별하는 효과를 야기하였거나 야기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4. 조례의 기여도	조례시행으로 도민의 후생복리의 개선에 영향을 미쳤는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지역현안 및 불편해소에 기여하였는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5. 조례와 도민의 관계	조례 혹은 조례의 집행에 대한 도민들의 평가는 긍정적인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조례에 대한 홍보가 충분하여 도민들이 조례에 대해 낯설게 느끼지 않도록 하였는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도민들은 조례의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민원사항이 제기된 적이 있는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조례가 특정지역이나 특정계층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동시에 다른 지역이나 다른 계층에 불리하게 작용한 경우가 있는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입법영향분석항목	세부항목	입법영향분석척도
	조례에 대한 개정 또는 폐지의 요구는 없었는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6. 조례의 필요성	조례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1. 주요내용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안」은 경기도 자치법규에 대해 정기적으로 입법영향분석을 함으로써 실질적인 입법활동 지원 및 도민의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의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안」은 경기도에서 심의하는 제정조례를 입법영향분석대상으로 하되 전부개정 조례도 제정조례로 보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입법영향분석지표에 따라 사전 입법영향분석은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실시하도록 하고, 사후 입법영향분석은 경기도의회 의원 입법 활동 지원 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사후 입법영향분석 용역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입법영향분석지표 수정에 대한 심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입법영향분석 결과 활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 분석

(1) 입법평가의 대상

경기도의회의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안」은 사전 입법평가의 경우 의원발의 제출 조례 및 집행부에서 제출하여 제정되거나 전부 개정하는 조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후 입법평가는 경기

도에서 제정되거나 전부 개정된 조례 중에서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조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기관설치·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기술적 내용의 조례는 입법평가의 대상 조례에서 제외하고 있다(조례안 제3조).

입법평가의 대상이 되는 조례를 지방의회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하는 경우까지 포괄하여 적용하고자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체 조례를 아우르는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례를 대상으로 사전 입법평가 및 사후 입법평가로 나누어 입법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전부 개정하는 조례를 사전 입법평가에 포함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입법평가의 기준 및 평가서 제시

사전 입법평가와 사후 입법평가에 대하여 별표로 별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광주광역시 조례와 비교하여 볼 때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전 입법평가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별표1을 살펴보면, 입법의 필요성, 적법성/중복성, 비용/의견수렴의 항목으로 나누어 세부지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하여 “① 그렇다”와 “② 그렇지 않다”의 척도로 응답하도록 구성하고 있다. 입법의 필요성에 대한 세부항목은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이거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가, 공익 및 정책실현에 필요한 조례인가, 조례로 규정해야 할 사항인가의 세 가지를 규율하고 있다.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인지와 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를 하나의 세부항목에서 묻고 있어서 하나의 항목에서 두 가지를 동시에 확인하도록 작성되어 있어서 항목에 따라서 약간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사후 입법평가에 대한 항목은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입법목적의 실현성, 유효성 및 효율성, 법적합성, 조례의 기여도, 조례와 도

민의 관계, 조례의 필요성에 대하여 세부항목을 두고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의 다섯 단계로 척도를 제시하여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조사에서 5점 척도로 제시되는 경우 “③ 보통이다”를 선택하는 항목이 많아질 우려가 있어서 평가자체가 가지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으며, 그러한 경우 평균값을 통한 분석을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척도에 대한 분석이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사후적으로 입법의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 이 조례안의 목적이므로 조례안의 영향에 대하여 분명하게 답변을 얻을 수 있도록 척도를 주는 방법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안」의 사후 입법평가의 세부항목을 분석하면 비교적 유효성을 가지는 항목들로 구성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조례의 명확성 및 필요성에 관한 세부적인 항목들의 추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세부적이고 자세한 사항은 제4장에서 제시하기로 한다.

제 3 장 일본의 조례 평가

제 1 절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법무

I. 정책법무의 의의

정책법무란 ‘정책(공공정책)’을 배려한 ‘법무(법률실무)’, 정책지향형의 법무를 의미하는 것이다. 정책법무의 정의에 대하여는 그 범위에 있어 다양한 의견이 있으나 ‘법을 정책실현의 수단으로 삼고, 이를 위해 어떠한 입법·법집행·쟁송평가가 요구되는가를 검토하고 실현하는 실무 및 이론 구조’¹¹⁾라는 정의에는 어느 정도의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¹²⁾

이 정의의 주된 논점은 다음의 3가지이다. 첫째, 법을 정책실현의 수단으로서 파악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물론 법의 목적·기능은 다양하며 사회정의의 실현, 인권 보장, 분쟁의 해결이라는 목적·기능도 거론되는데, 정책법무에서는 법이 가지는 정책실현이라는 목적 및 기능에 착안하여 또는 정책실현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을 거론하고, 수단으로서의 법의 방향성을 검토하려고 하는 것이다.¹³⁾ 둘

11) 磯崎 初仁, 分権時代の政策法務, 北海道町村会, 1999, 5頁。

12) 정책법무와 관련하여 유사한 개념으로 다음과 같은 제안이 있다. 정책법무는 ‘지자체법무’ 또는 ‘지자체법학’이라는 개념이 있다. 지자체법무를 ‘법적 관점 또는 법치주의 실현의 관점에서 본 지자체(직원)의 활동·업무 및 이에 관한 이론을 만드는 제활동(이론구성행위, 이론형성작업, 이론구성활동)’을 지칭하고 있다(木佐茂男、田中孝男). 또한, 정책법무와의 차이를 인식하여 지자체법무론은 ‘지자체가 스스로의 정책을 실현하고 또는 자립적으로 운영하기위해 어떠한 입법·법집행·쟁송평가가 요구되는가를 검토하고 실행하는 실무 및 이론의 구조’라고도 한다(磯崎 初仁). 한편, 정책법무는 ‘법정책학’ 또는 ‘정책법학’이라는 개념도 있다. ‘정책과정의 법적 관점의 제공과 정책실시를 위한 합리적인 법제도 설계’, ‘법해석학, 입법과정학, 법의 집행과정학 등을 넘어 응용학문으로서의 입법학’이라고도 한다(阿部泰隆).

13) 西尾 勝, 神野 直彦, 磯崎 初仁 『自治体改革 4 政策法務の新展開』, ぎょうせい, 2004, 3頁。

째, 입법·법집행·쟁송평가라는 3단계 영역을 대상으로 하여 정책실현을 위한 법무를 검토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법무의 프로세스는 크게 나누면 법을 만드는 단계, 만들어진 법을 집행하는 단계, 집행활동에 대한 제기되는 쟁송에 대응하고 법이 목적에 맞게 운용되는지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단계라고 말할 수 있는데, 각각의 단계가 정책실현을 위한 법무라는 의미를 더욱 중요시하기 위해 정책법무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셋째, 실무뿐만 아니라 이론의 양면에서 고려되는 것이다. 정책법무는 추상적인 이론의 구축보다도 실질적인 내용을 그 기초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각각의 실제 사례를 축적하는 것만이 아닌 실무의 축적을 일반적인 언어나 법칙으로 집약하여 이론으로 정립함으로써 다른 실무에도 응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실무와 이론을 융합·교류에 의해 정책법무(론)가 전개해 나가는 것이며, 실무와 이론은 ‘자동차의 양쪽 바퀴’라고 할 수 있다.¹⁴⁾

II. 정책법무의 배경

정책법무론이 중요하게 거론되는 이유와 배경으로는 거시적 관점에서 크게 정책화·분권화·자치화라는 3가지의 변화가 이야기 될 수 있다.

현대국가는 복지행정, 환경행정, 도시계획 등 행정기능이 확대되어 고도의 정책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행정기관의 활동에 관한 행정법규가 증대하는 것에 더하여 그 내용이 정책(공공정책)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정책법무’가 되었다. 여기에서의 정책(공공정책)이란 공공적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채용한 결정이나 활동의 지침을 말한다.¹⁵⁾ 이러한 정부의 결정이나 활동지침을 법의 형식으로 표현하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 법적 구속력을 가지

14) 西尾 勝, 神野 直彦, 磯崎 初仁 『自治体改革 4 政策法務の新展開』, ぎょうせい, 2004, 3頁。

15) 新藤 宗幸, 『解説 日本の公共政策』, 東京大学出版会, 2004, 2-3頁

도록 한 것이 정책지향의 법무이며, 법의 정책화라고 할 수 있다.

2000년에 시행된 「지방분권일괄법」에 의해 분권개혁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기관위임사무의 폐지와 국가 관여의 축소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해석권이 확대됨과 함께 조례제정권의 대상도 확대되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법적 권한을 활용하여 지역의 실정에 맞는 정책의 추진과 개성있는 지역 만들기를 추진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종래는 국가가 정책을 만들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집행하는 역할분담 하에 지방자치단체의 법무는 정책적인 방침·배려에서 벗어나 법률의 규정을 충실하게 집행해야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러한 고정관념을 불식하고 스스로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어떠한 법무를 실현하여야 하는가를 생각하고 실행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정책법무가 요청되고 주목되고 있다.

셋째, 정치행정의 자치화의 경향 및 요청이다. 정치행정을 하는데에 있어 주민참가, 주민·NPO와의 협동 등 주민자치의 보장이 요구된다. 현대사회에서는 국민과 주민의 가치관이 다양하고 선거 이외에서 그 의사를 정치행정에 반영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강하다. 이러한 주민참가는 주민에 친근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의 실정에 응해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점에서 자치화의 요청은 분권화의 요청으로 이어지게 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법무를 중심으로 주민참가나 주민·NPO와의 협동을 진행하기 위한 조직이나 주민투표등 주민의 자기결정(직접민주주의)의 조직을 어떻게 제도화하는가가 문제가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식으로 주민자치를 진행하기 위해 정책법무론이 요구되는 것이다.

Ⅲ. 정책법무(론)의 제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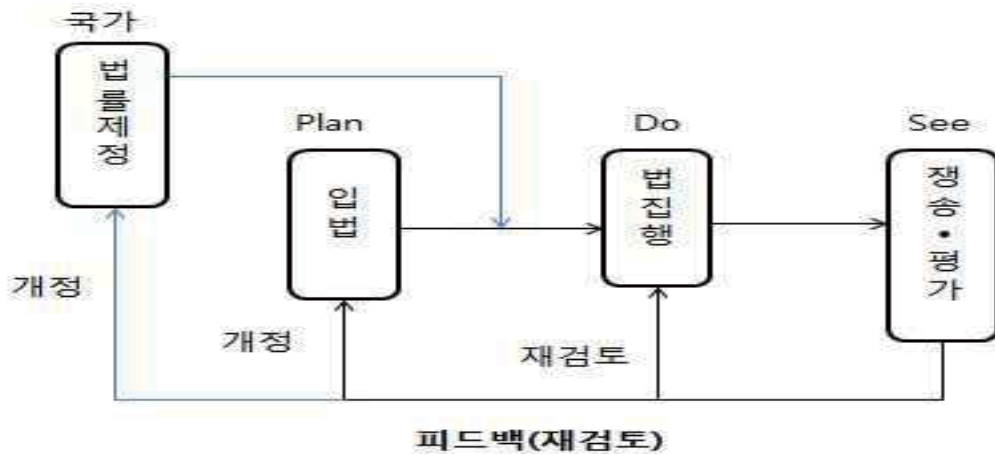
단계적 구분을 통해서 살펴보자면 법무의 프로세스를 3단계로 나누고 정책법무(론)도 이 3영역에 의해 구성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이해

가 쉬울 것이다. 즉, Plan(계획) - Do(실행) - See(평가)의 구분방식으로 입법 - 법 집행 - 재검토·평가의 3가지 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¹⁶⁾

1. 입법법무

정책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입법단계에서 얼마나 유효한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제도설계가 이루어지는가 하는 점이 중요하다. 이러한 단계는 국가의 경우는 법률이나 정령·성령을 제정하기 위해 단계이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는 단계이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정하는 정령의 경우는 국가가 입법단계를 담당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집행단계 이후를 담당하는 관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법무의 흐름>



정책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입법이 중요하고, 법을 적절하게 운용하고 각종 소송에 잘 대응한다고 하여도 입법의 방향에 문제가

16) 西尾 勝, 神野 直彦, 磯崎 初仁 『自治体改革 4 政策法務の新展開』, ぎょうせい, 2004, 9頁。

있다면 정책목적을 실현할 수 없고 관계자의 이해를 이끌어낼 수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정책법무론은 입법의 방향에 집중하는 것이며, 여기에 기존의 법률학과의 차이가 있다.

2. 집행법무

만들어진 법을 집행하는 단계에서도 정책실현을 위한 배려나 조치가 요구된다. 각각의 법에서 정한 내용은 일반적·추상적이므로 이를 해석하고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는 것은 집행기관의 재량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또한, 규제적인 법에서는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시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한정된 인력과 재원 등의 자원을 사용하여 어디까지 효과적인 적발·시정이 가능할지는 집행기관의 판단과 대응에 의해 달라진다. 집행법무에 대해서는 우선 법률학(행정법학)이 법의 해석에 대해서 규범적인 분석을 하는 것이다. 법률학은 개별의 법집행의 실태적인 분석만이 아닌 일반적·규범적인 이론의 구축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행정학이나 법사회학은 법의 집행과정에 중점을 두고 분석을 하고 있다. 이들 중에는 집행활동의 유효성이나 효율성에 착안한 연구가 있으며 이는 중요한 관점을 제공한다. 정책법무론은 유효성과 효율성이라는 양방향의 연구를 병행하여 전개할 필요가 있다.¹⁷⁾

3. 쟁송·평가법무

법집행과정에서 불허가, 명령 등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이에 불복하면 그 취소 등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이나 불복심사청구를 하게 된다. 이러한 쟁송에 대해서 집행기관으로서는 당해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과 근거 법률·조례가 적법한 것임을 주장하고 처분의 효과

17) 西尾 勝, 神野 直彦, 磯崎 初仁 『自治体改革 4 政策法務の新展開』, ぎょうせい, 2004, 11頁。

를 유지할 수 없다면 정책목적을 실현하는 것도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쟁송법무는 정책법무론의 중요한 영역이다.

또한 법집행의 결과를 위해 입법을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다. 평가의 결과, 입법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법 개정 등이 필요하게 되고 법집행에 문제가 있다면 집행의 방법이나 체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쟁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이를 계기로 하여 법제도나 법집행의 자체를 재검토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의미로 쟁송과 평가는 관련되어 있다. 법집행의 결과에 따라 법의 본연의 자세를 평가하고 이를 입법 단계나 법집행단계에서 피드백하는 것에 의해 보다 좋은 입법과 법집행으로 이어지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정책법무의 흐름은 순환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평가법무는 그 종결점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¹⁸⁾

4. 평가법무의 현황

정책평가 또는 행정평가에 대해서는 대다수 지방자치단체가 도입하고 있는데 조례 등의 법제도에 관한 평가를 제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예는 많지는 않다. 물론, 정책평가·행정평가의 일환으로서 조례의 내용이 평가대상이 되는 것은 있지만, 조례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법적 성격에 따라 평가를 하는 것은 많지 않다. 그 결과, 정책실현이라는 목표에 효과적이지 않은 조례나 위반행위가 많아지는 등의 실효성의 면에 있어 실패를 하고 있는 조례가 있어도 개정이나 폐지를 하지 아니하고 유지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조례 등에 의한 정책실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례 등의 시행상황을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례 등의 개정이나 집행방법의 재검토로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피드백의 순환적 구조가 기능하게 되는 데에는 평가의 구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18) 西尾 勝・神野 直彦・磯崎 初仁, 前掲書, 12頁。

이러한 조례 등의 평가에도 개개의 법률이나 조례를 평가하는 ‘입법평가’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전체나 어느 분야의 조례를 계획적으로 평가하는 ‘법제평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조례 등의 평가에 있어서 명확하게 평가를 하는 구조를 설계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 부칙에서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그 시행상황을 평가하고 재검토하는 것을 정해두는 것이 있다. 또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전체에 대해 시행일로부터 일정기간 후에 평가를 하는 구조나 매년 한가지의 분야를 선정하여 해당하는 조례를 평가하는 구조를 도입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구조를 지방자치단체의 요강에서 정해도 좋고, 이런 내용 자체를 조례로 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평가의 주체도 집행기관만이 아닌 의회가 하는 것과 전문가들이나 시민단체 등에 의한 제3자 평가를 도입하는 것도 좋다.¹⁹⁾

법률은 기본적으로 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제도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운용하는 데에 있어 스스로의 한계가 있다. 그러나 긴급하게 해결해야만 하는 전국 보편적인 사태가 아닌 경우 법률개정을 하는 것은 어렵다. 이러한 사태에 직면한 지방자치단체는 독자의 입법사실을 정하고 조례제정을 하게 된다. 조례에는 다양한 형태와 기능이 있는데 크게 나누면 법령을 집행하기 위한 법령사무조례²⁰⁾와 독자의 사무를 창설하고 대응하는 자율조례²¹⁾가 있다. 이 단계에서 ‘Do-See-Plan’의 과정이 형성되어 평가법무는 법률의 집행에서 조례제정으로 이어지고, 법무매니지먼트로서 중요한 단계가 된다. 더불어 조례를 제정한 후의 재평가는 법률집행과 조례집행의 쌍방이 대상이 되는 것에도 유의해야 한다.

19) 西尾 勝・神野 直彦・磯崎 初仁, 前掲書, 31頁。

20) 예를 들면, 주민기본대장을 적절하게 집행하고 개인정보를 엄격하게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쿠마모토시의 주민기본대장의 열람제한조례등이 있다.

21) 예를 들면, 마을만들기 조례, 러브호텔 규제 조례등 다양한 조례가 있다.

그리고 지역의 종합정책주체인 지방자치단체로서 지역에서 해결해야 하는 과제나 정책목표에 대해서 법률이 규율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독자의 조례를 제정·집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조례의 재검토로 이어지는 ‘Plan-Do-See’의 자기완결형 법무매니지먼트도 존재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분권개혁으로 이뤄진 법해석권과 조례제정권의 확대를 계기로 법률을 기계적으로 집행하는 것만이 아닌 독자적인 해석을 하는 것에 의해 법률집행의 개선, 조례제정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고 그 연결고리로서의 역할을 과하고 있는 것이 ‘평가법무’이다.²²⁾

제 2 절 일본의 조례 평가 개관

I. 법제평가 시스템의 필요성

일본에서 현재 정책평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의 ‘표준 장비’이다. 국가는 200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책평가법(행정기관이 시행하는 정책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성청에서 정책평가가 시행되고 있다. 정책평가의 목적은 ① 국민에 대한 행정의 설명책임을 철저히 하는 것, ② 국민을 위한 질 높은 행정을 실현하는 것, ③ 국민의 시점에서 성과중시의 행정으로의 전환을 위한 것이다. 또한, 자치단체에서도 미야기현, 북해도 등이 조례에 대해 정책평가·행정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입법과 관련하여는 정책평가법에 의거하여 국가가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규제의 사전평가²³⁾’가 있다.

22) 北村 喜宣·山口 道昭·出石 稔·磯崎 初仁, 『自治体政策法務』, 有斐閣, 2011年, 21頁。

23) ‘규제의 사전평가’는 제 외국에서의 규제영향분석(RIA)을 참고로 하여,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규제영향분석은 규제의 도입이나 수정시에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편익의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공표하는 것에 의해 규제제정과정에서 객관성과 투명성의 향상을 목표로 한다.

규제의 사전평가는 각종 규제가 국민의 권리·활동을 제한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서 부터, 행정기관이 법률 도는 정령에 의해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는 개정·폐지를 할 때, 규제에 대하여 효과와 부담을 비교하는 등의 사전평가를 의무로 하고, 그 결과를 정책결정의 소재로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평가가 비용과 효과의 면에 한정되어 있는 점과 실제 사전평가에서는 정량적 분석이 거의 행해지고 있지 않은 점 등의 문제가 있지만, 입법의 옳고 그름을 대상으로 사전평가를 하는 것이며, 자치단체에서는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것에서 조례(특히, 규제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는 참고가 된다.

한편, 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정책평가는 일반적으로 조례에 의거하여 시책과 사업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이며, 평가의 결과, 조례의 개정등이 필요하면 행해지는 모습으로 되어 있으므로 그에 한해 조례평가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조례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평가는 일부 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거의 실시하고 있지 않다.²⁴⁾

무엇보다 정책평가와 같이 조례평가를 실시하면 ‘우수조례’가 가능하여 조례평가의 기준에 적용하면 자동적으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기대를 할 수는 없다. 우수조례 여부의 유효성, 공평성 등 다양한 시점과 기분이 있으며, 하나의 척도로 결합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러한 시점과 관점은 유효성을 중시한다면 공평성이 경시되는 등 상호 대립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최종적으로는 정책적 판단(결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 이점에서 조례평가는 하나의 결론을 도출하는 도구가 아닌, 입법자(또는 제안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의해 적절한 판단을 촉진하는 것이며, 조례평가의 기준이나 절차도 아닌 행

24) 예외로, 가나가와현의 「조례의 재검토에 관한 요강」(2008년)에 의거하여 재검토와, 북해도의 「조례의 재검토에 관한 기본방침에 대해서」(2008년)에 의거하여 재검토하며, 요코하마시의 「재검토」(2009년도~)가 있다.

정직원의 ‘독선’이나 의회·수장의 ‘정치판단’만으로 조례가 만들어지는 무모함·위험성을 생각하면 조례평가의 틀은 중요하다.

II. 법제평가의 의의와 종류

지방자치단체의 법제평가는 자치단체에 관한 법제도를 일정기간 경과 후에 재검토하여 유지, 수정, 폐지의 대응을 하는 것이다. 입법시의 평가를 사전평가라고 한다면 법제평가는 사후평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입법에 관한 기획(Plan)·실시(Do)·평가(Check)·개선(Action)의 관리 단계의 차원에서 보면 ‘평가’의 단계에 해당한다. 또한 ‘개선’의 단계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²⁵⁾

법제평가에 대하여는 평가대상에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국가의 법률도 포함여부에 따라 2가지 형태로 분류한다.

1. 법률 및 자치입법평가형

일본에서 법제평가에 관한 최초의 문헌인 田中孝男(다나카 타카오)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의 법제 관리의 제 활동은 Plan-Do-See의 관리단계로 구성되며, 지방자치단체의 법제 관리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법제 집행에 관련되는 국가의 법률·정성령의 관리(법제정·법집행·법제평가)도 포함되는 것, ‘See’가 ‘법제평가’라는 용어에 해당하는 것, 법제평가는 넓은 의미에서의 행정절차에 속하고, 법제 관리단계의 중심이 되므로, 법제평가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자체에 편입되는 것이 요망된다고 하는 그 방법을 정리하는 작업도 하고 있다. 즉, 이러한

25) 田中孝男·木佐茂男, 『テキストブック自治体法務』、ぎょうせい、2004年、157頁。
“지방자치단체법의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법의 제정·집행의 활동결과를 그 입법목적·목표에 비추어 측정·평가하고, 평가의 결과를 다음 지방자치단체법의 제정시 또는 현재 회기의 목적·목표의 달성을 위해 수정활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다음 회기로 이어지는 것은 Plan-Do-Check의 See에서 Plan으로가는 것을 의미한다. 수정활동의 전개란 Plan-Do-Check-Action의 Check와 Action에 상당하는 것이다.”

분류방식에 의하면 법률도 지자체 법제평가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2. 자치입법평가형

법제평가를 자치입법의 조례 등에 한정하는 견해가 있다. 법제평가란 ‘지자체의 법제관리 사이클의 기획(Plan)·실시(Do)·평가(See)의 See의 부분이며, 이는 즉 조례 등의 제정(Plan), 운용(Do)에서 이를 재평가하고, 조례 등의 자치입법의 재검토를 통해 보다 좋은 제도도 향상시킨다고 하는 역할을 담당 한다.’²⁶⁾ 이러한 분류는 법제평가의 대상을 자치입법에 한정하는 것이다.

Ⅲ. 자치입법평가 시스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입법의 평가가 적절하게 시행되고 이것이 개선활동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조례의 사후평가기준, 진행관리 및 평가주체에 관해 적절한 시스템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시스템은 적절한 예규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시스템이 범규범에서 설정된다면 안정적인 법제평가 제도운영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과정 전체를 자치입법평가 시스템이라고 분류하고 있다.

1. 조례의 사후평가기준

일반적으로 개별조례는 일정기간 사회에서의 운용상황을 관찰 후, 재평가한다면 사전평가보다는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다.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기본조례에서 분야별기본조례·기별조례라고 하는 조례체계의 정비규정을 두는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또는 조례정비방침에 근거

26) 자치입법의 법제평가를 ‘협의의 법제평가’, 쟁송을 계기로 하는 법제평가를 포함하여 ‘광의의 법제평가’라고 한다.

하여 조례의 정비도 하고 있다. 이러한 조례체계에 관한 평가도 필요하다. 이는 조례체계평가라고 한다.

(1) 개별 조례 평가

개별조례의 사후평가는 조례의 사전평가와 같은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사전평가 기준으로서는 ① 필요성, ② 유효성, ③ 효율성, ④ 공평성, ⑤ 협동성(참가성), ⑥ 적법성의 기준이 제안되어 있다. ①부터 ⑥까지는 조례의 성립요건이며, 그 외의 항목은 ‘보다 좋은’ 또는 ‘우수한’ 조례의 평가기준이다. 또한 사후평가의 관점로서는 입법목적·목표평가, 제도내용평가, 법제기술평가, 조례의 운용평가라는 평가관점도 제시되어 있다.²⁷⁾ 개별조례평가에 관해서는 가나가와현이 「가나가와현 조례의 재검토에 관한 요강」을 제정하고(2008년 4월 시행), 모든 조례를 재검토 대상으로 하여 그중에서 일정부분은 ‘재검토조서’를 작성하고, ① 필요성, ② 유효성, ③ 효율성, ④ 기본방침적합성 및 ⑤ 적법성의 관점에서 재검토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²⁸⁾

(2) 조례 체계 평가

조례체계의 평가는 조례의 체계와 현황의 괴리를 측정하고 적절한 체계화를 진척시키는 활동이다. 세 가지 구조의 조례체계평가가 거론된다. 첫째, 어떠한 경우에 조례화하여야만 하는가라는 조례정비방침에 근거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다.²⁹⁾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시(神奈川県横須賀市), 가나가와현 야마토시(神奈川県大和市), 치바현(千葉県), 시즈오카현 시즈오카시(静岡県静岡市), 고치현(高知県) 등이 이러한 구조로 조례정비를 하고 있다. 이는 지역의 과제해결을 위해 조례를 제

27) 田中孝男, 「分権時代の法制評価を考える」, 地方自治の職員研修434号, 1999年, 44~45頁.

28) <http://www.pref.kanagawa.jp/osirase/01/0115/minaoshi/index.html> 참조.

29) 出石稔, 「自治立法の整備活用方針」, ガバナンス62号, 2006年, 118頁以下.

정하여 대응하는 경우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체계적인 조례제정을 진행하는 것이다. 둘째, 자치기본조례·분야별기본조례 및 개별조례의 피라미드형의 조례체계화를 실시하는 것이다. 북해도 니세코마치(北海道ニセコ町), 북해도 도마코마이시(北海道苫小牧市), 효고현 타카라즈카시(兵庫県宝塚市) 등의 자치기본조례에 이러한 유형의 규정이 있다. 셋째, 횡단적인 조례의 정합성인 종래의 법제집무는 이러한 기능을 담당해왔다고 생각된다. 즉, 조례의 횡단적인 검증을 실시하여 각각의 조례규정의 용어나 규정의 방식의 통일, 또는 사용료 등의 균형 등을 도모하는 것에 의해 조례체계의 정합성을 도모하는 것이다.

2. 조례의 진행 관리

조례의 평가개선이라는 법제평가활동을 관리하는 것을 조례의 진행 관리하고 칭한다. 개별조례의 진행관리의 방법으로는 조례의 재검토조항, 한시입법³⁰⁾, 평가기관설치조항 등이 있다. 이는 조례자체에 법제평가의 계기나 법제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을 내재시키는 조례를 자동 실효시키는 것 등에 의해 조례를 적정한 상태로 유지하는 방법이다. 한편, 조례체계의 진행관리는 보통은 법무담당조직이 중심이 되어 실시하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자치기본조례에서 조례체계의 정비조항을 가지고 자치기본조례의 진행관리에 관해서 평가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기관도 조례의 체계화의 진척상황을 평가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³¹⁾

3. 조례의 평가주체

조례의 평가주체로서는 해당자치단체의 행정, 주민 및 의회이다. 우선, 조례평가시스템의 구축은 행정이 주체로 되어 행해지는 것이 기

30) 일정기간 경과후에 자동적으로 실효되는 조례.

31) 시즈오카시나 북해도의 도마코마이시의 자치기본조례에 이에 해당한다.

대된다. 이 경우에 조례평가의 절차 ① 평가주체의 설정, ② 실시계획의 책정, ③ 정보·데이터의 수집, ④ 정보·데이터의 측정·분석, ⑤ 평가결과의 정리, ⑥ 평가결과의 공표, ⑦ 법의 제정·개정 등에의 반영³²⁾에 대하여 해당부서와 법무담당조직, 또는 기획담당조직등과의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하여 법제평가의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법무에 대해 조례의 제정, 집행과정의 감시, 법률·조례의 평가·재검토를 실시하는 것이 기대된다.³³⁾ 조례의 재검토조항은 집행기관에 의한 조례집행을 의회가 감시하는 방법으로서의 의의도 가지고 있다. 의회는 행정에 대하여 조례평가의 실시 및 평가의 결과를 설명하는 것을 의무로 부과할 수 있고, 그 평가결과를 심사하는 감시기능을 하여야 하며, 의회가 적극적으로 조례평가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주민은 조례 제정개폐청구라는 방법으로 조례의 평가주체인 것으로 되어 있다. 퍼블릭 코멘트 절차(의견공모절차)에 의한 의견제출, 심의회의에의 참가, 조례안 등의 작성 수탁 등에서 법제평가에 관여하고 있다.³⁴⁾ 주민자치의 원칙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조례평가의 구조를 갖추는 것이 요구된다.

4. 조례관리 시스템의 정비

법제평가를 실시하고 조례를 적정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규가 일원적으로 관리되어 공표되어 있는 것이 필수이다. 예규는 일반적으로 ‘조례’, ‘규칙’외에 훈령에 ‘규정’, 내규인 ‘요강’도 포함되지 않지만, 여기에서는 조례에 대한 것을 말한다. 예규관리체제의 기본으로 예규의 존재와 그 관할부서가 명확하게 되어 있는 것이 법제평가에

32) 自治体法務検定委員会編, 『自治体法務検定公式テキスト 政策法務編 平成23年度検定対応』第1法規、2010年、326頁。

33) 自治体法務検定委員会編, 前掲注 316-317頁。

34) 自治体法務検定委員会編, 前掲注 319-321頁。

있어 필수이다. 그리고 예규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일관성을 확보하고 이를 일원적으로 관리할 체제가 구축되어 있는 것이 법제평가의 기반이 된다.³⁵⁾

5. 법제평가시스템의 규범설정

법제평가라는 활동을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착시키고 안정적으로 법제평가시스템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³⁶⁾ 법제평가를 받아들인 행정평가시스템을 조례에 의해 실현하는 것도 생각될 수 있지만³⁷⁾, 자치기본조례의 제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정책법무의 내용으로서 법제평가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이 기대된다.³⁸⁾

IV. 조례평가의 관점과 기준

1. 조례평가의 관점

정책평가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조례평가에도 적용할 수 있다. 국가가 하는 정책평가는 필요성, 효율성, 유효성을 기본으로 하고, 정책의 성질에 따라서는 공평성의 관점이 있고, 게다가 이러한 평가를 근거로 우선성의 관점이 있다고 한다(정책평가 각부성 연합회의 2001:제2-2참조). 조례평가에 대해서도 이러한 관점을 기본으로 하여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조례는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해서 그 평가에 있어서는 주민표의 평등취급 등의 ‘공평성’은 불가결한 기준으로 생각되고, 적법

35) 법제평가에 필요한 예규관리체제의 구축에 대하여는 政策法務研究会、『政策法務の理論と実践』、第1法規、2003年、7239-7242頁。

36) 田中孝男, 「分権時代の法制評価を考える」、地方自治の職員研修434号、1999年、46頁。

37) 政策法務研究会、『政策法務の理論と実践』、第1法規、2003年、7271-7272頁。

38) 北村 喜宣・山口 道昭・出石 稔・磯崎 初仁、『自治体政策法務』、有斐閣、2011年、16頁。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으므로 ‘적법성’도 필수조건으로 생각된다. 또한, 자치입법인 조례의 경우는 주민의 참가나 NPO 등과의 협동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면 조례에 근거하여 시장이 동의처분을 한다던가 행정계획을 책정하는 것을 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주민의 의견을 듣고, NPO 등의 의견 제안을 요구하도록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익숙하지 않은 용어이지만 ‘협동성’이라는 기준을 추가해야 할 것이다. 역으로, ‘우선성’은 재정지출 등 한정된 자원 하에서는 중요하더라도 권한이라는 자원을 기초로 하는 입법의 경우에는 불가결하다고까지는 할 수 없다(필요서의 기준으로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법률학의 논의에서는 ‘합리성’이라는 개념이 사용되는 것이 많다. 예를 들면, 헌법소송에서는 위헌성의 판단에 있어서 ‘합리성의 기준’이 사용되고 있고, ‘입법사실’을 입법의 필요성과 합리성을 유지하는 사회적 사실이라고 정의한다. 그러나 ‘합리성’이라는 개념은 매우 넓어서 ‘합리적인 정책안’이 다수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이들을 비교·평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정책론에서는 사용하지 않으며 여기에서도 보다 분석적인 개념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이상에서, 조례평가의 일반적 기준으로서는 필요성, 유효성, 효율성, 공정성, 협동성, 적법성을 기준으로 삼는다.

2. 평가기준의 내용

(1) 필요성

필요성이란 해결하려는 과제에 대조하여 애초에 해당조례의 제정이 필요한가 아닌가를 정하는 기준이다. 조례시행에는 통상비용이 요구되므로, 만약 지역에서 문제가 발생되어 있어도 사인간의 조정이 가능하다면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할 필요는 없고, 요강이나 예산사업 등

조례 이외의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다면 그러한 방법으로도 충분하다. 특히, 규제조례는 사권의 제한을 수반하므로 그 필요성을 보다 진중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안된다.

애초에 조례의 내용은 커다란 목적과 수단에 의해 구성되지만 필요성은 주로 ‘목적’이 절적한가를 묻는 것이며, 이것이 흠결되지 않는 경우는 이하의 기준에 근거하여 평가·검토는 불필요하게 되므로, 필요성은 조례제정의 전제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의외로 검토가 불충분한 채로 조례의 내용문제로 관심이 쏠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필요성은 지역의 구체적인 실정에 근거한 것이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 조례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사실·자료(데이터나 사례)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입법의 필요성이나 합리성을 뒷받침하는 사회적 사실을 ‘입법사실’이라고 하는데, 입법사실은 우선 필요성을 보증하는 것으로서 필요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 필요성은 형사재판에서와 같은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조례로 제정하지 않은 경우의 피해발생의 개연성 내지 구체적인 가능성(우려)가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그렇지 않으면 복잡한 현재사회에 있어서 신속하고 적절하게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 간접흡연을 방지하기 위해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불특정의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이나 다수가 근무하는 사무소에 대해 흡연금지 조례의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에 대해 건강증진법(2002년 제정)에서 간접흡연 방지의무가 정해져 있는데, 재차 조례를 제정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개인의 도덕이나 에티켓의 문제이며 법이 개입해야 할 문제는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해서 조례의 필요성을 근거로 하기 위해서는 법률상의 노력 의무나 도덕률만으로는 간접흡연 방지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충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을 사실·자료에 기준하여 나타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간접흡연에 의해 어떠한 건강피해의 우려가 있는가, 연기나 냄새 등이 비흡연자에게 어떠한 불쾌감이나 불이익을 갖게 하는가, 대상시설에서 흡연(간접흡연)의 상황이 어떠한가 등에 대하여 데이터를 수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더하여 간접흡연과 건강피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의학적으로 충분한 증거가 나와 있지 않다는 지적도 있는데, 건강피해의 우려가 일정한 개연성 내지 구체적 가능성을 가진다는 것이 나타난다면 필요성의 보증으로서는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2) 유효성

유효성이란 해당조례의 목적 실현을 위해 어디까지 기여하는가, 문제의 해결에 어디까지 효과를 발휘되는가를 묻는 기준이다. 이러한 검토에 따라 조례의 ‘목적’이 설정되면 다음 조례의 ‘수단’이 문제로 되지만, 수단에 관해서는 우선, 그것이 목적의 실현에 어디까지 효과를 발휘할 것인가를 묻지 않으면 안된다.

이 경우 대상의 범위, 수단의 내용,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등의 내용 등이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한 검토에 있어서는 목적 실현의 정도를 정량적·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조례의 목적은 복합적이고 정성적으로 밖에 파악할 수 없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 실현의 정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어렵다. 여기에서 어떠한 대표적·대체적인 지표를 설정하여 그 변화를 측정·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만약 정량적으로 파악이 가능하다 하여도 이것을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효율성’과의 일체적인 평가는 어렵

다.39) 여기에서 ① 시계열 비교, ② 지방자치단체 간 비교, ③ 시물레이션, ④ 앙케이트, ⑤ 케이스스터디 등의 방법을 통해서 가능한 한 정량적·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요구된다.

<유효성평가 방법>40)

평가방법	내 용	실시 조건
① 시계열비교	시행 전 일정기간·시점의 상황과의 비교	시행 전의 상황 파악이 필요
② 지자체간 비교	조례를 제정하고 있지 않은 유사 지자체와 비교	유사 지자체의 정보가 필요
③ 시물레이션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경우를 상정하여 비교	시물레이션이 필요
④ 앙케이트 방법	관계자의 인식·만족도를 파악	앙케이트의 기간·비용이 필요
⑤ 케이스스터디	해당사례를 유출하여 조례의 영향을 분석	적절한 사례가 필요

더불어, 행정법의 분야에서는 법령의 ‘실효성 확보 방법’의 문제가 논해지고 있다. 이것은 행정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시 말해 행정법규 위반행위를 억제 및 시정하기 위해 어떠한 대응을 해야 하는가, 이를 위해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를 법적을 검토하는 것이며, 형벌, 행정상의 강제집행, 이름 공표 등의 조치에 대해 논의되고 있다. 이 검토는 주로 유효성에 관한 검토를 말한다. 이 검토를 참고로 하

39) 국가의 ‘규제의 사전평가’에서는 편익의 종류로서 안전성의 향상, 환경의 개선, 자원의 확보, 생활의 질 및 건강의 향상, 편의성의 향상 등에 집중하고 있다. 우선 규제의 목적에서 정하고 있는 편익이나 그것에 부연되어 얻어지는 편익을 정성적으로 기술하고, 다음으로 그것들이 규제전의 상태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는가를 가능한 정량적으로 기술하고, 금액환산이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금액단위로 표현하고, 금액환산의 방법으로서 간접시장법, 표명선호법, 편익이전법의 세 가지를 표현하여 참고로 한다. 규제의 정책평가에 관한 연구회 2007 : 제2부 1 (7) 참조.

40) 磯崎 初仁, 自治体政策法務講義, 第一法規株式会社, 2012, 99頁.

면서 여기에서는 권리제한을 수반하지 않는 조례를 포함해 보다 넓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3) 효율성

효율성은 해당 조례의 집행에 따라 어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는가, 같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보다 적은 비용으로도 가능한 수단은 없는가를 묻는 기준이다. 목적 실현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가, 시행을 위한 인건비, 급부비 등의 비용이 방대하다면 우수한 조례라고는 말할 수 없다. 여기에서의 비용에는 조례운용의 집행기관에 있어서 내부적 비용과 주민 등의 조례의 대상자나 사회전체에서 발생하는 외부적 비용이 있다. 내부적 비용에는 조례를 집행하기 위해 직원의 인건비, 보조금 등의 사업비, 사무비 등이 있다. 외부적 비용에는 주민이나 기업이 조례를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정비 등의 비용, 규제 등이 없으면 얻을 수 있는 이익(일실이익), 이것들이 고용이나 지역경제에 부여하는 악영향 등이 있다.

효율성의 평가에 대해서는 다른 기준과 비교한다면 정량적인 방법을 활용하기 쉽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내부적 비용은 금액(화폐가치)로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에 외부적 비용은 그 대상자가 폭넓고 사회적인 영향도 포함하여 정량적인 방법을 취하더라도 추계에 머무르는 것이 많고, 정성적인 방법으로 파악·이해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도 적지 않다.

유효성과 효율성은 어느 한쪽을 강조하면 다른 한쪽이 약화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 두 요소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간접흡연방지 조례에서 간접흡연방지의 효과를 강조하여 ‘유효성’을 높이려고 한다면 소규모의 공공시설이나 사무소 등에도 대상을 확대한 다던지 관리자에 대한 철저한 지도나 엄격한 처분을 하는 제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렇게 하면 지방자치단체측의 인건비나 사업

비가 많이 소요되고 관리자의 시설정비 등의 부담도 증가하고, ‘효율성’이 훼손된다. 역으로, 이러한 비용을 저감시키면 간접흡연 방지라는 목적을 실현을 어느 정도 희생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조례 만들기의 초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4) 공평성

공평성은 해당 조례의 목적에 비추어 조례에 의한 효과나 비용이 공평하게 배분되어 있는가, 평등하게 취급되고 있는가를 묻는 기준이다. 조례는 공공의 룰이므로 단순히 목적을 실현하면 되는 것이 아닌 그 수단이 주민이나 사업자에 있어 공평할 것, 즉 합리성이 없는 불평등한 취급이 없어야 한다. 이것도 주로 조례의 ‘수단’에 관한 기준이라고 한다.

어떠한 이익배분과 권리제한이 ‘공평’한가는 어려운문제이다. 이익이나 부담이 각각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배분되는 것이 공평하다는 경우(객관적 평등)이 있으며, 주민이나 사업자의 수입, 자산, 연령 등의 속성에 따라 배분되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주관적 평등), 배분의 결과보다 그 기회가 평등하게 보장되어 있는가가 공평하다고 생각되는 경우(기회적 평등)도 있다. 조례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복수의 시점에서 공평성을 검토하여 입법자의 판단에 맡길 필요가 있다. 또한, 이 평가는 정성적 평가가 된다.

예를 들면, 간접흡연 방지 조례의 경우는 흡연자의 권리·이익을 필요이상으로 제한하는 내용은 아닌가, 대상 시설의 관리자에게 과도한 부담·제한을 부가시키는 것은 아닌가, 대상 시설과 그 이외의 시설에서 합리성이 없는 불평등한 취급이 없는가 등이 문제가 된다.

(5) 협동성

협동성은 조례의 구조에서 주민이나 NPO(Non-Profit Organization) 등의 참가와 협력을 어디까지 편입하고 존중하고 있는가를 묻는 기준이다. 조례가 지역사회 룰인 이상, 그 구조에서 주민과 NPO의 의견을

반영시키거나 그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지역의 실정을 꼼꼼히 반영할 수 있고, 주민과의 사이에 신뢰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물론, 조례의 목적과 내용에 따라서는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목적 실현과 비용에 큰 변화가 없다면 협동의 구조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기준은 일반적인 정책평가나 ‘규제의 사전평가’에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익숙한 개념은 아니지만, 조례평가의 기준으로서 제안할 수 있으며, 이 기준도 정성적 평가이다.

예를 들면, 간접흡연방지조례의 경우는 조례에서 주민에게 지역사회에서 간접흡연방지의 취급을 진행하는 역할과 책무를 정하고 간접흡연방지를 추진하는 협의조직의 설치 등에 의해 봉사단체나 커뮤니티 조직의 자발적인 조직을 촉구하는 것이다(다만, 이러한 주민동원형의 구조에는 행정의 하청화 및 ‘상호감시사회화’의 우려도 있어 진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6) 적법성

적법성이란 해당 조례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위법이 되지 않는가, 법률이나 다른 조례와의 정합성이 확보되어 있는가를 묻는 기준이다. 조례의 내용이 우수하여도 위법한 것이라면 효력이 없으므로 조례의 최저한의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조례의 목적과 수단을 포함한 전체적인 평가이며, 기본적으로는 적법한가 위법한가의 양자택일형의 평가가 된다(다만, 적법한가 아닌가가 미묘한 경우에는 재판을 할 경우 적법판단 가능성의 높고 낮음의 문제가 된다). 이러한 적법성 평가는 정성적 평가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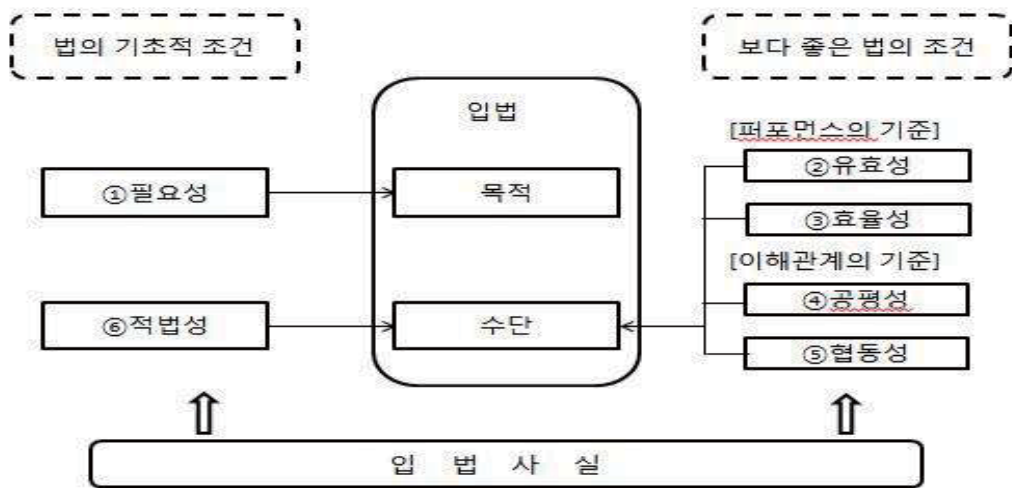
V. 종합적 평가의 한계와 가능성

조례를 평가하는데 있어 앞서 서술한 6개의 항목을 기준으로 한 평가를 종합하여 판단하게 된다. 이러한 6항목 기준은 정성적 평가에

해당하는 것이 많고 정량화할 수 있어도 그 척도가 다르므로, 이를 단순히 합산하여 하나의 결론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유효성의 면에서는 우수하지만 효율성면에서는 부족한 조례가 있는 반면, 효율성의 면에서는 우수하지만 공평성에 문제가 있는 조례도 있다. 이러한 평가결과를 통해 어떠한 기준을 어느 정도 중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면적인 검토를 요하며, 최종적으로는 입법자(제안단계에서는 제안자)의 판단에 따라 다르다.

무엇보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조례자체가 불필요하게 되고, 적법성에 대해서는 위법인 조례는 만들 수 없다는 의미로 필요불가결의 기초적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유효성과 효율성은 두 항목이 일체되는 존재이며, 조례의 ‘성능’에 관한 기준이라 할 수 있다. 공평성과 협동성은 누구에게 어떠한 수익·부담이나 역할을 부여하는 가에 관한 기준이며, 단적으로 말하면 ‘관계자 조정’에 관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우수조례의 조건>⁴¹⁾



41) 磯崎 初仁, 自治体政策法務講義, 第一法規株式会社, 2012, 103頁。

무엇보다도 어떤 조례안을 작성한 경우 상기 열거한 기준으로 조례의 평가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으로 ‘이 조례안은 유효성 면에서는 우수하지만, 효율성에서는 문제가 있다’라는 등의 해당 조례안의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고, ‘협동성이나 적법성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개선이 필요하다’와 같은 조례안을 수정하는 계기가 된다.⁴²⁾

또한, 어떤 조례안(혹은 대체안)을 설정하여 상호를 비교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 행정실무에서는 검토의 단계에서 의회의 반응 등을 예상하여 삭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많으며, 처음부터 1개의 조례안 내지 소수의 조례안밖에 없으면 충분한 평가·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다.

특히, 평가에 있어서 정량적인 분석은 어려우므로, 당면한 쉬운 방법으로 실시하는 것이 생각된다. 예를 들면, 6항목의 기준에서 이해득실을 검토하여 ◎우수, ○문제없음, △약간 문제 있음, ×문제 있음의 간단한 평가를 하고, 각각 5점 만점으로 평가하고 총점을 산출해보는 방법이 생각된다(다만, 이 경우의 평점은 5단계로 표시하고, 기준에 있어 중요도도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총점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조례의 종합적 평가 이미지(간접흡연금지 조례의 경우)>⁴³⁾

조례안	조례안의 내용	유효성	효율성	공평성	협동성	적법성	종합 평가
A안	시설관리자에 대한 행정지도를 정한 조례안	△	○	△	○	◎	불채용
B안	시설관리자의 법적의무를 정한 조례안	△	○	△	○	○	불채용
C안	시설관리자와 이용자에게 법적의무+벌칙을 정한 조례안	○	△	○	○	△	불채용

42) 磯崎 初仁, 自治体政策法務講義, 第一法規株式会社, 2012, 105頁。

43) 磯崎 初仁, 自治体政策法務講義, 第一法規株式会社, 2012, 105頁。

조례안	조례안의 내용	유효성	효율성	공평성	협동성	적법성	종합 평가
D안	시설관리자와 이용자에게 법적의무+벌칙+시정명령등을 정한 조례안	◎	△	○	○	△	채용

◎매우 우수함, ○우수함, △약간 문제 있음, ×문제 있음

특히, 집행의 결과 등의 데이터가 없는 사전평가의 경우에는 우선 시도해보고, 그 정보를 관계자들이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례시행 후의 사후평가에 있어서는 일정한 데이터에 근거한 평가가 요구된다. 이 경우는 일정한 점검항목을 설정하여 각 항목별 평가·재검토를 진행하여야 한다. 사전평가시의 점검항목은 아래의 표와 같다.

<조례평가의 점검사항(사후평가시의 표준례)>⁴⁴⁾

기 준	점검항목	소 재 (입법사실 등)	주된 적용 대상	성질 위치
1. 필요성	① 조례의 목적은 현시점에서 적절인가 ② 조례가 해결하려고한 문제는 현시점에서 존재하고 있는가(입법사실 확인) ③ 제정 후에 같은 법률이나 제도가 만들어져 있지는 않은가 ④ 사인간의 자율노력이나 민사절차에 의한 대응의 가능성이 제기되지 않았는가 등	① 목적에 관한 사회상황 ② 과제에 관한 사회상황 ③ 법령의 제정 등의 상황 ④ 사인간의 제도 등의 상황	• 조례의 목적	조례제정의 초전조건

44) 磯崎 初仁, 自治体政策法務講義, 第一法規株式会社, 2012, 104頁; 北村 喜宣・山口道昭・出石 稔・磯崎 初仁, 自治体政策法務 - 地域特性に適合した法環境の創造, 有斐閣, 2011, 415頁。磯崎 初仁교수가 설정한 6가지 기준과 이에 대해 평가한 山本博史교수의 정리를 종합하여 재정리.

제 3 장 일본의 조례 평가

기 준	점검항목	소 재 (입법사실 등)	주된 적용 대상	성질 위치
2. 유효성	① 과제의 상황에 변화가 생기지 않았는가,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예방, 시정, 개선)되고 있는가 ② (목표가 명확한 경우) 그 목표를 어느 정도 실현할 수 있는가 ③ [규제조례의 경우] 위반행위가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는가, 영성한 법(ザル法)은 아닌가 ④ [급부조례의 경우] 주민 등이 제도를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는가 ⑤ 문제의 해결이 조례에 의한 효과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인과관계)	①~④조례의 시행실적, 각종 통계, 조사 결과 등 【기초정보】 • 조례에 근거한 처분·행위 건수 등 • 위반행위 건수 【응용정보】 • 과거 상황의 데이터 • 타 지자체의 데이터 • 주민 등의 양케이트 결과 • 케이스스터디의 결과 등	• 채용하는 행정절차	‘성능’의 시점에서 ‘우수조례’가 되기 위한 기준
3. 효율성	① 내부 비용(재정부담)이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는가 • 사업비(보조금, 시설정비, 의식계몽 등) • 운영비(사무소 운영비, 용구비, 여비 등) • 인건비(담당직원, 관리직의 급여 등) ② 외부비용(사회적 불경제)이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는가 • 대상자의 비용(지출한 비용, 과실이익) • 비대상자의 비용(가격의 상승)	① 예산서·결산서, 직원 정수관리 데이터 등 ② 사업자양케이트, 케이스스터디, 사회통계 등		

기준	점검항목	소재 (입법사실 등)	주된 적용 대상	성질 위치
4. 공평성	① 특정의 대상자·지역·단체 등에 과대한 부담이나 이득이 발생하고 있지 않은가 ② 주민·관계자간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가 ③ 대상자·관계자로부터 불만이나 소송제기는 없는가	① 조례의 시행실적, 각종 통계 ② 주민등의 의견, 앙케이트 ③ 불만제기, 소송제기 등의 상황		
5. 협동성	① [주민참가형의 규정이 있는 경우] 이것이 기능하고 있는가, 어느 정도의 실적이 있는가 ② 조례의 집행에 주민이나 어느정도 NPO의 참여·협력하고 있는가 ③ 새로운 주민참가나 주민협동을 도입할 가능성은 없는가 ④ 주민으로부터 불만이나 상담은 있는가, 이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① 조례 등의 시행상황을 자료(의견서의 수, 참가자 수 등) ② 조례시행에 대한 주민, NPO의 참가·협력 상황 ③ 직원·주민 등에 대한 청취 ④ 불만 등의 상황, 직원에 대한 청취		‘관계자 조정’의 시점에서 ‘우수조례’가 되기 위한 기준
6. 적법성	① 주민·사업자의 권리·이익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지 않은가, 예상이상의 부담이 발생하고 있지 않은가 ② 새로 제정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가, 최근판례의 비추어 위법의 의심이 발생되지 않는가 ③ 행정소송이나 불복심사가 제기되어 있지 않은가 ④ 사법절차로 인해 조례의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은 없는가	① 주민의 의견 ② 관계 법령, 판례 등 ③ 소송, 불복심사의 상황	• 조례의 목적 • 채용하는 행정절차	조례 제정의 전제조건

제 3 절 일본의 주요 지방자치단체의 평가 조례 분석

최근 조례에 대한 재검토(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아직은 많지 않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을 각각의 평가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 조례평가를 시행하고 있는 사례들을 살펴보기로 한다.⁴⁵⁾

I. 가나가와현(神奈川県)

가나가와현(神奈川県)⁴⁶⁾에서는 「조례의 검토에 관한 요강」을 제정(2008년)하고 2008년 4월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이 요강에 의해 가나가와현의 모든 조례(의회 관계를 제외)는 원칙적으로 5년마다 재검토를 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제도도입의 초기에는 2010년 3월말까지 2년간은 거의 모든 조례에 대해 최초 조례 재검토를 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현재는 이 기한 내에 조례의 재검토를 하고 개정이 필요한 조례에 대하여는 순차 개정작업을 하고 있다.

1. 제도 도입의 배경 및 검토의 경위

가나가와현에서는 2004년에 ‘행정시스템개혁중기방침’을 정하고 행정시스템개혁을 추진하였다. 이 당시의 가나가와현지사였던 마츠자와 지사는 재선을 위한 선거에서 공약으로 스마트 현청만들기를 정하고 행

45) 이와 관련하여 일본 도도부현 의회의 기본조례 규정항목 관련 비교표를 부록 1에 첨부하였다. 주요 도도부현의 일반적인 조례의 규정항목 및 재검토 규정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것은 본 보고서의 부록 1 참조.

46) 가나가와현의 조례평가 결과는 본 보고서의 부록 2에 첨부하였다. 가나가와현의 조례 재검토 현황 및 관련 조례의 재검토 조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부록 2를 참조할 것.

정개혁의 조직을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일정기간마다 조례의 재검토를 하는 즉, ‘조례 선셋시스템의 도입’을 선거공약으로 주요 선거공약으로 삼았다.

마츠자와 지사는 재선 후 2004년 6월에 현 의회에서 이 선셋시스템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정된 가나가와현의 조례의 필요성 및 규정내용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하고, 또한 법률 개정 및 사회상황의 변화에 비추어 적시개폐를 해오고 있지만, 한번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전체에 대해 재검토나 검토가 좀처럼 행해지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며, “이에 조례가 항상 시대에 합치되도록 일정기간마다 재검토를 하고, 폐지를 포함한 검토를 반드시 하도록 제도를 도입하고 싶다”라는 발언을 하였다. 이러한 방침은 동년 7월에 「행정시스템 개혁 기본방침」에서 업무프로세스 개혁의 일환으로서 「조례 및 제도 등에 대해서 재검토하고, 목적을 달성한 것 및 시대에 부합하지 않은 것은 폐지를 포함하여 검토를 하는 형태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조례선셋 시스템의 도입에 대하여 법령조사사무를 소관하고 있는 법무문서과를 중심으로 검토가 시작되었고, 검토에는 현재의 신청에서 조례조사를 하는 것과 함께 다른 도도부현의 상황과약도 하였다. 현의 청내조사는 2007년 5월과 9월에 실시되었으며, 9월 조사시의 가나가와현 조례는 329개로 조사의 결과, 현민에의 영향 등 조례의 성격에 맞게 분류를 하였는데, 80여개의 조례가 현민 또는 현민 생활에 직접영향이 있는 조례로 파악되었다. 또한, 다른 도도부현의 상황으로서는 개개의 조례 중에서 일정기간 후에 재검토를 실시하는 취지의 규정을 정하고 있는 사례와 조례 중에서 실효규정을 두고서 재검토를 실시하지 않으면 폐지하는 것으로 되는 사례도 파악되었다. 그러나 통일적인 일정한 규칙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조례전체의 재검토를 실시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사례는 없었다.

법무문서과에서는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조례의 재검토의 구조를 구성하면서 이에 관한 과제 등에 대해서 현민 또는 현민생활에 직접 영향이 있는 조례 등을 소관하는 과를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공청을 실시하고 원안을 정리하여 2008년 2월 현의회에서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요강을 제정하여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2. 제도 도입 시에 문제가 되었던 주된 논점

이 제도를 도입하는 데에 있어서 ① 대상조례의 범위, ② 재검토의 관점, ③ 현민, 지식인, 의회 등 당국이외의 관련된 사람들이 주된 논점이 되었다.

우선, ‘대상조례의 범위’는 정책적인 조례로서 당연히 재검토의 대상이 되며, 법률상 제정이 의무로 되어 있는 조례나 정령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정해진 조례 등은 대상 외로 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닌지, 또한 현민 생활에 직결한 조례로 운용 중에 검토·연구를 적절하게 운용하고 있는 조례는 새로운 재검토규정을 마련하지 않아도 좋은 것이 아닌가하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법률상 제정이 의무지워져 있는 조례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현의 판단에 맡기고 있고, 또한 어떠한 조례는 최소한 필요성, 적법성의 검증은 필요한 것으로 정리되었다. 더욱이 현재 재검토를 하고 있는 조례는 그 검토결과를 전청 공통시스템에 의한 보고 및 공표하고 있는 것에 큰 의의가 있으며 전체 조례를 재검토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재검토의 관점에 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었으나, 전문가 등의 연구성과를 참고로 하여 내부적으로 의논하고 최소한 다섯 가지의 기준(필요성, 유효성, 효율성, 기본방침적합성, 적법성)을 중심으로 하여 재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였다.⁴⁷⁾

47) 北村 喜宣・山口 道昭・出石 稔・磯崎 初仁, 自治体政策法務 - 地域特性に適合した法環境の創造, 有斐閣, 2011, 226頁。

3. 제도 도입 후 운용상황 및 효과

가나가와현(神奈川県)에서는 ‘조례의 검토에 관한 요강’(2008년 제정)에 근거하여 매년 조례의 재검토를 하고 있다. 2011년 4월 현재 재검토대상 조례 307건 중 개정을 검토한 것은 67건, 폐지 검토는 12건, 개정·폐지 필요 없음은 228건이다. 검토 결과 약 4분의 1의 조례에 대해 개정·폐지하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이 시스템을 도입한 후 1년간은 단순한 규정의 정리를 포함하여 상당히 이전부터 개정해야하는 상황에 있었던 조례에 대하여 이 시스템의 검토를 계기로 재검토가 진행되었던 것에 대한 의의를 평가하기도 한다. 이러한 개정의 다수는 아마도 이러한 계기가 아니었다면 조례 개정이 되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의회보고·현민 공표를 전제로 하고 있는 이 재검토시스템에 있어서 행정은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절한 재검토를 하지 않으면 의회·현민으로부터 엄격한 비판을 받게 된다. 즉, 이 시스템의 도입으로 인해 경직성이 높았던 조례의 개폐가 재검토를 통한 사회의 상황을 유동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되었다.

가나가와현에서는 현재 300이상의 조례가 시행되고 있으며,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조례 및 인허가 등의 제도를 만드는 조례, 현민 생활에 관계가 깊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조례 등 다양한 내용의 조례가 있다. 또한 본 현에서는 현재 지역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하나의 방안으로서 새로운 조례의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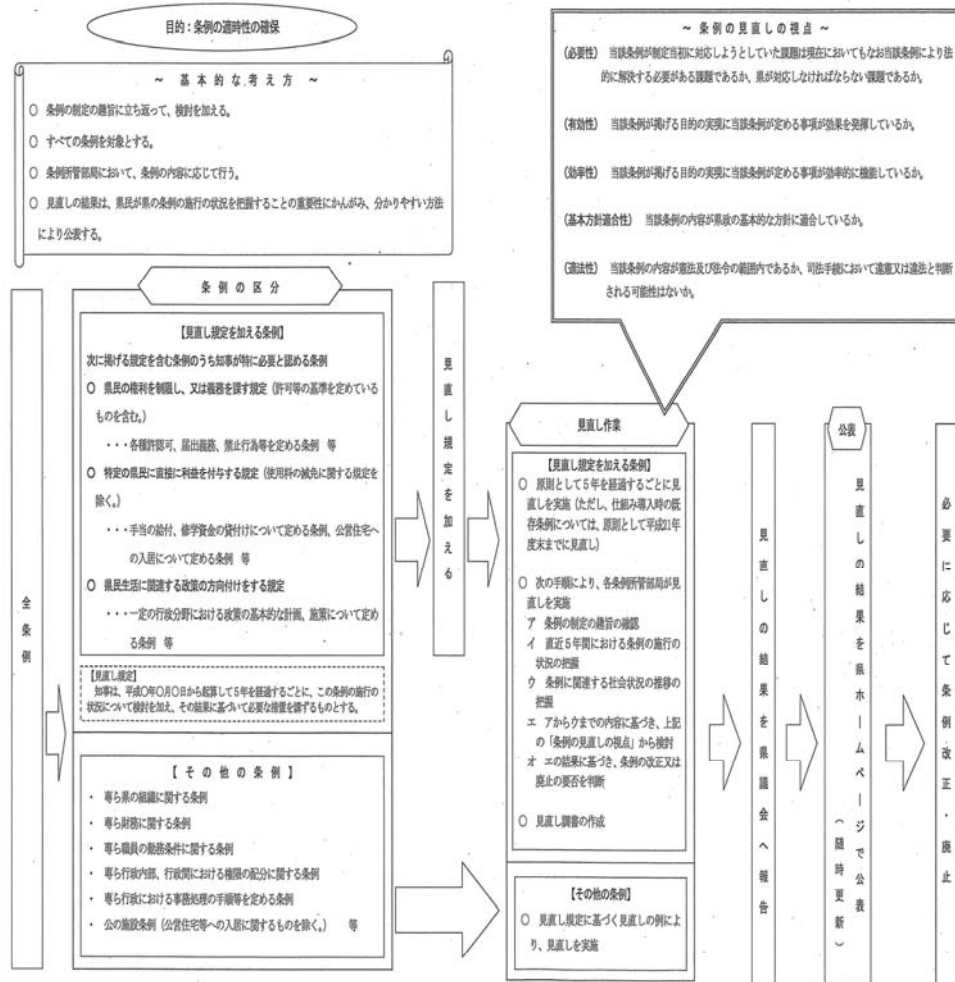
조례는 법률상의 문제는 없는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유효한 것인지 등의 관점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현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며, 제정된 후에는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때의 사회상황에 알맞는지 검증하는 것도 필요하다.

제 3 장 일본의 조례 평가

이에 현의 조례에 대해 일정 기간마다 ① 필요성, ② 유효성, ③ 효율성, ④ 기본방침적합성, ⑤ 적법성 5가지 관점에서 재검토하여, 홈페이지에 조례를 재검토한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

덧붙여 재검토 결과 “개정을 검토한다.”로 결정된 조례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 등의 상황을 바탕으로 조례 재검토 결과일람표에 다음 재검토 일정을 공표한다.⁴⁸⁾

条例の見直しの仕組み



48) <http://www.pref.kanagawa.jp/cnt/f6823/>

Ⅱ. 가나가와현 사가미하라시(神奈川県 相模原市)

가나가와현의 사가미하라시는 2010년에 정령지정도시가 되면서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결정권이 이전보다 광범위해짐에 따라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결정권의 근거가 되는 조례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사가미하라시 조례정비방침을 정하였다. 사가미하라시의 조례정비방침은 다음 표와 같다.

[사가미하라시 조례등정비방침]

사가미하라시 조례 등 정비 방침

본 방침은 정령지정도시에의 이행이나 국가의 지역주권개혁 등으로 확대하는 자기결정권을 활용하고 복잡·다양화하는 행정 과제에 대응한 적절한 정책의 실행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 규칙, 규정 및 요강(이하 “조례 등”이라 한다.)에 정하는 사항의 기준을 밝혀 조례 등의 정확한 정비를 목표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례로 정비해야 할 사항

(1) 반드시 조례로 정하는 것

- 1) 지방 자치 법에서 조례로 정하는 취지 규정되어 있는 것
 - ① 의무를 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것
 - ② 부속 기관 설치에 관한 것
 - ③ 분담금, 사용료, 가입금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것
 - ④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것 등
- 2) 기타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는 취지 규정되어 있는 것

(2) 원칙적으로 조례로 정하는 것

- 1) 시정에 관한 기본적 사항 혹은 기본 이념 또는 시민, 사업자 등에 대한 책무를 정하는 것
- 2) 금전의 징수를 하는 자(징수금을 부담금으로 징수하고 있는 것)
- 3) 권리 의무 규제할 순 없지만 시민들에게 일정한 조작을 요구하는 것(행정 지도 중 규제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며, 행정 지도에 따른 결과가 시민의 권리 및 이익에 영향을 줄것을 포함한다.)

- 4) 시의 시책 등에 대해 주민 참여의 추진이나 절차를 정하는 것
- 2. 규칙에서 규정해야 하는 사항
 - (1) 반드시 규칙에서 정하는 것
 -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칙에서 정하는 취지 규정되어 있는 것
 - (2) 원칙적으로 규칙에서 정하는 것
 - ①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한 절차 등에 관한 것
 - ② 급부에 관련된 시민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것
 - ③ 행정 내부 규율(조직, 운영 등)에 관한 것
 - ④ 조례를 제정해 내지는 않지만, 시민에 일정한 조작을 요구하는 것
 - ⑤ 조례과의 정합성을 도모하는데 있어서 규칙에서 정하는 것이 적당하다 것
- 3. 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 (1) 고시에 따른 것
 - ① 법령, 조례나 규칙의 위임 등에 의해 그 내용을 보충해 외부로 공시하는 것
 - ② 주민 등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이지만, 공공 시설이 아니라 행정 재산으로서 관리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시설의 명칭, 위치 관리 등에 대해 정하는 것 등
 - (2) 훈령에 의한 것
 - 직원에게 대해 내부적인 사무 운영 등에 대해 지휘 감독하기 위해 정하는 것
- 4. 요강으로 정하는 사항
 - (1) 보조금, 보조금 등 시민에게의 지원 시책의 세목을 정하는 것
 - (2) 사업의 실시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

사가미하라시는 복잡·다양화하는 행정 과제에 대응한 적절한 정책의 실행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 규칙, 규정 및 요강(이하 “조례 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의 기준을 밝혀 조례 등의 정확한 정비를 목표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가미하라시 조례 등 정비 방침」을 정하였으며, 정해진 방침에 따라 적극적인 조례화의 검토 및 정확한 예규 정비를 실시해 가고자 하였다.

또한 기존의 조례 등에 대해서도 본 방침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검증이 필요함에 따라 「기존 조례 등의 재검토」에 의해 조례 등의 적시성의 관점에서 전제적으로 재검토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기존 조례 등의 재검토에 대해]

정령지정도시로의 전환 등 행정환경이 크게 변화하는 가운데 장기간에 걸쳐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조례 등도 있다는 점에서 시행 상황이나 「조례등정비 방침」 등을 근거로 하여 조례 등의 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조례 등을 재검토한다.

1. 재검토의 내용

(1) 조례의 재검토

1) 재검토의 대상

다음의 조례를 제외한 모든 조례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 조례 230건)

- ① 의회 관련 조례(6건)
- ② 제정 후 5년 이내의 조례(53건)

2) 재검토의 시점

조례의 적시성이 확보되도록 다음을 기본으로 재검토한다.

필요성	제정 당시의 과제가 존재하고 현재도 필요로 하고 있는가
유효성	조례제정 목적이 현재 실현되고 있는가
효율성	조례제정 목적의 내용이 현재 효율적으로 기능하고 있는가
협동성	조례의 내용이 시민, 시민 단체,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 등의 참가·참가, 협동, 시민 활동의 자주성·자기 결정성이 실현되고 있는가
적합성	신·사가미하라시 종합계획 등 시정의 기본방침 등에 적합한가
적법성	조례의 내용이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가, 사법판단으로 위법성을 물을 가능성은 없는가
적절성	조례가 규정해야 할 예규의 종류로서 적절한가

- ① 예규 소관과에 의한 재검토 결과를 부국에서 집약하여 국의 방침을 결정한다.
- ② 부국의 방침에 대해 총무국과 조정을 하고, 관청의 회의에서 의결하고 재검토 결과를 확정한다.

제 3 장 일본의 조례 평가

- ③ 재검토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 ④ 검토의 결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조례에 대해서는 제정 및 개폐를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
- ⑤ 재검토의 내용에 따라 공청회나 관계 심의회 등으로부터의 의견 청취를 실시한다.

가나가와현의 조례 재검토 조서를 통해 살펴본 조례 재검토의 사례를 몇 가지 들어보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다.

조례 재검토 조서 사례 1					
		작성 년도	2013년	다음 검토 예정	2018년
조례명	가나가와현 임야의 보전, 재생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번호	2007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61호	법규집	제9편 제2장 제5절		
소관부서	환경농정국 농정부 농지보전과				
조례의 개요	임야의 보전, 재생 및 활용에 대하여 기본이념을 정하고 현·토지소유자 등 및 현민의 책무를 명확히 하며, 임야의 보전, 재생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임야의 다면적 기능 및 차세대 에로의 계승을 도모하고, 현민의 건강하고 풍요로운 생활의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검 토	관점	검토내용			
	필요성 현재도 필요한 조례인가	본 조례의 시행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임야의 보전 등의 활동이 실시된 지역 및 활동단체는 증가하고 있는데, 조직이 조직의 구성이 진행되지 않는 지역도 많고 조례의 목적인 다면적 기능의 발휘와 활동을 더욱 넓혀가기 위해 필요하다. 또한, 임야를 차세대에 계승하기 위해 토지소유자 등 현민 및 행정이 각각의 책무를 부과하면서 활동을 계속해갈 필요가 있고, 조직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이다.			

제 3 절 일본의 주요 지방자치단체의 평가 조례 분석

<p>유효성 현행 조례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p>	<p>조례에 근거한 방침을 정하고 관련시책을 전개하여 임야의 보전 등 지역 선정 및 임야의 활동협정을 인정하여 임야의 보전 등의 활동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조례의 목적인 임야의 다면적 기능의 발휘 및 차세대로의 계승을 도모하고 그 효과면에서 유효성을 발휘하고 있다.</p>	<p>지역선정,협정인정 2008년-2지역 2009년-7지역, 8단체 2010년-1지역,1단체 2011년-3지역,2단체 2012년-1지역, 3단체 합계-14지역,14단체</p>
<p>효율성 현행 조례의 내용이 효율적인가</p>	<p>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해 기본이념을 거론하여 현·토지소유자등·현민의 책무가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임야의 보전 활동 등을 계속하여 실시되기 위해 임야의 보전등 지역의 선정 및 임야의 활동협정, 활동의 지원에 의해 조직이 활성화되고 효율적으로 기능하고 있다. 더불어, 임야의 보전등 지역 선정시에 그 지역주민에게 고지를 하여 효율적으로 기능하는 것부터 운용의 개선을 검토한다.</p>	
<p>기본방침 적합성 현의 행정 기본 방침에 적합한가</p>	<p>「가나가와 그랜드 디자인」<기본구상>에 있어서 현민 및 시정촌과의 협동·연대를 통해 임야의 보전활동의 추진을 확고히 하는 등 기본방침에 따라 실시되고 있다.</p>	
<p>적법성 현법·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가</p>	<p>토지소유자등 및 현민의 책무를 노력규정으로 설계하고 있고 기타 임야의 보전등 지역의 선정 및 임야 활동협정의 인정에 대한 규정이 있다. 새로운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으며, 관계법령에 위반하지 않는다.</p>	
<p>기 타</p>		
<p>재 검 토 결 과</p> <p>1. 개정·폐지 및 운용의 개선 등의 필요는 없다. 2. 개정·폐지의 필요는 없다. 운용의 개선 등을 검토한다. 3. 개정을 검토한다. 운용의 개선 등의 필요는 없다. 4. 개정 및 운용의 개선 등을 검토한다. 5. 폐지를 검토한다.</p>	<p>이유 등</p> <p>조례의 해설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고, 추가가 필요한 적소가 있었다.</p>	

조례 재검토 조서 사례 2



		작성 년도	2013년	다음 검토 예정	2018년
조례명	가나가와현 어린이·양육 지원추진 조례				
조례번호	2007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6호	법규집	제6편 제1장 제3절의 3		
소관부서	현민국 차세대육성부 차세대육성과				
조례의 개요	어린이 및 보육의 중요함, 어린이·보육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에 대하여 모든 현민이 의식을 공유하고, 어린이·보육 지원의 조직을 추진해 사는 것을 목표로하여 그 기본이념과 추진체계 등을 정하고 있다.				
검 토	관점	검토내용			
	필요성 현재도 필요한 조례인가	가나가와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현민이 어린이를 안심하고 키울수 있는 환경만들기를 계속적으로 이어갈 필요성이 높다. 현, 사업자, 어린이·보육 지원기관등 및 현민이 상호 연대·협력하여 어린이·보육지원을 추진할 필요성은 이전부터 높아져 있으므로 필요한 조례이다.			
	유효성 현행 조례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본 조례로 인해 어린이·보육 지원의 추진에 관한 조직이 착실히 추진되고, 사업자 및 현민·단체에 의한 조직구성이 촉진되고 있다.			
	효율성 현행 조례의 내용이 효율적인가	본 조례에 근거하여 현으로서 어린이·보육 지원시책이 종합적으로 발전됨과 함께 인증제도, 표창, 지원기간 등의 형태, 사업자나 현민·단체에 의한 어린이·보육 지원의 조직이 가시화되었고, 공적인 지원 구조의 형성으로 인한 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기본방침 적합성 현의 행정 기본 방침에 적합한가	본 조례는 ‘어린이·보육을 지원하는 사회환경의 정비’를 목표로 정하고 있는 「가나가와 그랜드 디자인」의 기본방침에 적합하다.			

	적법성 헌법·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가	어린이·보육 지원에 대해서 기본이념이나 지원의 조직체계등을 정하고 있고, 제정후의 법령의 제정·개폐 상황에 있어서도 헌법, 법령에 저촉되는 규정은 없다.	
	기 타		
재 검 토 결 과	1. 개정·폐지 및 운용의 개선 등의 필요는 없다. 2. 개정·폐지의 필요는 없다. 운용의 개선 등을 검토한다. 3. 개정을 검토한다. 운용의 개선 등의 필요는 없다. 4. 개정 및 운용의 개선 등을 검토한다. 5. 폐지를 검토한다.		이유 등
			현행 조례의 운용상 과제는 발견되지 않음.

Ⅲ. 북해도(北海道)

1. 조례 재검토 제도 도입의 경위

북해도에서는 「조례의 재검토에 관한 기본방침에 대해서」(2008년 7월 1일 총무부장 결정)을 정하고 순차개정 등의 작업을 하고 있다.

조례의 일체점검·재검토제도 구축은 2009년도 제1회 북해도의회정례회에서의 일반질문에서 다음과 같은 질의가 있었던 것이 계기가 되었다. 해당 질의에서 가나가와현의 「조례 선셋시스템」을 참고하여 북해도에서도 도민에게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조례를 시작으로 조례전체를 일체점검하고 필요한 재검토를 하고, 이와 더불어 「선셋조항」 등 재검토 규정을 설계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제언이 있었다. 이에 대해 북해도의 지사는 분야별로 매우 다양한 조례를 분류화하고 그 시행상황 등을 일체히 점검하여 필요의 재검토를 하는 방법이나 재검토 규정의 방향에 대해 검토하기 시작하려고 한다는 답변을 하였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북해도의 조례재검토가 시작되었다.

2. 조례 재검토의 대상

북해도의 2008년 및 2009년도 일제점검·재검토에서는 총조례 412개 중에서 의회관계조례와 제정 후 5년 이내(2008년 4월 1일 시점)의 조례 44개 제외한 358개 조례를 대상으로 하였다. 특히, ① 도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또는 도민에게 의무를 부과한 조례(17개), ② 도민생활 관련 정책에 관한 조례(17개), ③ 특정 도민에게 직접이익을 부여하는 조례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5년마다 재검토를 하는 규정을 설정하고 있다. 2011년 현재, 재검토 조항이 있는 조례는 88개이다. 또한, 이외의 조례에 대해서는 사무사업에 관한 정책평가의 결과를 활용하면서 재검토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조례 재검토의 기준

조례 재검토시의 관점으로 조례의 시행상황 등을 감안하여 조례의 적시성이 확보되도록 ① 필요성, ② 효과, ③ 기본방침과의 정합성, ④ 적법성, ⑤ 규정의 적정화의 5항목을 기본으로 하여, 점검·재검토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필요성 등의 판단에 대하여는 행정·재정개혁이나 규제완화, 지역주권의 실현이라는 정책적 요구에 유의하여 그 필요성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법의 시행조례 등에 있어서는 재검토의 결과, 필요한 규정을 설계할 때에 법령으로 인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법령 규정의 개폐 등을 국가에 요구하는 것도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①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가 대응하도록하고 있는 과제는 현재에도 조례에 의해 대응해야만하는 과제인가, 도가 대응해야만하는 과제인가 • 규제의 방향이 현재의 사회 정세하에서 필요이상으로 되어 있지는 않은가 • 관계법령의 개정 등에 의해 불필요한 규정은 아닌가
-------	---

② 효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현시점에서 조례의 규정이 효율적으로 기능하고 충분한 검토를 하고 있는가
③ 기본방침과의 정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례의 내용이 도정의 장기적인 기본방침(신·북해도 종합 계획 등)에 적합한가
④ 적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례의 내용이 법령의 범위내인가
⑤ 규정의 적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정세의 변화에 수반하여 적절하지 않은 표현은 없는가 •조례의 규정이 알기 쉽게 정리되어 있는가

4. 조례 재검토의 순서

재검토의 순서로는 우선 중점적으로 재검토를 하는 조례에 대해서는 ① 소관과에서 조례 제정취지의 확인, 조례의 성격 등의 분석, 최근 시행상황을 파악하고 조례의 재검토 관점에서 검토를 하고 조례 개폐등의 여부를 판단하고 점검표를 작성한다. ② 법제문서과에서 각 조례의 소관부서 등의 검토결과를 종합정리하고 검토한다. 또한, 이외의 조례에 대하여도 중점적으로 재검토를 할 조례에 준하여 하고 있다.

5. 조례 재검토의 결과

일제점검·재검토의 결과, 재검토 대상 조례 358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총조례	재검토 대상 조례	개폐 조례					재검토 규정의 설정 (제정후 5년 이내 포함)	정세변화에 의한 개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한 조례
			개 정	폐 진	규정 정비			
412	358	182	9	18	114	80	2	

* 「개폐조례」의 수는 「개정」, 「규정의 정비」, 「재검토 규정의 설정」을 중복 실시하고 있는 조례도 있으므로, 세 항목(「개정」, 「규정의 정비」, 「재검토 규정의 설정」)의 합계의 수와는 맞지 않는다.

6. 2010년 이후 조례의 재검토

2010년 이후 조례 재검토 대상은 재검토 규정이 있는 조례인 법제 문서과로부터 제정 또는 전회의 재검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소관부서에 재검토를 의뢰한다. 검토기준은 상술한 5가지 항목(① 필요성, ② 효과, ③ 기본방침과의 정합성, ④ 적법성, ⑤ 규정의 적정화)이며, 조례 내용에 대해 외부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2010년에는 7월에 소관부서에 검토를 의뢰하고 2011년 1월에 재검토 상황에 대해 조회하고(회답기한은 3월말까지), 4월에 결과를 취합하였다. 이후에도 이와 같은 형식으로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으면 이에 대해서는 2015년에 일괄하여 취합한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⁴⁹⁾

IV. 시즈오카시(静岡市)

시즈오카시에서는 2008년에 ‘정책법무추진계획’을 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행정의 Legal Dock 또는 Legal Check를 실시하고 있다. 이것은 일상의 사무사업 실시방식에 대해 예방법무·컴플라이언스(법령준수)나 분권개혁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주교이며, 전문가(정책법무 어드바이저)도 참가하여 소관과의 설명을 들으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넓게는 법률의 집행을 포함하여 일상적인 사무처리를 실무에 입각하여 점검하는 것이며, 집행법무(특히, 집행관리)의 일환으로서도 평가법무의 취급으로서도 주목된다.

V. 니가타시(新潟市)

니가타시 자치기본조례에서는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 후 5년 이내에 검토위원회를 설치하고 필요한 재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

49) 川崎 政司、『シリーズ 自治体政策法務講座 第1巻総論・立法法務』、ぎょうせい、2012、 315頁。

다. 이에 따라 관청내외에 검토조직을 설치하고 시민의 의견을 듣고 검토를 하기로 하였다.

니가타시의 자치기본조례는 시민자치의 기본이 되는 조례로서 2010년 2월 22일에 제정되었다. 이 조례에서는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 조례의 시행 후 5년 내에 검토위원회를 설치하고 필요한 재검토를 한다”라고 정하여 외부의 관점에서 재검토를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위원회가 2012년 5월 25일에 설치되었다.

2012년 7월 이후 총7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니가타시 자치기본조례에 관련된 조례·제도 등의 운용 상황에 대해 시가 실시한 내부 검증결과를 확인하면서 조례의 취지에 따라 시정이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을 하고 있다.

제 4 절 조례 입법평가 제도화의 시사점

I. 일본 조례 평가의 과제와 전망

1. 조례제정과정에서 조례평가기준의 적용가능성

일본의 경우 2000년에 시행된 지방분권개혁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조례가 제정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조례 중에는 이미 제정되어 있는 다른 조례의 존재자체가 마치 조례제정의 정당한 근거인 것처럼 오해되어, 다른 조례를 기계적으로 모방하여 제정되고 있는 조례도 있다. 조례의 제정과정은 조례의 내용에 큰 영향을 기여한다. 적절한 조례제정과정을 거치지 않은 조례의 제정은 행정의 자기만족, 또는 한정된 행정자원의 낭비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⁵⁰⁾

50) 北村 喜宣・山口 道昭・出石 稔・磯崎 初仁、『自治体政策法務』、有斐閣、2011年、414頁。

磯崎(이소자키)교수가 설명한 6가지 기준⁵¹⁾에 의한 우수한 조례의 조건⁵²⁾은 기초적 조건인 ‘필요성’과 ‘적법성’을 충족하고 그 외의 4가지의 기준을 독립적으로 평가하고, 이것들을 유지하는 합리적인 독립적인 입법사실이 존재하는 것이라는 구조를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에 의하면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법형식인 조례의 성질을 반영하여 ‘법률의 입법평가’와 구별하여 ‘조례의 입법평가’를 수행할 때에 유용한 기준을 정립한 점, 그리고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법무매니지먼트 사이클(Plan-Do-See)의 구조에 의하면 ‘See’의 단계에서의 ‘사후평가’가 고찰의 중심이고, 오히려 6가지 기준을 ‘사후평가’의 고찰에서도 활용해야 한다는 점⁵³⁾에 중요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조례평가의 착안점이 ‘사전평가’에까지 확대를 보였지만 평가의 직접대상은 행정절차를 중심으로 한 ‘조례내용’ 그 자체이다. ‘조례내용’을 평가하는 데에 유용한 6가지 기준은 ‘조례내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조례제정과정’을 평가하는 데에도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⁵⁴⁾

51) 주33)의 조례평가의 점검항목-사후평가의 경우 표준례

52) ‘우수한 조례는 무엇인가’라는 문제자체는 어려운 주제이다. 磯崎교수도 하나로 집약하는 것은 어렵다고 인정하고 있다. 磯崎교수가 시사한 입법평가의 구조가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법형식인 조례의 성질을 반영하고, 규제조례에 한하지 않고 일반 조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부터 이 구조를 만족한 조례를 ‘우수한 조례’라고 할 수 있다. 北村 喜宣・山口 道昭・出石 稔・磯崎 初仁、『自治体政策法務』、有斐閣、2011年、415頁 注3) 参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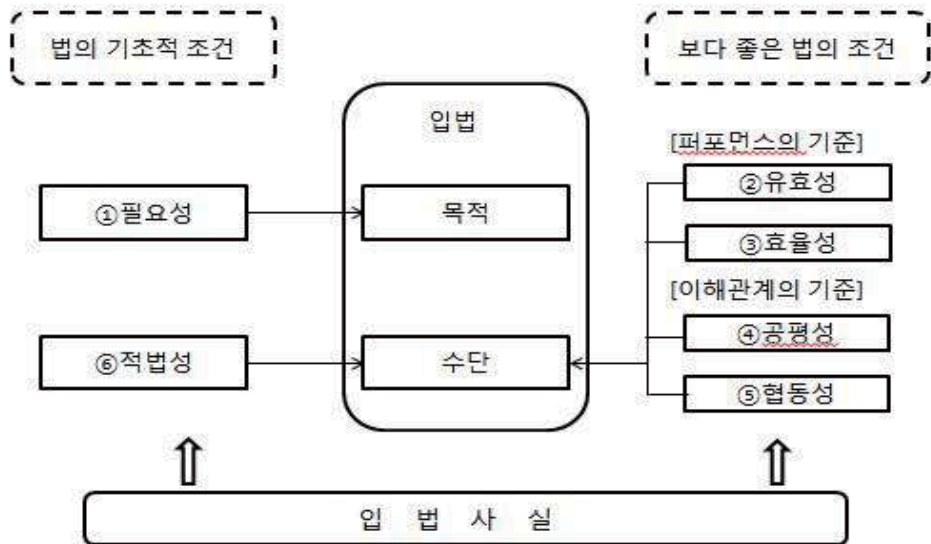
53) 조례입안자는 예를들면 재판소에 의한 ‘사후평가’를 깊이 의식하고, 조례의 ‘사전평가’를 하게 되고, 해야만 한다. 이렇게 ‘사후평가’와 ‘사전평가’는 연동되고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해서는 磯崎교수의 주장은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지만 이를 굳이 적극적으로 의식하게 하는 점에 주목할 가치가 있다(北村 喜宣・山口 道昭・出石 稔・磯崎 初仁、『自治体政策法務』、有斐閣、2011年、416頁参照。).

54) ‘조례제정과정’에 있어서 ‘조례내용’이 평가되는 것을 생각하면 ‘조례내용’의 평가기준을 의식하지 않은 ‘조례제정과정’은 정당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여기에서 어떠한 평가기준을 적용하는가가 문제로 되는가에 대하여 신규조례의 입안실무에 있어 磯崎교수의 6가지 기준을 활용한 결과, 유용성을 확인했으므로 이 6기준이 ‘조례내용’을 평가하는 데에 유용한 기준인 것을 전제로 한다(北村 喜宣・山口 道昭・出石 稔・磯崎 初仁、『自治体政策法務』、有斐閣、2011年、416頁参照。).

2. 조례 제정 시의 정책적 과제

정책적 검토의 출발점임과 함께 기반이 되는 것은 ‘우수조례’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하는 입법평가의 이론이며, 그 중에서도 평가이론이 중요하다. 앞에서 입법평가에 있어서 정책평가법 등의 정책평가의 틀을 기초로 한 ① 필요성, ② 유효성, ③ 효율성, ④ 공평성, ⑤ 협동성(참가성), ⑥ 적법성의 총 6가지의 기준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 적절하다고 언급하였다.⁵⁵⁾ 이 중에서도 필요성과 적법성은 조례가 성립하기 위한 불가결의 조건이며, 그 외의 항목은 보다 좋은 법이 되기 위한 조건이다. 또한, 평가에 대하여는 목적과 수단의 두 가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필요성은 주로 법의 ‘목적’을 대상으로 하는 기준이며, 유효성, 효율성, 공평성, 협동성은 주로 ‘수단’을 대상으로 하는 기준이며, 적법성은 이것들의 전체를 묻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입법평가의 구조-우수조례의 조건>



55) 磯崎 初仁, 『立法評価の理論』, 鈴木 庸夫 『自治体法務改革の理論』, 勁草書房, 2007, 100頁以下参照。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조례에 이를 적용하는 것이다. 또한, 우수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후평가만이 아닌 제정 전에 시행 후의 효과 등을 예상하여 사전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입안 작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 기준에 대해서 예를 들면, 유효성을 어떠한 데이터와 방법에 의해 측정할지, 유효성과 효율성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 공평성의 내용으로 어떠한 배분원칙을 정할지 등, 이론적이고 실재적인 과제가 있다. 이것들을 가능한 한 구체적인 소재를 가지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책법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법무를 활용하여 실현하는 구조이다. 여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활동과 자치입법평가의 시스템 또는 법령평가의 시스템을 적절하게 연동시킴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실현이 효과적으로 행해지게 된다.

3. 평가법무의 과제

(1) 조례의 개정·폐지절차와 평가

① 개정이 필요한 조례의 파악

돗토리현의 경우는 의회의 개회 2개월 전에 당해 의회에서 제정·개폐해야하는 조례 및 당해 년도 제정·개폐해야하는 조례의 유무를 파악하기 위해 정책법무실장명의로 조회문서를 제출하고 원칙적으로 조회의 대상이 된 조례에 대해서는 의견청취·심사를 하고 있다. 현민의 의견을 묻는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이 있으면 제안한 당해 의회의 개회 전에 소관상임위원회에의 보고를 한 뒤, 퍼블릭 코멘트(의견공모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벌칙에 관련한 조례의 제정 및 통상 2~3개월이 소요되므로(길게는 6개월 이상을 요한다), 당해 년도 초기에 파악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정책법무실에서 사전심사를 한 조례안은 총무부장을 회장으로 하는 ‘법령심사회’에서 심사를 하고, 심사결과에 대한 대응, 최종확인, 기안결재의 절차로 진행된다.

최근 돛토리현의 독자시책의 결정 시기 등의 요소에 의해 법령심사회 개최의 가까운 시일이나 법령심사회 후에 개정이 필요한 조례를 다음회기로 넘기는 예가 많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각 소관부서의 해당 시책이 조례 제정·개폐로 진행되는 경우에 정보의 제공을 의뢰하는 것과 함께 정책법무실로서도 예산 등의 정보를 기본으로 한 조례 제정개폐정보의 파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관보 등의 체크를 하여 법령의 제정개폐에 의해 조례의 제정개폐가 필요유무를 확인하고 있다.

② 정책평가와 조례의 제정개폐

각 소관부서에서 조례의 제정·개폐 필요여부의 판단은 그 소관부서에 속하는 시책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얻어진 평가결과나 의견 등의 정보를 기본으로 진행되며, 스스로가 매년도 입시재검토나 평가를 하고, 그 중에서 조례의 제정개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에 대해서, 소관 부서에서 검토하고, 지사·부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조례안을 의회에 제안하는 것이 결정된다.

시책대상자의 요망
업계단체의 요망
심의회와 심사결과 등
현민의 요구
Summer Review(サマーレビュー)⁵⁶⁾
위 5가지 항목의 정보를 받은 의회의 질문 등

56) 국가 예산의 신년도 편성을 위해 여름에 사업의 전망이나 예산의 재점검을 하는 것.

또한 지사 스스로가 각종 정보를 기본으로 하여 정책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 의해 조례의 제정개폐가 필요하다고 된 경우는 지사의 의견을 받은 담당부서가 조례안을 입안하게 된다.

③ 조례제정목적의 질적 전환

지방공공단체가 하는 자치입법의 주요 목적인 조례 중에는 개개의 법령으로부터 직접 위임에 의해 정해져 있는 것, 지방자치법등의 법령에서 조례에서 정해진 것으로 되어있는 조직, 급여 등 지방공공단체가 조례에서 정하는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제정된 것도 있지만, 돗토리현에서는 현 단독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조례가 제정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제일의 돗토리 사구를 지키는 조례(日本一の鳥取砂丘を守り育てる条例 2008년 9월 의회), 돗토리현 산간지역진흥조례(鳥取県みんなで取り込む中山間地域進行条例 2009년 6월 의회) 등 현의 중요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수동적으로 조례의 제정·개폐를 하는 것만이 아니라 현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조례의 제정 등을 하는 것이며, 이는 2000년의 지방분권개혁이후에 더욱 명확하게 되어 있다.

더욱이 법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현 스스로가 정해서 얻는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해진 조례를 활용하고, 요강 등에서 정해진 경우에 비교하여 실행성의 면에서 보다 강하다고 보고 있다.⁵⁷⁾

④ 조례평가의 실제

시책대상자, 업계단체, 심의회, 현민 등의 평가를 받는 것과 함께 현 스스로의 평가로서 Summer Review(사무사업 재검토)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평가의 결과에 기하여 정책에 필요한 조례의 제정·개폐 등을 판단하게 된다.

57) 衣笠章、評価法務の課題、ジュリスト No. 1391, 2009. 12. 15., 136頁。

시책의 소관과에서는 이러한 평가에 더하여 조례에 대응하는 것으로 입법사실이나 관련한 법령 등이 변하지 않은가 등을 자세히 조사하여 조례의 제정개폐를 입하는 것과 함께 그 내용에 대해 퍼블릭 코멘트(의견공모절차)를 통해 현민의 의견을 물어 필요한 수정을 하는 것으로 된다.

정책과 조례의 평가에 대해서는 지사, 소관부서, 소관과 등 각 단계에서 하고 있으며, 각각의 단계에서 평가결과를 근거로 최종적으로는 지사의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

또한 2006년까지는 조직관계 조례 등을 제외하고 주된 조례는 실효규정을 두는 것과 함께, 그 실효기한까지 재검토를 하는 것을 의무규정으로 하고 적어도 실효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었지만, 규제조례 등에서 직원의 직무태만 등으로 조례의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 필요한 규제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현민에게는 불이익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는 획일적인 취급을 요하며 조례의 재검토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고 조성을 하는 조례에 대해서는 일정기간동안의 실효규정을 두고, 실효규정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조례에 대해서 재검토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개정을 하고 있다.

의회의 제안에 의해 조례가 신설되거나 또는 조례의 일부개정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의회가 그 조례가 필요한 것을 보증하는 입법사실을 파악하고, 정책으로서 그 조례의 신설을 하는 일정의 평가를 하여 기존 조례의 일부개정을 한다는 것은 조례평가가 이뤄진 것과 파악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의회에서 지사가 제안한 조례에 대해 동기가 제출되어 조례안이 수정된 것과 대안이 제출된 것, 또는 부결되는 것이 있는가, 이것들과 의회에서 평가의 하나를 나타낸다고 생각된다.⁵⁸⁾

58) 衣笠章 前掲論文、137頁。

(2) 평가법무의 효과와 향후 과제

돗토리현에서는 시책이나 조례의 평가에 기준하여 조례의 제정개폐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있으며, 이러한 평가나 법령개정 정보를 파악하는 노력에 의해 필요한 조례개정 등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각종 평가의 효과도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⁵⁹⁾

다만, 조례제정 및 개폐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 시기나 시책의 실시의 결정시기가 조례의 제정 및 개폐가 적절하게 행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경우도 보여진다. 보다 좋은 조례를 입안하기 위해서도 더 여유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

조례의 실효규정은 스스로의 사무의 근거가 없어져버리는 것으로 직원을 조례 개폐의 계기가 되고 있으며, 현민의 입장에서의 방침을 재검토한 것으로 직원이 지금까지의 이상으로 시책이나 조례의 평가를 적절하게 실시하는 것이 요구된다.

돗토리현의 경우에는 ‘평가법무’라고 명칭 지어진 업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실시하고 있는 업무는 ‘평가법무’에 관한 사항으로 정리할 수 있다.

지방분권이 진행되면 될수록 현의 조직 내의 각 부국에서 필요한 법무에 대한 소양을 가진 인재의 확보나 육성도 조례평가와 관련된 과제라고 생각한다.⁶⁰⁾ 조례평가가 확대되어 진행될수록 이와 관련된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 인재의 육성에 대해서도 지방의회 전체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59) 衣笠章 前掲論文、137頁。

60) 衣笠章 前掲論文、138頁。

II. 조례평가를 위한 평가법무의 구조

1. 조례평가의 실천

조례평가를 위한 각 기준들에 의해 평가법무를 실시함에 있어서 그 평가 작업을 실시하기 위해 평가법무의 구조는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조례평가를 실천하는데 있어서 고려되어야 하는 구조로는 첫째, 누가 조례를 평가하는가에 대한 평가주체의 문제이다. 평가작업 자체는 개별의 법제도의 집행을 담당하는 담당과가 실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왜냐하면, 집행상황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후의 재검토시에도 실무적인 검토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담당과에서만 실시하는 것은 현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평가결과를 취합함에 있어서는 전체를 총괄하는 법제담당과 등의 조직이 점검·조정역할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더욱이, 주민이나 전문가의 시점을 반영하여 시민들 중에서 공모위원이나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외부의 평가요소를 포함시키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둘째, 무엇에 대해 평가를 하는가라는 평가대상에 관한 문제이다. 우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고 있는 주요법률에 대하여는 법률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으므로 각 분야의 정책을 지원하려는 주요법률에 한정함과 함께 집행상황에 관한 평가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 또한, 정책적인 조례에 있어서는 자율조례와 법정사무조례가 있는데 주요 자율조례를 대상으로 하여 법정사무조례는 중요한 것에 한정하게 된다. 규제에 대하여는 법률이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보충적으로 정하는 것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평가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⁶¹⁾

61) 磯崎 初仁, 自治体政策法務講義, 第一法規株式会社, 2012, 277頁。

셋째, 어느 시점에서 평가를 할 것인가라는 시기의 문제이다. 새롭게 제정 또는 개정된 법률·조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시행상황에 관한 데이터가 나오게 되므로, 시행으로부터 5년 정도의 시점에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 외의 정기적인 평가·재검토에 대해서는 사회경제상황의 변화와 작업비용을 고려하여 5~10년 정도의 주기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다. 무엇보다도 사전에 실시시기를 정하여 계획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⁶²⁾

넷째, 어떠한 관점 및 척도에 의해 평가하는가라는 기준의 문제이다. 연구자 및 실제 조례평가를 하고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그 기준은 다르지만, 조례의 목적에 대해서는 ‘필요성’의 검토를 하고, 수단에 대해서는 ‘유효성’, ‘효율성’, ‘공평성’, ‘협동성’의 평가를 하고, 전체에 대해서는 ‘적법성’의 검토를 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각 조례의 실시목적에 맞게 설정하는 것이 좋다.⁶³⁾

2. 법제평가의 실천

각각의 법률·조례에서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전체 또는 특정 분야 전체의 법률·조례를 점검하고, 그 문제점 등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전체적인 평가를 법제평가라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법률이나 조례의 전체에 대해서 부족한 영역이나 과제는 없는지, 법제도간의 중복이나 통일적이지 않은 부분은 없는지, 전체의 체계성은 확보되어 있는지 등을 점검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자치기본조례인 마을만들기 조례 등 기본적·종합적인 조례의 제정이 이루어져 조례자체의 체계성이 의식되고 있다. 특히, 자

62) 磯崎 初仁, 自治体政策法務講義, 第一法規株式会社, 2012, 277頁。

63) 현재 조례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가나가와현에서는 필요성, 유효성, 효율성, 기본방침적합성, 적법성, 그 외의 6가지 항목, 북해도에서는 필요성, 효과, 기본방침과의 적합성, 적법성, 규정의 적정화라는 5가지 항목, 요코하마시에서는 조례의 설치·목적·필요성, 규정내용, 시의 시책, 외적요인과의 관계등의 4가지 구분을 설정하고 17개의 체크항목을 설정하고 있다.

치기본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헌법’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그 하에서 환경기본조례 등 분야별의 기본조례가 있고 개별조례가 있는 구조를 상정할 수 있다. 이러한 각각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의 체계를 염두에 두고 현행 조례를 평가하고 이후의 과제를 도출한다.⁶⁴⁾

Ⅲ. 조례 입법평가 도입에의 시사점

이상으로 일본의 조례평가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조례의 제정과정은 조례의 내용에 큰 영향을 기여한다. 적절한 조례제정과정을 거치지 않은 조례의 제정은 행정의 자기만족, 또는 한정된 행정자원의 낭비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조례의 제정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어 보다 좋은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일본의 조례평가 현황 및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살펴본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법형식인 조례의 성질을 반영하여 ‘법률의 입법평가’와 구별하여 ‘조례의 입법평가’를 수행할 때에 유용한 기준을 정립한 점, 그리고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법무매니지먼트 사이클(Plan-Do-See)의 구조에 의하면 ‘See’의 단계에서의 ‘사후평가’가 고찰의 중심이고, 오히려 6가지 기준을 ‘사후평가’의 고찰에서도 활용해야 한다는 점 등에 중요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조례평가와 관련하여 그 착안점이 ‘사전평가’에까지 확대를 보였지만 평가의 직접대상은 행정절차를 중심으로 한 ‘조례내용’ 그 자체에 한정되고 있다는 점이 한계로 보인다. 즉 ‘조례제정과정’에 관련된 실례를 반영한 상세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이 연구에서는 살펴보지 못하였다.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일본의 조례평가에서 중요한 시사점으로 조례 입법평가에 있어서 기준인 ① 필요성, ② 유효성, ③ 효율성, ④ 공평성, ⑤ 협동성(참가

64) 磯崎 初仁, 自治体政策法務講義, 第一法規株式会社, 2012, 279頁。

성), ⑥ 적법성의 총 6가지의 기준의 확인이 있다. 이 중에서도 필요성과 적법성은 조례가 성립하기 위한 불가결의 조건이며, 그 외의 항목은 보다 좋은 법이 되기 위한 조건이다. 또한, 평가에 대하여는 목적과 수단의 두 가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필요성은 주로 법의 ‘목적’을 대상으로 하는 기준이며, 유효성, 효율성, 공평성, 협동성은 주로 ‘수단’을 대상으로 하는 기준이며, 적법성은 이것들의 전체를 묻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와 관련해서는 제4장에서 제시하게 될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표준조례안 및 심사기준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실제 조례 입법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제 4 장 지방의회 조례 입법평가 표준조례안

조례 입법평가제도의 도입을 위한 표준조례안의 마련과 관련하여 우선 기존에 제시된 조례와 관련된 다양한 지표들을 먼저 살펴보고, 다음으로 조례에 대한 사전평가 지표와 사후평가 지표를 제시하고자 한다.

제 1 절 조례평가와 관련된 지표

기존에 조례에 대하여 심사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경우의 연구결과는 물론이고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입안심사기준 등 조례 입안 관련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이 절에서는 기존의 조례평가에 관련된 지표를 제시하고 검토하기로 한다.

I.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입안심사기준표

1. 입안심사기준표 마련의 배경

민원과 관련되는 각종 자치법규가 적법하고 시행가능하며 효율성을 갖는 수준으로 제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자치법규 입안을 심사하는 심사기준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그에 따라 이 심사기준표를 제정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민원처리의 투명성 확보와 효율성을 갖는 자치법규의 제정 등 두 가지 투명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우선 입법담당공무원의 이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입안심사기준표’를 만들었고 이를 규범화하기 위해 새로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입법 및 운영에 관한조례」⁶⁵⁾를 제정하고 이

65)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조례」(2002년 5월 20일 제정 조례 제 4003호)

조례의 별표로 ‘입안심사기준표’를 포함시킨 것이다.⁶⁶⁾

2. 입안심사기준표의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안심사기준표는 자치법규 입법의 필요성, 자치법규 내용의 정당성 확보, 자치법규 입법절차의 정당성 확보, 사후관리의 네 가지 대분류를 두고, 20개의 소분류로 심사항목을 세분하고, 소분류에 따른 심사항목을 111개로 확대하여 평가를 하도록 기준표를 구성하고 있다. 자세한 입안심사기준표는 다음 표와 같다.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입안심사기준표>

구 분	심 사 항 목	평 가
I 자치법규 입법의 필요성	1. 입법수요 동향조사	
	가. 입법수요조사는 어떻게 시작하는가(상위법령 제·개정, 시민여론, 자체 필요 등)	
	나. 입법요구(의사)는 어떤 매체를 통하여 수집되는가	
	다. 어떻게 수집하는가	
	라. 수집된 자료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마. 자치법규 입법의 필요성에 대한 평가 및 결정	
	2. 종전제도의 운영실태조사	
	가. 어떠한 근거에 의하여 제도가 운영되어 왔는가	
	나.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근거가 없는 경우 훈령·지침 또는 지시 등에 의하였는가	
	다. 예산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예산 편성근거는 무엇이며 적법하게 편성되었는가	

66) 한상우 외 3인,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제도 도입 방안, 제주발전연구원, 2012, 54-55면.

구 분	심 사 항 목	평 가
	라. 시민은 종래의 제도에 대하여 어떤 반응이 있었으며 그 결과는 어떠한가	
	마. 자치법규를 입법하지 않고 종전 제도로 운영할 경우 어떠한 문제가 예상되는가	
	3. 입법의 필요성 조사	
	가. 자치법규 입법이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따르는 것인가, 아니면 서울시의 필요에 의한 입법인가	
	나. 법령에 자치법규의 제정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법령의 시행을 위한 보완적인 제정인가	
	다. 현재 시행중인 자치법규의 개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가	
	라. 지방의회의원 또는 특정 정당이나 단체의 요구에 의한 입법인가	
	마. 시민단체등의 조례 제정 및 폐지의 요구 또는 다른 입법 요구에 의한 것인가	
	4. 입법추진 일정의 확인	
	가. 입법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인가	
	나. 긴급입법에 해당하는 것인가	
	다. 관련 자치법규 및 제도를 정비할 필요 기간이 충분히 주어지고 있는가	
	라. 계획된 기일안에 입법이 시행되지 못할 경우의 대안은 무엇인가	
	5. 자치법규 입법효과의 사전예측	
	가. 자치법규의 입법으로 얻을 수 있는 긍정적 효과는 구체적으로 측정되었는가	
	나. 자치법규의 입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해결방안은 마련되어 있는가	

제 4 장 지방의회 조례 입법평가 표준조례안

구 분	심 사 항 목	평 가
	다. 자치법규 시행에 따른 조직개편과 예산의 확보등의 문제는 검토되었는가	
	라. 자치법규 입법으로 지금까지의 문제점을 해결하거나 특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II 자치법규 내용의 정당성 확보	1. 헌법규정의 적합성	
	가. 자치법규가 관련된 헌법규정 또는 국가목표와 일치하는가	
	나. 참정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은 아닌가	
	다. 시민에게 과도한 부담(의무, 세금, 손실)을 주는 것은 아닌가	
	라. 자치법규 내용이 헌법이념에 저촉되는 것으로 보이는 법령의 규정을 그대로 따르는 것은 아닌가	
	2. 상위법령에의 적합성	
	가. 상위법령의 위임의 근거하에 입법되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 근거법령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는가	
	나. 상위법령의 위임 근거가 없는 경우 서울시의 고유 사무에 해당하는 사항인가	
	다. 상위 법령 및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새로이 자치법규로 입법하고자 할 경우 그 타당성을 주장하는 논거는 충분히 검증되었는가	
	라. 상위 법령의 근거 없이 새로운 규제를 추가하거나 구체적인 위임규정이 없는데도 별칙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은가	
	3. 통일성 및 조화성	
	가. 자치법규안의 내용이 이미 시행중인 자치법규의 내용과 중복되거나 저촉되는 경우는 없는가	
	나. 새로운 자치법규를 제정하고자 할 경우 기존의 자치법규의 개정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인가	

구 분	심 사 항 목	평 가
	다.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처벌내용이 다른 자치법규의 처벌규정과 비교하여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	
	라. 자치법규의 내용이 법원판례와 헌법재판소의 결정방향과 저촉되는 것은 아닌가	
	마. 자치법규의 내용이 과거의 자치법규보다 규제나 벌칙이 지나치게 강화되는 것은 아닌가	
	바. 규칙으로 정할 사항을 조례로 정하거나 조례로 정할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아닌가	
	사. 고시 등으로 정할 사항을 자치법규로 정하는 것은 아닌가	
	아. 여러건의 자치법규로 입법할 사항을 하나의 자치법규로 정하는 무리한 입법은 아닌가	
	자. 자치법규안에 합리성의 문제가 있다고 볼 때 관련전문가의 자문 등을 받을 필요성은 없는가	
	4. 입법체계의 정밀성	
	가. 자치법규의 명칭은 자치법규 내용을 충분히 포괄하되 간략하고 기억하기 쉽게 되었는가	
	나. 목적규정의 표현이 입법취지와 본문의 규정범위를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는가	
	다. 조문이 장/절/조/항/호로 배열되고 반복적으로 규정되고 있지는 않은가	
	라. 원칙과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 양자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유의하였는가	
	마. 효력발생시점을 정할 때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충분한 사전준비기간을 두고 있는가	
	바. 지역적·시간적으로 적용의 제한을 두는 경우 필요한 경과규정은 적절하게 두고 있는가	

제 4 장 지방의회 조례 입법평가 표준조례안

구 분	심 사 항 목	평 가
	사. 종전의 법규를 완전히 정리하였는가, 실효되는 법규를 준용하는 경우 그에 대한 조치를 충분히 하였는가	
	아. 경과 규정을 두는 경우 법령이나 본문 규정과의 저촉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였는가	
	자. 자치법규 내부의 체계유지에 맞지 않게 지나치게 상세히 규율하고 있지는 않은가	
	차. 자치법규 이외에 예규 등 내부규칙을 자치법규로 상향조정하여 규정하는 방법은 검토되었는가	
	카. 해당 조례에서 규정해야 할 사항을 규칙 또는 자치구조례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위임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위임하는 것은 아닌가	
	타. 규칙으로 위임할 경우 집행부의 재량범위가 주민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는 없는가	
	파. 위임과 재위임의 경우 그러한 권한에 대해 법적근거가 명확하고 적정한 것인가	
	하. 관련법규를 준용토록 하는 경우에 준용한 법규의 내용 및 형식, 체계가 당해 법규와 차이가 있어 현실적으로 준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닌가	
	거. 준용을 엄격하고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하고 있는가, 편의상 남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너. 준용되는 규정이 지금의 법규내용에 비해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다른 문제점이 있음에도 충분한 검토없이 준용하려는 것은 아닌가	
	더. 위원회의 설치에 법적근거에 의하는 것인가	
	러. 과태료 등 시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경우 법적근거는 명확한가	
	5. 표현의 명료성 및 편의성	
	가. 입법내용의 의미가 확실하게 이해될 수 있고 입법 의도가 오해되지 아니하도록 정확히 표현되었는가	

구 분	심 사 항 목	평 가
	나. 전문적이고 특수한 용어나 외래어를 사용하는 경우 그 의미가 정확히 표현되고 있는가	
	다. 용어의 정의·내용이 상위 법령 내용의 하자로 인하여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파악하였는가	
	라. 용어의 정의·내용이 법원의 판결과 학문이론상의 정의와 일치 또는 근접하고 있는가	
	6. 경제성	
	가. 새로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인 경우 그 필요성이 충분히 검토되었는가	
	나. 새로운 비용이 수반되는 경우 예산의 확보등 재원의 조달이 가능한가	
	다. 새로운 조직의 설치가 요구되는 경우 그 필요성이 충분히 검토되었는가	
	라. 새로운 입법으로 절약되거나 추가되는 예산의 규모와 효과는 검토되었는가	
	7. 시민과의 친숙도	
	가. 새로운 규율은 시민의 부담(시간, 경비)을 종전에 비해 감소시키는 것인가	
	나. 중등학교를 졸업한 정도의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쉬운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다.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규정이 있는가	
	라. 시민의 정당한 재산권과 자유를 침해하는 규정은 없는가	
	마. 시민에게 승인, 허가, 등록, 신고 등의 조건을 지나치게 강화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그 사유는 타당한가	
	바. 행정행위로 손실이 발생할 때 그에 대한 보상규정은 있는가	

제 4 장 지방의회 조례 입법평가 표준조례안

구 분	심 사 항 목	평 가
	사. 입법예고,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하였는가	
	아. 전문가 등 여론의 수렴을 위하여 충분히 노력하고 그 자료가 첨부되어 있는가	
	8. 실효성	
	가. 규제하려는 내용은 시민의 대다수가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인가	
	나. 행정권한의 주체와 사무진행의 흐름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규정되어 있는가	
	다. 행정집행에 필요한 조직, 인력예산은 확보되어 있거나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인가	
	라.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위법규 등은 시행일 이전에 정비될 수 있는가	
Ⅲ 자치법규 입법절차의 정당성 확보	1. 자치법규안의 내부심의	
	가. 입안부서와 심사부서간의 협의는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나. 내부적으로 입법심의기구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고 그 심의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다. 심의시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심의를 하고 그 기록을 첨부하였는가	
	라. 입법관련 전문가의 사전검토를 받고 있는가, 사전검토 의뢰시 충분한 기간, 자료, 의뢰자의 의견을 제공하고 있는가	
	2. 관계기관간의 협의	
	가.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회가 필요한 사항인가, 필요하다면 그 협의를 거쳤는가	
	나. 서울시 내부기관간의 협의회가 필요한 사항인가, 필요하다면 그 협의회는 거쳤는가	

구 분	심 사 항 목	평 가
	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인가, 필요하다면 그 협의를 거쳤는가	
	라. 기타 협의가 필요한 경우는 없는가	
	3. 관련위원회의 심의	
	가. 입법내용과 관련된 사항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심의절차는 완료되었는가	
	나. 위원회의 기능이 심의 또는 자문인가를 위원들에게 고지하고 절차를 이행하였는가, 그리고 심의 자료를 첨부하고 있는가	
	다. 위원회의 심의가 형식적으로 행하여진 것은 아닌가	
	라. 위원회의 심의결과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는가	
	4. 공청회	
	가. 입법을 전제로 할 경우 입법안을 완성한 후 개최한 것인가 아니면 부분적인 정책사항만을 제시하고 개최하였는가	
	나. 공청회의 주제발표자, 토론자 선정은 공정하게 되었는가	
	다. 공청회의 개최예고는 충분한 기간, 시민이 접하기 쉬운 매체로 하였는가	
	라. 공청회 결과는 공정하게 정리되어 반영하고 있는가	
	5. 입법예고	
	가. 입법예고를 정상적으로 시행하였는가, 아니면 생략하였는가, 생략한 경우 그 이유는 타당한 것인가	
	나. 입법안의 전문을 예고하였는가 아니면 정책사항 등 일부만을 예고하였는가	

제 4 장 지방의회 조례 입법평가 표준조례안

구 분	심 사 항 목	평 가
	다. 입법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계층이 있는 경우 그들에게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통보하였는가	
	라. 접수된 의견을 공정하게 분석하여 반영하고 있는가, 아니면 유리하거나 찬성한 의견만을 반영하는 것은 아닌가	
	6. 재의 요구	
	가. 의회의결이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요구 조건에 해당될 경우 반드시 재의요구하고 있는가	
	나.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는 재의요구에 관하여 공정하게 심사하고 있는가	
	다. 대법원에서 승소할 수 있다는 확신이 부족한 경우에도 여론과 시민의 압력에 의하여 재의요구가 결정되는 경우는 없는가	
	라. 재의요구를 위하여 관련 전문가 등의 자문을 충분히 받고 있는가	
IV 사후관리	1. 사후관리 기준 가. 시행당시 계획된 기구의 확대 또는 축소는 이루어졌는가 나. 인원 및 예산의 증가 또는 감소와 이에 따른 조치는 이루어졌는가 다. 주관부서를 포함하여 관련부서 등의 찬성, 반대 또는 적절하다는 등의 의견이 파악되고 있는가 라. 언론기관, 학계, 관련기관, 시민단체 등의 평가는 분석되었는가 마. 시민생활의 변화와 반응, 효과 등은 분석되었는가 바. 시행결과를 적절히 분석, 평가하여 보고하였는가	

구 분	심 사 항 목	평 가
	사. 평가결과는 어떠한 방법으로 공표하였는가	
	아. 평가결과를 자치법규 정비 및 행정에 반영하고 있는가	
	자. 평가결과 법령 제정 및 개정을 위한 건의를 하고 있는가	

3. 분석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안심사기준표는 세부항목을 111개로 구성하여 세밀한 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율하고 있으나, 그 항목이 너무 방대하고 평가척도가 제시되고 있지 않아서 자의적인 평가에 그치게 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조례입법평가제도의 도입에 있어서는 필요한 항목을 비교분석하여 선정하는 절차를 통해서 너무 방대해서 평가가 불가능하게 되어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II.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제도 도입방안” 연구에서의 평가기준

1. 평가기준 마련의 배경

법령은 전국을 대상으로 제정하되 평균적인 성과와 영향을 기준을 정하고 평가하기 때문에 특수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이에 비해 조례는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하는 자치단체내의 지역만을 적용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법령에서 나타나는 미비점은 제거할 수 있다. 나아가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나 효율성, 민주성 등 입법평가의 여러 항목의 평가가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된다. 법령과

조례의 입법평가 필요성을 고려하면 제주도조례의 입법평가의 필요성이 도출될 수 있다고 본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입법체계는 다른 자치단체와 다르게 헌법과 지방자치법, 개별법의 범위안에서의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이라는 또 하나의 법률과 시행령이 상위법령으로 존재한다. 이와 같이 특별한 입법체계와 지방행정의 목표를 시행하기 위해 제정되는, 제주특별자치도 조례가 이러한 목표에 부응하는 내용과 절차에 따라 제정되었는지, 앞으로 제정될 것인가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⁶⁷⁾ 제주특별자치도 조례가 가지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례 입법평가의 도입에 관한 연구가 수행된 것이다.

2. 주요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제도도입방안 연구에서 제시한 평가항목은 13가지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평가할 항목⁶⁸⁾>

번호	항목명칭	내용
1	필요성	정책과 정책을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가. 법령의 위임, 규범화의 필요, 주민의 청구, 종전 조례의 평가결과 조례제정·개정할 필요가 있는가.
2	정당성	사익과 공익이 조화되고 헌법의 사회적 경제적 민주적 이념에 합치하는 내용인가.
3	적법성	상위 법령, 관례 등에 저촉·위배·상충되지 않는가.
4	조화성	다른 조례와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고 중복되거나 상충되지 않는가.
5	명료성 (평이성)	공직자와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가

67) 한상우 외 3인 공저, 앞의 책, 82면.

68) 한상우 외 3인 공저, 앞의 책, 99면 표4-2.

번 호	항목명칭	내 용
6	효율성 (경제성)	조례를 집행하는데 드는 비용은 경제적인가.
7	공평성	조례의 집행결과가 주민에게 공평하게 배분되는가
8	참여	조례집행에 주민, 전문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가
9	절차의 정당성	조례제정 절차가 민주적이고 합법적인가
10	부패방지성	조례집행과정에 공직자의 부패방지가 가능한가
11	지방분권성	제주도 특별자치도의 이념을 살리는 분권형인가
12	환경보전성	제주도의 천연자연을 유지·보존이 가능한 내용인가
13	사후관리	제정 후 일정시점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가

3. 분석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제도도입방안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평가항목들은 제주특별자치도 조례가 갖고 있는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것인바 일반적인 지방의회에서 적용하기에는 다소 그 특성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만 적용가능한 평가항목을 제외하면 일반적인 지표 개발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제 2 절 조례 입법평가를 위한 지표와 표준조례안

지방의회의 조례 입법평가를 위한 표준조례안 마련을 위하여 먼저, 평가대상 축소 및 평가주체의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 집행부 발의 조례를 포함할 것인지의 여부의 판단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평가대상의 축소와 관련해서는 사전적·사후적 평가로 이원화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평가대상을 축소하고, 평가수행은 외부에 맡기

고 평가과정 및 결과에 대한 관리·감독을 입법평가위원회에서 담당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집행부 발의 조례를 포함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의회의 집행부 통제를 통한 견제와 균형의 유지라는 측면에서는 물론이고 좋은 법령(조례)을 만들고자 하는 입법평가의 목적과 연계할 때에도 집행부 발의 조례를 제외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례 입법평가의 지표와 표준조례안을 제시한다. 조례 입법평가의 지표는 표준조례안에 있어서 별도로 제시될 사전·사후평가의 지표로 활용된다.

I. 조례 입법평가 지표

지방의회에서 적용 가능한 조례의 입법평가 지표는 위임사무에 대한 것과 고유사무에 대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위임사무에 관한 것은 재량의 여지가 거의 없을 것이며, 위임의 범위 안에서 조례의 제·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간단한 체크를 통해서 바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일본의 사례에서 시사점을 분석하여 본다면 최소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서 체크해야 하는 항목은 ① 필요성, ② 유효성, ③ 효율성, ④ 공평성, ⑤ 협동성(참가성), ⑥ 적법성이다. 이 여섯가지 항목은 조례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므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항목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조례 입법평가 지표는 다음 표와 같이 사전 입법평가의 지표와 사후 입법평가의 지표로 구성할 수 있다.

<사전 입법평가 지표>

대항목	세부항목	평가척도
필요성	- 자치법규의 제정이 위임근거가 되는 법령의 제정과 개정 에 따른 것인가	① 예 ② 아니오

제2 절 조례 입법평가를 위한 지표와 표준조례안

대항목	세부항목	평가척도
	- 해당 근거법령이 없는 경우 자치사무로 인정될 수 있는가	① 예 ② 아니오
	- 조례로 규정할 사항인가	① 예 ② 아니오
유효성	- 입안내용이 헌법 및 상위법령에 부합하는가	① 예 ② 아니오
	- 새로운 자치법규 제정의 경우 이미 시행중인 조례 또는 규칙의 개정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가	① 예 ② 아니오
	- 조례내용의 의미가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고 입법의도가 정확히 표현되고 있는가	① 예 ② 아니오
효율성	- 조례의 집행비용이 과다하게 수반되는가	① 예 ② 아니오
	- 비용이 수반되는 경우 비용추계가 수행되었는가	① 예 ② 아니오
공평성	- 자치법규의 내용이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다른 자치법규의 처벌규정과 비교하여 균형을 이루는가	① 예 ② 아니오
협동성	- 지역현안 및 불편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가	① 예 ② 아니오
	- 입법예고,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하였는가	① 예 ② 아니오
	-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였는가	① 예 ② 아니오
적법성	- 상위법령의 위임 근거가 명확하고 위임근거 하에 제정되고 있는가	① 예 ② 아니오

제 4 장 지방의회 조례 입법평가 표준조례안

대항목	세부항목	평가척도
	- 상위법령의 위임근거 없이 자치법규에 새로운 규제를 추가하였는가	① 예 ② 아니오
	- 상위법령에 구체적인 위임근거 없이 별칙규정을 두고 있는가	① 예 ② 아니오

사전 입법평가의 경우에는 조례의 시행이후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항목을 체크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항목을 제외하고 구성하였다.

<사후 입법평가 지표>

대항목	세부항목	평가척도
필요성	- 자치법규의 개정이 위임근거가 되는 법령의 제정과 개정 에 따른 것인가	① 예 ② 아니오
	- 해당 근거법령이 없는 경우 자치사무로 인정될 수 있는가	① 예 ② 아니오
	- 조례의 목적이 현시점에서도 적절한가	① 예 ② 아니오
	- 조례가 해결하고자 한 문제는 현시점에서도 존재하는가	① 예 ② 아니오
	- 조례의 제정이후 같은 법률이나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았는가	① 예 ② 아니오
유효성	-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 또는 모순이나 대립적인 경우가 발생하지 않았는가	① 예 ② 아니오

제 2 절 조례 입법평가를 위한 지표와 표준조례안

대항목	세부항목	평가척도
	- 새로운 자치법규 제정의 경우 이미 시행중인 조례 또는 규칙의 개정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가	① 예 ② 아니오
	- 조례내용의 의미가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고 입법의도가 정확히 표현되고 있는가	① 예 ② 아니오
효율성	- 조례의 집행비용과 그로 인하여 얻은 편익은 효과를 달성하고 있는가	① 예 ② 아니오
	- 예상하지 못한 집행비용/부작용이 발생한 경우가 있는가	① 예 ② 아니오
	- 재정부담이 제정 초기에 비하여 (과다하게) 증가하였는가	① 예 ② 아니오
공평성	- 조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남녀(성별영향)/장애인(장애인차별금지) 등을 차별하는 효과를 야기하였거나 야기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① 예 ② 아니오
	- 자치법규의 내용이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다른 자치법규의 처벌규정과 비교하여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	① 예 ② 아니오
	- 대상자·관계자로부터 불만이거나 소송제기는 없었는가	① 예 ② 아니오
협동성	- 조례가 특정지역이나 특정계층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동시에 다른 지역이나 다른 계층에 불리하게 작용한 경우가 있는가	① 예 ② 아니오

제 4 장 지방의회 조례 입법평가 표준조례안

대항목	세부항목	평가척도
	- 조례에 대한 개정 또는 폐지의 요구는 없었는가	① 예 ② 아니오
	- 지역현안 및 불편해소에 기여하였는가	① 예 ② 아니오
	- 입법예고,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하였는가	① 예 ② 아니오
	-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였는가	① 예 ② 아니오
적법성	- 상위법령의 위임 근거가 명확하고 위임근거 하에 제정되고 있는가	① 예 ② 아니오
	- 상위법령의 위임근거 없이 자치법규에 새로운 규제를 추가하였는가	① 예 ② 아니오
	- 상위법령에 구체적인 위임근거 없이 별칙규정을 두고 있는가	① 예 ② 아니오
	- 주민·사업자의 권리·이익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지 아니한가	① 예 ② 아니오
	- 행정소송이나 불복심사가 제기되어 있지 아니한가	① 예 ② 아니오

위임사무에 관련된 조례의 제·개정의 경우에는 필요성 항목에 대한 체크만으로도 조례 입법평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척도는 “① 예”와 “② 아니오”의 2단계 척도로 구성하여도 입법평가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충분하다. 또한 필요에 따라서 항목을 설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효성에 관한 항목을 체크하고 확인하기 위하여 각종 통계, 조사 결

과 등은 물론이고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 결과 등을 첨부할 수 있을 것이며, 효율성에 관해서는 예산·결산서 및 사회 통계 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구체적인 자료의 첨부는 지표를 담은 서식을 통해서도 구현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조례입법평가의 결과를 객관화하고자 하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II. 조례 입법평가 표준조례(안)

지방의회에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도입가능한 조례 입법평가 관련 표준조례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먼저 조례 입법평가의 목적, 대상 조례, 평가 주체, 기준, 입법평가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조례 입법평가를 도입하는 목적은 지방의회 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며,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 될 것이다.

조례 입법평가에 있어서 “입법평가”는 제시된 지표에 따라 자치법규의 실효성과 적합성을 사전·사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례 입법평가의 적용범위와 관련해서는 사전 입법평가의 경우에는 제정되는 조례 및 전부개정되는 조례를 대상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경우도 포함하도록 하였다. 사후 입법평가는 시행 후 3년이 경과한 조례를 대상으로 하도록 규정하였다. 다만, 기관설치·조직운영·업무분장 등 기술적 내용의 조례는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그 범위를 축소하여 원활한 입법평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조례에 대한 사전 입법평가와 사후 입법평가는 별도로 제시된 기준에 따라서 수행하도록 규정하였다.

제 4 장 지방의회 조례 입법평가 표준조례안

사전 입법평가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이 별표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이를 소관 상임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사후입법평가는 입법평가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하였다.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의 결과에 대해서는 지방의회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의회의 입법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지 아니하였다.

입법평가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조례 제정에 관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다.

세부적인 표준조례안의 내용은 아래에서 제시하기로 한다.

<표준조례안>

<p>ooo 조례 제 호</p> <p style="text-align: center;">ooo도(시) 입법평가 기본 조례안</p> <p>제o조(목적) 이 조례는 ooo의회에서 제정하는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자치법규의 시행효과 및 목적달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조례의 필요성을 확보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o조(정의) 이 조례에서 “입법평가”란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제o조의 지표에 따라 사전 또는 사후에 평가하여 실효성·타당성 등을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p> <p>제o조(적용범위 등) ① ooo의회에서 발의, 제출 또는 전부개정되는 조례의 경우에는 사전 입법평가를 실시한다.</p> <p>② 이 조례에 의한 사후 입법평가는 ooo의회에서 제정되거나 전부개정된 조례 중 시행 후 3년이 경과한 조례를 대상으로 한다.</p> <p>③ 제1항과 제2항의 사전·사후 입법평가 대상 조례 중 기관설치·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기술적 내용의 조례는 입법평가 대상 조례에서 제외한다.</p>

제o조(입법평가의 원칙)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는 자치법규의 목적 실현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투명성·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o조(입법평가의 기준) ① 사전 입법평가는 별표1을 기준으로 한다.

② 사후 입법평가는 별표2를 기준으로 한다.

제o조(입법평가위원회) ① 제o조의 사후입법평가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ooo의회 소속으로 입법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자격과 임기 등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제o조(사전 입법평가) ①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은 별표1을 기준으로 해당 조례에 대한 사전 입법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상임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 입법평가의 결과를 해당 상임위원회의 조례심의 전에 공표할 수 있다.

제o조(사후 입법평가) ① 사후 입법평가는 위원회에서 별표2를 기준으로 실시한다.

② 위원회는 입법평가를 위하여 조례를 발의한 의원 및 제출한 집행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사후 입법평가를 위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④ 위원회는 입법평가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 등에 의한 입법영향분석 용역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ooo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법평가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입법 목적 달성도, 비용과 편익 비료, 상위법령 관련 적합성 등 위원회가 정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o조(입법평가기준 수정의 심의) 별표에서 정한 입법평가지표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입법평가지표를 추가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 4 장 지방의회 조례 입법평가 표준조례안

- 제o조(입법평가 결과의 공표 및 활용 등) ① 제o조제1항의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은 조례를 발의한 의원 또는 제출한 집행부에 사전 입법평가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o조제1항의 위원회는 사후 입법평가 후 해당 조례를 발의한 의원 또는 제출한 집행부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소관 상임위원회 및 위원회는 사전·사후 입법평가 결과를 ooo의회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가 필요한 경우 상임위원회 및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사후 입법평가 결과에 따라 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한 조례를 선정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o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o조(시행일) 이 조례는 oooo년 oo월 oo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사전입법평가의 지표

대항목	세부항목	평가척도
필요성	- 자치법규의 제정이 위임근거가 되는 법령의 제정과 개정에 따른 것인가	① 예 ② 아니오
	- 해당 근거법령이 없는 경우 자치사무로 인정될 수 있는가	① 예 ② 아니오
	- 조례로 규정할 사항인가	① 예 ② 아니오
유효성	- 입안내용이 헌법 및 상위법령에 부합하는가	① 예 ② 아니오
	- 새로운 자치법규 제정의 경우 이미 시행중인 조례 또는 규칙의 개정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가	① 예 ② 아니오

제 2 절 조례 입법평가를 위한 지표와 표준조례안

대항목	세부항목	평가척도
	- 조례내용의 의미가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고 입법의도가 정확히 표현되고 있는가	① 예 ② 아니오
효율성	- 조례의 집행비용이 과다하게 수반되는가	① 예 ② 아니오
	- 비용이 수반되는 경우 비용추계가 수행되었는가	① 예 ② 아니오
공평성	- 자치법규의 내용이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다른 자치법규의 처벌규정과 비교하여 균형을 이루는가	① 예 ② 아니오
협동성	- 지역현안 및 불편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가	① 예 ② 아니오
	- 입법예고,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하였는가	① 예 ② 아니오
	-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였는가	① 예 ② 아니오
적법성	- 상위법령의 위임 근거가 명확하고 위임근거 하에 제정되고 있는가	① 예 ② 아니오
	- 상위법령의 위임근거 없이 자치법규에 새로운 규제를 추가하였는가	① 예 ② 아니오
	- 상위법령에 구체적인 위임근거 없이 벌칙규정을 두고 있는가	① 예 ② 아니오

제 4 장 지방의회 조례 입법평가 표준조례안

<별표 2>		
대항목	세부항목	평가척도
필요성	- 자치법규의 개정이 위임근거가 되는 법령의 제정과 개정에 따른 것인가	① 예 ② 아니오
	- 해당 근거법령이 없는 경우 자치사무로 인정될 수 있는가	① 예 ② 아니오
	- 조례의 목적이 현시점에서도 적절한가	① 예 ② 아니오
	- 조례가 해결하고자 한 문제는 현시점에서도 존재하는가	① 예 ② 아니오
	- 조례의 제정이후 같은 법률이나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는가	① 예 ② 아니오
유효성	-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 또는 모순이나 독립적인 경우가 발생하지는 않았는가	① 예 ② 아니오
	- 새로운 자치법규 제정의 경우 이미 시행중인 조례 또는 규칙의 개정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가	① 예 ② 아니오
	- 조례내용의 의미가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고 입법의도가 정확히 표현되고 있는가	① 예 ② 아니오
효율성	- 조례의 집행비용과 그로 인하여 얻은 편익은 효과를 달성하고 있는가	① 예 ② 아니오
	- 예상하지 못한 집행비용/부작용이 발생한 경우가 있는가	① 예 ② 아니오
	- 재정부담이 제정 초기에 비하여 (과다하게) 증가하였는가	① 예 ② 아니오

제 2 절 조례 입법평가를 위한 지표와 표준조례안

대항목	세부항목	평가척도
공평성	- 조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남녀(성별영향)/장애인(장애인차별금지) 등을 차별하는 효과를 야기하였거나 야기하고 있는지는 아니한가	① 예 ② 아니오
	- 자치법규의 내용이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다른 자치법규의 처벌규정과 비교하여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	① 예 ② 아니오
	- 대상자·관계자로부터 불만이나 소송제기는 없었는가	① 예 ② 아니오
협동성	- 조례가 특정지역이나 특정계층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동시에 다른 지역이나 다른 계층에 불리하게 작용한 경우가 있는가	① 예 ② 아니오
	- 조례에 대한 개정 또는 폐지의 요구는 없었는가	① 예 ② 아니오
	- 지역현안 및 불편해소에 기여하였는가	① 예 ② 아니오
	- 입법예고,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하였는가	① 예 ② 아니오
	-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였는가	① 예 ② 아니오
적법성	- 상위법령의 위임 근거가 명확하고 위임근거 하에 제정되고 있는가	① 예 ② 아니오
	- 상위법령의 위임근거 없이 자치법규에 새로운 규제를 추가하였는가	① 예 ② 아니오
	- 상위법령에 구체적인 위임근거 없이 벌칙규정을 두고 있는가	① 예 ② 아니오

대항목	세부항목	평가척도
	- 주민·사업자의 권리·이익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지 아니한가	① 예 ② 아니오
	- 행정소송이나 불복심사가 제기되어 있지 아니한가	① 예 ② 아니오

제 3 절 향후 과제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평가를 실시하고자 하여 필요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이를 수행하고자 한다면, 그에 수반하는 예산 및 인력에 관련된 지원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아가서는 조례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입법담당 공무원 및 의회의원을 대상으로 조례 입법평가에 관련된 교육을 제공하는 등 조례 입법평가 제도 도입에 전제가 되는 다양한 고려가 함께 이루어져야 조례 입법평가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조례를 대상으로 한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조례 입법평가의 결과를 축적하고 그에 따라서 관련 지표 및 표준조례안에 대한 수정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조례 입법평가 관련 지표의 항목 및 그러한 항목의 객관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제시에 관한 표준화에 관해서도 추가적으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 김기표, “입법영향평가의 제도화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학위논문(2011)
- 김병록, 조례제정권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토지공법연구 제43집, 한국토지공법학회(2009)
- 김수용 외8인,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한국법제연구원 (2008)
- 박영도, “입법평가제도에 관한 연구”, 법제 제531호(2002.3)
- 박영도, “입법관리로서의 입법평가의 제도화”, 한국입법학회 학술대회자료(2006)
- 박영도, “입법평가의 이론과 실제”, 한국법제연구원(2007)
- 서보건,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지방의회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유럽헌법연구 제12호, 유럽헌법학회(2012)
- 신상환, “독일의 입법과정상 입법평가적용의 구체적 사례분석 및 조망을 통하여 본 한국입법평가의 발전과제”, 법제 제540호(2002.12)
- 임종훈/박수철, 입법과정론, 박영사(2006)
- 차현숙, “의원입법의 입법평가와 평가방법론에 관한 소고”, 입법평가연구 제3호, 한국법제연구원(2010)
- 최운철, “의원입법의 평가와 평가제도의 발전에 관한 이론적 검토”, 공법연구 제33집 제3호(2005)

참고문헌

- 최윤철, “입법평가제도의 도입을 위한 전제조건-입법평가의 과제와 전망”, 한국법제연구원 2007년 국제학술회의 자료집(2007)
- 최윤철/홍완식, 입법평가제도의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법제처 정책 보고서(2005)
- 최환용,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제도 도입가능성, 사단법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통권 제22호 제9권2호(2009.6)
- 한상우 외 3인,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제도 도입 방안, 제주발전연구원(2012)
- 홍완식, “입법자의 법률개선 의무에 관한 연구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와 한국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중심으로 -”, 공법연구 31집, 한국공법학회(2002)

일본문헌

- 天野巡一、石川久、加藤良重編著 『自治体政策と訴訟法務：判例解説』(学陽書房、2007年)
- 磯崎 初仁 『自治体政策法務講義』(第一法規株式会社、2012年)
- 磯崎初仁編著 『政策法務の新展開：ローカル・ルールが見えてきた』(ぎょうせい、2004年)
- 出石稔、「自治立法の整備活用方針」(ガバナンス62号、2006年)
- 大島稔彦監修 『法制執務の基礎知識：法令理解、条例の制定・改正の基礎能力の向上 第3次改訂版』(第一法規、2011年)
- 木佐茂男編著 『自治立法の理論と手法』(ぎょうせい、1998年)
- 北村 喜宣・山口 道昭・出石 稔・磯崎 初仁 『自治体政策法務 - 地域特性に適合した法環境の創造』(有斐閣、2011年)

- 衣笠章 「評価法務の課題」(ジュリスト No. 1391、2009年)
- 鈴木 庸夫 『自治体法務改革の理論』, (勁草書房、2007年)
- 政策法務研究会、 『政策法務の理論と実践』(第1法規、2003年)
- 自治体法務検定委員会編 『自治体法務検定公式テキスト 政策法務編 平成23年度検定対応』(第1法規、2010年)
- 田中孝男 「分権時代の法制評価を考える」(地方自治の職員研修434号、1999年)
- 田中孝男、木佐茂男『テキストブック自治体法務』(ぎょうせい、2004年)
- 田村泰俊、千葉実、吉田勉編著 『自治体政策法務』(八千代出版、2009年)
- 松本英昭著 『地方自治法の概要 第4次改訂版』(学陽書房、2012年)

인터넷 자료

-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
- 네이버백과사전 <http://terms.naver.com>
-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

부 록

부록 1

일본 도도부현 의회기본조례규정항목등 비교표

항 목	[도도부현 의회]														[정령시 의회]							
	미에현	후쿠시마현	카나가와현	이와테현	오사카부	오이타현	미야기현	북해도	나가노현	고치현	이시카와현	가고시마현	나라현	교토부	히로시마현	에히메현	가와사키현	사이타마시	나고야시	히로시마시	니가타시	
《의회의 지위, 사명, 기능등》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 등	○	○	○	○	○	○	○	○	○	○	○	○	○	○	○	○	○	○	○	○	○	○
행정과의 관계, 감시(평가) 등	○	○	○	○	○	○	○	○	○	×	○	○	○	○	○	○	×	○	○	×	○	○
정책입안 및 정책제안	○	○	○	○	×	○	○	○	○	○	○	○	○	○	○	○	○	○	○	○	○	○
열린 의회(투명화, 공평화)	×	×	○	○	×	○	○	○	○	×	○	×	○	×	○	○	○	×	×	×	×	×
주민참가	○	×	×	×	×	×	×	×	×	×	×	×	×	×	×	○	×	×	×	×	○	○
의원의 책무 및 역할 등	○	×	×	○	×	○	×	×	×	○	○	○	×	○	○	×	○	○	○	○	○	×
헌법 등과 의회에 관한 규범과의 관계	○	×	×	×	○	×	×	×	×	×	×	×	○	×	×	×	×	○	×	×	×	○

1.전문

부록 1 일본 도도부현 의회기본조례정항목록 비교표

항 목	[도도부현 의회]														[정령시 의회]								
	미에현	후쿠시마현	카나가와현	이와테현	오사카부	오이타현	미야기현	북해도	나가노현	고치현	이시카와현	가고시마현	나라현	교토부	히로시마현	에히메현	가와사키현	사이타마시	나고야시	히로시마시	니가타시		
토의 장소로서의 활동	×	×	○	×	×	×	×	×	○	○	○	○	×	×	×	×	×	×	○	×	×	×	×
의장의 의회운영에 관한 책무	×	×	×	×	×	×	×	×	×	×	×	×	×	×	×	×	×	×	×	×	×	×	○
<의원의 활동원칙, 책무>																							
자유로운 토의의 존중	×	×	×	×	×	×	×	×	×	×	×	×	×	×	×	×	×	×	×	×	×	×	×
주민의견의 정확한 파악	○	○	○	○	○	○	○	○	○	○	○	○	○	○	○	○	○	○	○	○	○	○	○
주민대표로서 어울리는 활동	×	×	×	×	×	×	×	×	×	×	×	×	×	×	×	×	×	×	×	×	×	×	○
주민복지의 향상을 위한 활동	×	×	×	×	×	×	×	×	×	×	×	×	×	×	×	×	×	×	×	×	×	×	×
의원활동등에 관한 설명	×	×	×	×	×	×	×	×	×	×	×	×	×	×	×	×	×	×	×	×	×	×	○
회파의 활동(정책에 관한 협의)	×	×	×	×	×	×	×	×	×	×	×	×	×	×	×	×	×	×	×	×	×	×	○
<의회의 회의운영>																							
정시에 개최	×	×	×	×	×	×	×	×	×	×	×	×	×	×	×	×	×	×	×	×	×	×	×
후회시의 이의결정명·재회시각의 고지	×	×	×	×	×	×	×	×	×	×	×	×	×	×	×	×	×	×	×	×	×	×	×
청취자에게 자료 제공	×	×	×	×	×	×	×	×	×	×	×	×	×	×	×	×	×	×	×	×	×	×	×

항 목		[도도부현 의회]														[정령시 의회]									
		미에현	후쿠시마현	카나가와현	이와테현	오사카부	오이타현	미야기현	북해도	나가노현	고치현	이시카와현	가코시마현	나라현	교토부	히로시마현	에히메현	가와사키현	사이타마시	나고야시	히로시마시	니가타시			
	위원회의 강좌의 개최	×	×	×	×	×	×	×	×	×	×	×	×	×	×	×	×	×	×	×	×	×	×	×	
	위원장 보고의 자기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4. 주민과 의회와의 관계	《정보공개, 정보제공, 설명책임》																								
	본회의 및 위원회의 공개	○	×	○	×	×	○	×	○	○	○	○	○	○	○	○	○	○	○	○	○	○	○	○	
	의회활동에 관한 자료의 공개(회의록 등)	○	×	○	×	×	×	×	×	×	×	×	×	×	×	×	×	×	×	×	×	×	×	×	
	의회활동에 관한 보고회의 개최	×	×	×	×	×	×	×	×	×	×	×	×	×	×	×	×	×	×	×	×	×	×	×	
	홍보기능의 충실도	○	○	○	○	○	○	○	○	○	○	○	○	○	○	○	○	○	○	○	○	○	○	○	
	중요의인등에 대한 각의원의 태도 공표	×	×	×	○	×	×	×	×	×	×	×	×	×	×	×	×	×	×	×	×	×	×	×	
	《주민 참가》																								
	주민등의 참가에 의한 의견교환회의 개최 (일반회의 등)	○	×	×	○	○	×	×	×	×	×	×	×	×	×	×	×	×	×	×	×	×	×	×	○
	참고인, 공청회제도의 활용	○	○	○	○	×	×	×	×	○	○	○	○	○	○	○	○	○	○	○	○	○	○	○	○
	청원, 진정자로부터의 의견청취	×	×	○	×	×	×	×	×	×	×	×	×	×	×	×	×	×	×	×	×	×	×	×	○

부록 1 일본 도도부현 의회기본조례정항목록 비교표

항 목	[도도부현 의회]														[정령시 의회]							
	미에현	후쿠시마현	카나가와현	이와테현	오사카부	오이타현	미야기현	북해도	나가노현	고치현	이시카와현	가코시마현	나라현	교토부	히로시마현	에히메현	가와사키현	사이타마시	나고야시	히로시마시	니가타시	
<본회의의 형식 등>																						
문답방식의 실시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직원의 반문권의 부여	×	×	○	○	×	○	○	×	×	○	×	○	○	×	○	×	○	○	○	×	○	○
<기 타>																						
의회와 단체장과의 관계(명문화)	○	○	○	○	×	○	○	○	×	○	○	○	○	○	○	○	○	○	○	○	○	○
정책 등의 형성과정의 설명	×	×	○	×	×	×	×	×	×	×	×	×	×	×	×	×	×	×	×	×	×	×
중요정책결정에 관한 의회의 의견청취·설명	×	×	×	×	×	×	×	×	×	×	×	×	×	×	×	×	○	×	×	×	○	○
시장 등에 대한 문서를 이용한 질문	×	×	×	×	×	×	×	×	×	×	×	×	×	×	×	×	×	×	×	×	×	×
예산·결산에 관한 심의·차료의 작성(설명)	×	×	×	×	×	×	×	×	×	×	×	×	×	×	×	×	○	×	○	×	○	○
정책집행에 관한 감시 및 평가	○	○	○	○	○	○	○	○	○	○	○	○	○	○	○	○	○	○	○	○	○	○
의결 대상건의 확대	×	×	○	○	○	○	×	×	×	×	×	×	×	×	×	×	○	○	○	×	○	○

5.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관계

항 목		[도도부현 의회]														[정령시 의회]							
		미에현	후쿠시마현	카나가와현	이와테현	오사카부	오이타현	미야기현	북해도	나가노현	고치현	이시카와현	가코시마현	나라현	교토부	히로시마현	에히메현	가와사키현	사이타마시	나고야시	히로시마시	니가타시	
6. 의회의 기능 강화	부속기관의 설치	○	×	×	×	○	×	×	×	×	×	○	×	×	○	×	×	○	×	○	○	○	○
	전문가(학계전문가등)의 활용	○	×	×	○	×	×	○	×	×	○	×	○	×	×	○	×	×	○	×	×	×	○
	검토회 등의 설치	○	○	×	○	×	×	○	×	×	○	×	○	×	×	○	×	×	○	×	×	×	×
7. 토의의 보장 확대	의원상호간의 자유토의중심의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의원간의 토의에 의한 협의 형성	○	×	×	○	×	×	○	×	×	×	×	×	×	○	×	×	×	×	○	×	×	○
	지자체 단체장의 본회의 등에서의 필요최소한의 출석	×	×	×	×	×	×	×	×	×	×	×	×	×	×	×	×	×	×	×	×	×	×
8. 의회개혁의 추진 (의회개혁회의의 설치 등)	작극적인 의원제안(정책제안)의 노력의무 · 기능강화	○	○	×	○	○	○	○	○	○	○	○	○	○	○	○	○	○	○	○	○	○	○
	정책토론회의 개최	×	×	×	×	×	×	×	×	×	×	×	×	×	×	×	×	×	×	×	×	×	×
9. 의회 및 사무국 체제	의회홍보의 충실	×	×	×	×	×	×	×	×	×	×	×	×	×	×	×	×	×	×	×	×	×	×
	위원회 등의 적절한 운영(활동)	○	○	×	○	×	×	○	×	×	×	○	×	○	○	○	○	○	○	○	○	○	○
	의원연수의 충실, 강화 (연수회, 연구회의 개최 등)	○	×	×	○	×	×	×	×	○	×	×	×	×	×	×	×	×	×	×	×	×	×
	의회도서관의 운영 및 기능강화·주민이용	○	×	○	○	×	○	×	○	○	○	○	○	○	○	○	○	○	○	○	○	○	○
사무국의 기능강화(조사, 법제기능 등)	○	×	○	○	○	×	×	×	○	○	○	○	○	○	○	○	○	○	○	○	○	○	○

부록 1 일본 도도부현 의회기본조례정항목등 비교표

항 목		[도도부현 의회]														[정령시 의회]							
		미에현	후쿠시마현	카나가와현	이와테현	오사카부	오이타현	미야기현	북해도	나가노현	고치현	이시카와현	가코시마현	나라현	교토부	히로시마현	에히메현	가와사키현	사이타마시	나고야시	히로시마시	니가타시	
10. 의원의 정치윤리 신분 등	의원의 정치윤리	○	×	×	○	○	○	○	○	○	○	○	○	○	○	○	○	○	○	○	○	○	○
	장별	×	×	×	×	×	×	×	×	×	×	×	×	×	×	×	×	×	×	×	×	×	×
	의원보수	×	×	○	○	×	○	×	×	×	×	×	×	×	×	×	×	○	○	○	×	○	○
	의원정수	×	×	○	○	○	○	○	×	×	×	×	×	×	○	×	×	○	○	○	○	○	○
	정례회의 횟수·회기	×	×	○	○	○	○	○	×	×	×	×	×	×	○	×	×	○	○	○	○	○	○
11. 정무조사비(별도 조례에서 규정)		○	×	○	○	○	○	○	○	○	○	○	○	○	○	○	○	○	○	○	○	○	○
12. 조례의 최고규범성		×	○	×	×	○	○	○	×	○	○	○	○	×	○	○	○	○	×	×	×	×	×
13. 의회의 기본적 사항으로서의 위치		○	×	○	○	○	○	○	×	○	○	○	○	○	○	○	○	○	○	○	○	○	○
14. 의회 및 의원의 책무 (의회의 조례 등을 준수한 의회운영)		×	○	×	×	×	×	×	×	×	×	×	×	×	×	×	○	○	○	×	○	○	○
15. 조례의 제정토 규정		○		○	○	○	○	○															

부록 2

가나가와현(神奈川県)의 조례평가 결과

2013년 3월 28일 현재.

구분	조례명	조례번호	소관과	조례의 개요	재검토 결과	다음 재검토 예정	재검토 규정의 유무
1	가나가와현 직원등 불상사 방지 대책 조례	2007년 가나가 와현 조례 제43호	총무국 총무부 행정사무 감찰과	직원 등의 윤리 유지 및 공정한 직무 수행을 도모하고, 현의 정책에 대한 현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직원 부패 방지 대책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8년	없음
2	가나가와현 직원 정수 조례	1949년 가나가 와현 조례 제46호	총무국 인재과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3항에 의해 지사 직속기관 등의 직원 정수를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3년	없음
3	가나가와현 부지사 정수 조례	1962년 가나가 와현 조례 제59호	총무국 인재과	지방자치법 제161조 제2항에 의해 가나가와 현의 부지사 정수를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3년	없음
4	재임용에 관한 조례	2001년 가나가 와현 조례 제9호	총무국 인재과	지방공무원법 제28조의 4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의해 재임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3년	없음

부 록

구분	조례명	조례번호	소관과	조례의 개요	재검토 결과	다음 재검토 예정	재검토 규정의 유무
5	공익법인 등에의 파견등에 관한 조례	2001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61호	총무국 인재과	공익법인 등에 일반직 지방공무원 파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익적 법인 등에 직원의 파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3년	없음
6	임시직원 채용에 관한 조례	2003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4호	총무국 인재과	지방공공단체의 일반직 기간제 직원채용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는 직원의 임기를 정한 채용 및 임기를 정하여 채용된 직원급여의 특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3년	없음
7	임시직 연구원 채용등에 관한 조례	2002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5호	총무국 인재과	지방공공단체의 일반직 기간제연구원의 채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제3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 및 지방 공무원 법 제2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공설의 시험연구기관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임기를 정한 채용 및 임기를 정하고 채용된 직원의 급여의 특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3년	없음
8	지사 및 부지사의 급여등에 관한 조례	1953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8호	총무국 인재과	지방자치법 제204조 제3항에 따라 지사와 부지사의 급여, 기타 급여 및 여비 및 그 지급방법에 대해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3년	없음

부록 2 가나가와현(神奈川県)의 조례평가 결과

구분	조례명	조례번호	소관과	조례의 개요	재검토 결과	다음 재검토 예정	재검토 규정의 유무
9	지사등의 급여의 특례에 관한 조례	2005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12호	총무국 인재과	별정직의 급여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례로 정하고 있지만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현 재정 및 현의 행정 운영 전반에 대한 기본적 자세를 보이기 위해 별정직의 급여 등에 대해 특례 감액 조치를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	없음
10	현 의회의원의 의원보수, 비용보상 및 기말수당에 관한 조례	1956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41호	총무국 인재과	지방자치법 제203조 제4항에 따라 의원보수비용 변상 및 기말수당의 금액 및 그 지급 방법에 대해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3년	없음
11	교육위원회의 보수등에 관한 조례	1951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9호	총무국 인재과	지방자치법 제203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 및 비용변상, 그 지급방법에 대해 정하고 있다.(교육장인 교육위원회 위원을 제외한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3년	없음
12	인사위원회 위원의 급여 등에 관한 조례	1951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38호	총무국 인재과	지방자치법 제203조의 2 제4항에 따라 인사위원회 위원의 보수 또는 월급 기타의 급여 및 비용변상 또는 여비 및 그 지급 방법에 대해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3년	없음

부 록

구분	조례명	조례번호	소관과	조례의 개요	재검토 결과	다음 재검토 예정	재검토 규정의 유무
13	감사위원의 급여등에 관한 조례	1951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8호	총무국 인재과	지방자치법 제203조의 2 제4항 및 제204조 제3항에 근거하여 감사위원의 보수 또는 월급 기타의 급여 및 비용변상 또는 여비 및 그 지급 방법에 대해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3년	없음
14	가나가와현 노동위원회의 위원등의 보수 및 비용보상과 그 지급방법에 관한 조례	1951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17호	총무국 인재과	지방자치법 제203조의 2 제4항에 따라 노동위원회 위원, 특별조정위원 및 알선인에게 지급하는 보수 및 비용변상, 그 지급방법에 대해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3년	없음
15	선거관리위원 등의 보수 등에 관한 조례	1956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32호	총무국 인재과	지방자치법 제203조의 2 제4항에 의하여 선거관리 위원 및 임시위원인 보충원에게 지급하는 보수 및 비용변상, 그 지급방법에 대해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3년	없음
16	선거장등의 보수등에 관한 조례	1956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33호	총무국 인재과	지방자치법 제203조의 2 제4항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장 등에 지급하는 보수 및 비용변상, 그 지급방법에 대해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3년	없음
17	가나가와현 수용위원회위원 및 그외의 자의 급여등에 관한 조례	1951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79호	총무국 인재과	지방자치법 제203조의 2 제4항에 근거하여 수용 위원회 위원 등에 지급하는 보수 및 비용 변상, 그 지급 방법에 대해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3년	없음

부록 2 가나가와현(神奈川県)의 조례평가 결과

구분	조례명	조례번호	소관과	조례의 개요	재검토 결과	다음 재검토 예정	재검토 규정의 유무
18	해구 어업 조정 위원회 위원 및 전문 위원의 보수 등에 관한 조례	1953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10호	총무국 인재과	지방자치법 제203조의 2 제4항에 근거하여 해구어업조정 위원회 위원 및 전문 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 및 비용변상, 그 지급방법에 대해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3년	없음
19	내수면 어장 관리 위원회 위원의 보수 등에 관한 조례	1953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11호	총무국 인재과	지방자치법 제203조의 2 제4항에 따라 내수면어장관리위원회 위원에 지급하는 보수 및 비용변상, 그 지급방법에 대해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3년	없음
20	공안위원회 위원의 보수등에 관한 조례	1951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10호	총무국 인재과	지방자치법 제203조의 2 제4항에 따라 공안위원회 위원에 지급하는 보수 및 비용변상, 그 지급방법에 대해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3년	없음
21	공영기업관리자의 급여등에 관한 조례	1966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51호	총무국 인재과	지방자치법 제204조 제3항에 따라 공기업관리자 및 병원사업 관리자의 급여 기타의 급여 및 여비 및 그 지급방법에 대해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3년	없음
22	부속 기관의 위원 기타 구성원의 보수 등에 관한 조례	1956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34호	총무국 인재과	지방자치법 제203조의 2 제4항에 근거하여 부속 기관의 위원 기타 구성원에게 지급하는 보수 및 비용변상, 그 지급 방법에 대해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3년	없음

부 록

구분	조례명	조례번호	소관과	조례의 개요	재검토 결과	다음 재검토 예정	재검토 규정의 유무
23	가나가와 현 전문 위원 등 보수 및 비용 보상, 그 지급 방법에 관한 조례	1950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71호	총무국 인재과	지방자치법 제203조의 2 제4항에 근거하여 전문위원 등에 지급하는 보수 및 비용변상, 그 지급방법에 대해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3년	없음
24	증인 등의 비용 보상에 관한 조례	1953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12호	총무국 인재과	지방자치법 제207조에 따라 동법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두한 선거인 등의 비용변상, 그 지급방법에 대해 정하고 있다.	개정을 검토함 <상세> →2009년 7월 개정	2013년	없음
25	지사 등의 기말 수당 및 직원의 관리직 수당의 특례에 관한 조례	1998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8호	구 총무부 인사과	1998년의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현 재정 및 현의 행정 운영 전반에 대한 기본적 방침의 필요에 의해, 1998년도부터 1999년도까지의 특별직의 기말수당 및 직원의 관리직 수당을 감액하는 것에 대해 정하고 있다.	폐지한다. <상세> →2009년 7월 폐지	-	없음
26	직원의 급여에 관한 조례	1957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52호	총무국 노무급여과	지방공무원법 제2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직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3년	없음
27	직원의 특수근무 수당에 관한 조례	1957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53호	총무국 노무급여과	지방공무원법 제2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직원의 급여(특수근무수당)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3년	없음

부록 2 가나가와현(神奈川県)의 조례평가 결과

구분	조례명	조례번호	소관과	조례의 개요	재검토 결과	다음 재검토 예정	재검토 규정의 유무
28	현업 직원의 급여의 종류 및 기준에 관한 조례	1957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55호	총무국 노무급여과	지방공영기업 등 노동관계에 관한 법률 부칙 제5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현업직원의 급여의 종류 및 기준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3년	없음
29	직원의 퇴직수당에 관한 조례	1954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7호	총무국 노무급여과	지방자치법 제204조 제3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24조 제6항에 근거하여 직원퇴직수당의 지급액 지급 방법 등에 대해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4년	없음
30	직원의 여비에 관한 조례	1956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26호	총무국 노무급여과	지방자치법 제204조 제3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24조 제6항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3년	없음
31	직원 근무 시간, 휴가 등에 관한 조례	1957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54호	총무국 노무급여과	지방공무원법 제2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직원의 근무 시간,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3년	없음
32	직원의 신분제에 관한 조례	1951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53호	총무국 노무급여과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직원의 의사에 반한 휴직 및 감봉의 사유, 직원의 의사에 반한 강등, 면직, 휴직 및 감봉의 절차 · 효과 및 직원의 실직의 예외에 대해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3년	없음

부 록

구분	조례명	조례번호	소관과	조례의 개요	재검토 결과	다음 재검토 예정	재검토 규정의 유무
33	쇼와천황의 승하에 따른 직원의 징계 면제 및 직원의 배상 책임에 근거하는 채무 면제에 관한 조례	1989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4호	총무국 인재과	쇼와천황의 승하에 따른 국가공무원 징계 면제 등과 같은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해당 징계를 장래에 향해 면제 및 지방자치법에 따른 직원의 배상책임에 근거하는 채무에 대해서 장래에 향해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3년	없음
34	직원의 징계 절차 및 효과에 관한 조례	1951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54호	총무국 인재과	지방공무원법 제29조 제2항 및 제4항에 근거하여 직원의 징계절차 및 효과에 대해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3년	없음
35	직원의 정년 등에 관한 조례	1983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28호	총무국 인재과	지방공무원법 제28조의 2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현의 직원 등의 정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3년	없음
36	직원의 육아 휴업 등에 관한 조례	1992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7호	총무국 노무급여과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업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직원의 육아휴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3년	없음
37	직원의 수학 부분 휴업에 관한 조례	2005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9호	총무국 조직인재부 인재과	지방공무원법 제2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직원의 학업 부분휴업에 관한 필요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5년	없음

부록 2 가나가와현(神奈川県)의 조례평가 결과

구분	조례명	조례번호	소관과	조례의 개요	재검토 결과	다음 재검토 예정	재검토 규정의 유무
38	직원의 고령자 부분 휴업에 관한 조례	2005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10호	총무국 노무급여과	지방공무원법 제26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직원의 고령자 부분 휴업에 관한 필요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5년	없음
39	직원의 복무의 선서에 관한 조례	1951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2호	총무부 인재과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새로 직원이된 자의 복무선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3년	없음
40	직무에 전념할 의무의 특례에 관한 조례	1951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3호	총무부 인재과	지방공무원법 제35조에 따라 직무에 전념할 의무의 특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3년	없음
41	외국의 지방 공공 단체의 기관 등에 파견되는 직원의 처우 등에 관한 조례	1988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6호	총무부 인재과	외국 지방공공단체의 기관 등에 파견되는 일반직 지방 공무원 처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7조 및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의 지방공공단체의 기관 등에 파견되는 직원의 처우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3년	없음
42	직원의 대학원 등 파견 연수 비용의 상환에 관한 조례	2007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5호	총무국 인재과	국가공무원 유학비용의 상환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직원의 대학원 등 파견연수비용의 상환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7년	없음

부 록

구분	조례명	조례번호	소관과	조례의 개요	재검토 결과	다음 재검토 예정	재검토 규정의 유무
43	가나가와현 연금 조례	1957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41호	총무부 직원후생과	1962년 11월 30일 이전에 퇴직한 공무원 등에 대한 연금 지급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3년	없음
44	연금 및 다른 지방 공공 단체의 퇴직 연금 및 퇴직 일시금의 기초가 될 재직 기간과 직원의 퇴직 연금 및 퇴직 일시금의 기초가 될 재직 기간과 통산에 관한 조례	1957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41호	총무부 직원후생과	연금 및 다른 지방공공단체의 퇴직연금 및 퇴직 일시금의 기초가 될 재직기간과 직원의 퇴직연금 및 퇴직 일시금의 기초가 될 재직기간과 통산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3년	없음
45	의회의 의원 기타 파트 타임 직원의 공무 재해 보상 등에 관한 조례	1967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50호	총무국 노무급여과	지방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원 기타 비상근 직원에 관한 공무상 재해 또는 통근에 의한 재해보상 제도를 정하고 있다.	개정을 검토함 <상세> →2009년 12월 개정	2015년	없음
46	현립 학교 의사, 학교 치과 의사, 학교 약사 공무 재해 보상에 관한 조례	1987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18호	교육위원회 교육국 보건체육과, 현민부 학사진흥과, 보건복지부 보건복지과	현립학교의 교내치과의사, 교내약사 공무재해보상 범위, 금액 및 지급방법 기타 보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5년	없음

부록 2 가나가와현(神奈川県)의 조례평가 결과

구분	조례명	조례번호	소관과	조례의 개요	재검토 결과	다음 재검토 예정	재검토 규정의 유무
47	직원 단체 등록에 관한 조례	1966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28호	총무국 노무급여과	지방공무원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직원단체 등록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3년	없음
48	직원 단체를 위한 직원의 행위 제한의 특례에 관한 조례	1966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29호	총무국 노무급여과	지방공무원법 제55조의 2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직원 단체를 위한 직원의 행위 제한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3년	없음
49	가나가와현 인사 행정의 운영 등의 상황의 공표에 관한 조례	2005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11호	총무국 조직인재부 노무급여과	지방공무원법 제5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현의 인사행정의 운영 등의 상황보고 및 공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5년	없음
50	가나가와 현 조례 등의 공포에 관한 조례	1950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39호	정책국 정책법무과	지방자치법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가나가와현 조례 등의 공포에 대해 공포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을 검토함 <상세> →2009년 12월 개정	2013년	없음
51	가나가와현 정보 공개 조례	2000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26호	현민국 정보공개과	행정문서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밝히는 동시에 그 권리에 대응하는 기관의 공개의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을 검토함 <상세> →2010년 3월 개정	2014년	없음

부 록

구분	조례명	조례번호	소관과	조례의 개요	재검토 결과	다음 재검토 예정	재검토 규정의 유무
52	가나가와현 개인정보보호 조례	1990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6호	현민국 정보공개과	현의 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개시, 정정 및 이용정지를 요구하는 개인의 권리를 밝히는 동시에 개인 정보의 적절한 취급확보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을 검토함 <상세> →2010년 8월 개정	2014년	있음
53	가나가와현 행정절차조례	1995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1호	정책국 정책법무과	현의 조례 등을 근거로 처분·신고 및 현이 행하는 행정지도에 관한 절차에 관해 공통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4년	없음
54	가나가와현 행정수속 등에서의 정보통신 기술이용에 관한 조례	2005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8호	총무부 행정개혁과	행정운영의 간소화 및 효율화를 위해 현의 기관에 온라인 수속 등에 관해 공통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5년	없음
55	가나가와현 통계조사조례	1951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43호	총무부 통계과	현이 통계조사를 실시하면서 조사 대상자의 신고의무, 조사원 등에 의한 실시조사 결과에 관한 비밀보호, 조사 결과의 공표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을 검토함 <상세> →2008년 12월 개정	2014년	있음
56	가나가와현의 행정공로자에 관한 조례	1999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11호	총무국 인재과	현의 행정공로자 지정, 전형, 위치 등을 정하고 있다.	개정·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3년	없음

부록 2 가나가와현(神奈川県)의 조례평가 결과

구분	조례명	조례번호	소관과	조례의 개요	재검토 결과	다음 재검토 예정	재검토 규정의 유무
57	가나가와현 외부 감사 계약에 근거한 감사에 관한 조례	1999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2호	총무부 행정사무 감찰과	지방자치법 제252조의 27 제1항의 규정에 기초한 외부감사계약에 따라 감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3년	없음
58	가나가와현 의회 의원 및 가나가와 현 지사 선거의 선거 운동의 관공비 부담에 관한 조례	1993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18호	총무부 시정촌 행정과	공직 선거 법 규정에 따라 가나가와 현 의회 의원 및 가나가와현 지사 선거시 자동차 사용 및 선거운동용 포스터의 작성 등의 공비 부담액 · 지급절차에 대해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3년	없음
59	포스터 게시관에 관한 조례	1982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55호	총무부 시정촌 행정과	공직선거법 제144조의 2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가나가와현 의회 의원 선거에서 선거운동용 포스터 게시의 설치 등에 대해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3년	없음
60	선거공보에 관한 조례	1952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44호	총무부 시정촌 행정과	공직선거법 제172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가나가와 의회 의원선거에서 선거공보의 발행 등에 대해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3년	없음
61	가나가와현 의회정례회 조례	1956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39호	정책부 재정과	가나가와현 의회 정례회 횟수를 매년 4회로 정하고 있다.	개정을 검토함 <상세> →2009년 10월 개정	2014년	없음

부 록

구분	조례명	조례번호	소관과	조례의 개요	재검토 결과	다음 재검토 예정	재검토 규정의 유무
62	가나가와현 행정에 관한 기본 계획을 의회의 의결 사건으로 정하는 조례	2004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58호	정책국 총무과	지방자치법 제96조 제2항에 따라 현 행정에 관한 기본적인 계획의 책정 등을 의회의 의결건으로 하는 것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4년	없음
63	정치 윤리의 확립을 위한 가나가와현 지사의 자산 등의 공개에 관한 조례	1995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56호	지사실 비서과	정치윤리의 확립을 위한 국회의원의 자산 등의 공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가나가와현 지사의 자산 등의 공개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3년	없음
64	가나가와현부 설치 조례	1956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30호	총무국 인재과	지방자치법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사의 최근 하위의 내부조직의 설치 및 그 분장하는 사무에 대해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3년	없음
65	가나가와현 행정기관 설치 조례	1956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31호	총무부 인사과	지방자치법 제155조 제1항 및 제2항 및 제15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경찰서 제외)의 설치 및 명칭, 위치 및 관할 구역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3년	없음
66	부속기관의 설치에 관한 조례	1953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5호	총무국 인재과	지방자치법 제138조의 4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심사회 심의회 조사회 기타 조정 및 심사, 자문 또는 조사를 위한 부속기관의 명칭, 설치목적 및 위원수에 대해 정하고 있다.	개정을 검토함 <상세> →2009년 12월 개정	2014년	없음

부록 2 가나가와현(神奈川県)의 조례평가 결과

구분	조례명	조례번호	소관과	조례의 개요	재검토 결과	다음 재검토 예정	재검토 규정의 유무
67	가나가와현의 휴일을 정하는 조례	1989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12호	총무국 인재과	지방자치법 제4조의 2에 따라 가나가와현의 휴일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3년	없음
68	도시로서의 요건에 관한 조례	1954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44호	총무부 시정촌 행정과	지방자치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시가 되려는 보통 지방공공단체가 구비해야 하는 도시시설 기타 도시로서의 요건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3년	없음
69	마을로서의 요건에 관한 조례	1948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32호	총무부 시정촌 행정과	지방자치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町)이 되려는 보통 지방공 단체가 구비해야 하는 요건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3년	없음
70	사무처리의 특례에 관한 조례	1957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41호	총무부 시정촌 행정과	지방자치법 제252조의 17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시읍면이 처리하는 것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3년	없음
71	가나가와현 고정자산평가 심의회 조례	1962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39호	총무부 시정촌 행정과	지방세법 제401조의 2의 규정에 기초하여 설치해 가나가와현 고정자산평가 심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3년	없음

부 록

구분	조례명	조례번호	소관과	조례의 개요	재검토 결과	다음 재검토 예정	재검토 규정의 유무
72	가나가와현 인사위원회 설치 조례	1951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37호	총무국 인재과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나가와현 인사위원회의 설치 등에 대해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3년	없음
73	가나가와현 감사위원회에 관한 조례	2007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3호	총무국 인재과	지방자치법 제20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3년	없음
74	가나가와현 공익인정등 심의회 조례	2007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37호	총무국 문서과	가나가와현 공익인정 등 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7년	없음
75	가나가와현 행정서사시험 절차 수수료 조례	2000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3호	정책국 정책법무과	행정사법 제3조에 따라 시행을 의무화되고 있는 행정사시험에 관련된 수수료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3년	없음
76	주민 기본대장법에 근거한 본인 확인 정보 보호에 관한 심의회에 관한 조례	2002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6호	총무부 시정촌 행정과	주민기본대장법 제30조의 9의 규정에 의거 도도부현에 설치가 의무화된 본인확인정보(주민등록 표에 기재된 성명·생년월일, 성별, 주소, 주민표 코드·부수 정보)의 보호에 관한 심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0년 4월 폐지	-	없음

부록 2 가나가와현(神奈川県)의 조례평가 결과

구분	조례명	조례번호	소관과	조례의 개요	재검토 결과	다음 재검토 예정	재검토 규정의 유무
77	주민 기본 대장 법에 기초하여 지정 정보 처리 기관이 행하는 국가 기관 등에 대한 본인 확인 정보의 제공에 관련된 수수료에 관한 조례	2002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7호	총무부 시정촌 행정과	주민기본대장법 제30조의 10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사가 본인확인 정보처리업무를 지정정보처리기관에 위임할 때 해당 사무처리에 관련된 수수료를 지정정보처리기관의 수입으로 하는 것과 해당 수수료 산정 방법에 대해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0년 4월 폐지	-	없음
78	전자서명에 관련된 지방 공공 단체의 인증업무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발행수수료 및 정보제공 수수료에 관한 조례	2003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72호	총무국 정보기획과	전자서명에 관련된 지방공공단체의 인증업무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지사가 지정인증기관에 인증업무를 위임할 때, 전자증명서의 발급수수료 및 정보제공수수료를 지정인증기관의 수입으로 하는 것과 수수료 액수의 결정방법에 대해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3년	없음
79	의회의 의결에 부의해야하는 사건 등에 관한 조례	1964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74호	정책국 총무과	지방자치법 제96조 제1항 제5호 및 제8호와 제2항, 제224조2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해, 의회의 의결에 부의해야 하는 사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4년	없음

부 록

구분	조례명	조례번호	소관과	조례의 개요	재검토 결과	다음 재검토 예정	재검토 규정의 유무
80	보통 재산 및 물품의 교환, 출자, 무상 양도, 무상 대부 등에 관한 조례	1964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74호	정책국 총무과	지방자치법 제96조 제1항 제5호 및 제8호 및 제2항 및 제24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로 정할 사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3년	없음
81	수입인지에 관한 조례	1964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78호	총무국 재산관리과	지방자치법 제23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통재산 및 물품의 교환, 출자, 무상 양도, 무상 대부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4년	없음
82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계약을 정한 조례	1964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76호	정책부 재정과	지방자치법 제23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지에 의한 수입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4년	없음
83	특별회계의 설치에 관한 조례	2005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87호	정책국 예산조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7조의 17의 규정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계약에 대해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4년	없음
84	행정 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을 방해하지 않는 한도내에서의 사용료에 관한 조례	1928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75호	정책국 예산조정과	지방자치법 제20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의 설치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을 검토함 <상세> →2009년 3월 개정	2014년	없음
85	가나가와현 재정기금조례	1964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79호	총무부 재산관리과	지방자치법 제238조의 4 제7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을 허가한 경우의 사용료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4년	없음

부록 2 가나가와현(神奈川県)의 조례평가 결과

구분	조례명	조례번호	소관과	조례의 개요	재검토 결과	다음 재검토 예정	재검토 규정의 유무
86	가나가와현 현채관리기금 조례	1979년 가나가 와현 조례 제32호	정책국 자금조사과	경제사정의 현저한 변화 대처 등을 위해 가나가와현 재정기금의 설치, 관리 및 처분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4년	없음
87	가나가와현 수수료 조례	1979년 가나가 와현 조례 제33호	정책국 자금조사과	현채의 상환 및 현채의 적정한 관리를 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적립하기 위한 가나가와 현의 현채 관리기금의 설치, 관리 및 처분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을 검토함 <상세> →2009년 12월 개정	2014년	없음
88	가나가와현 현세(県税) 조례	2000년 가나가 와현 조례 제2호	정책국 예산조정과	지방자치법 제227조 및 제2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르게 조례로 규정이 있는 것 외에, 수수료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을 검토함 <상세> →2009년 7월 개정	2013년	없음
89	가나가와현 임시특례기업 세 조례	1970년 가나가 와현 조례 제26호	정책국 세제기획과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현세의 부과 징수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	없음
90	미국 군대의 구성원 등이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세의 특례에 관한 조례	2001년 가나가 와현 조례 제37호	정책국 세제기획과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법정의보통세인 임시특례기업 세금 부과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3년	없음

부 록

구분	조례명	조례번호	소관과	조례의 개요	재검토 결과	다음 재검토 예정	재검토 규정의 유무
91	미국 군대의 구성원 등이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세세율의 특례에 관한 조례	1952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38호	정책국 세제기획과	일본과 미국간의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 제6조에 따라 시설 및 구역 및 일본의 미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수반되는 지방세법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세의 징수에 대해 가나가와현 현세 조례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3년	없음
92	산업 집적의 촉진에 관한 법인 사업세 및 부동산 취득세율의 특례에 관한 조례	1952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69호	정책국 세제기획과	미군의 구성원 등의 소유에 관련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에 대해 일본과 미국간의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 제6조에 따라 시설·구역 및 일본의 미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3조 제3항 등 규정에 따라 미·일 합동위원회에서 합의된 세율을 적용하기 위해 지방세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가나가와현 현세 조례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개정을 검토함 <상세> →2009년 7월 개정	2013년	없음

부록 2 가나가와현(神奈川県)의 조례평가 결과

구분	조례명	조례번호	소관과	조례의 개요	재검토 결과	다음 재검토 예정	재검토 규정의 유무
93	가나가와현 재정 상황의 공표에 관한 조례	2004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62호	정책국 세제기획과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법인사업세 및 부동산취득세율에 대해서, 가나가와현 현세 조례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개정을 검토함 <상세> →2010년 8월 개정	2014년	없음
94	가나가와현 직업 능력 개발 심의회 조례	1948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30호	정책국 예산조정과	지방자치법 제243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의 재정상황의 공표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3년	없음
95	가나가와현 직업 능력 개발 촉진 법 관계 수수료 조례	2010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13호	상공노동국 산업인재과	직업 능력 개발 촉진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도도부현에 실시해야 할 직업 훈련 지도원 면허 및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도도부현에 실시해야 할 기능 검정 시험에 관련된 수수료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을 검토함 <상세> →2009년 3월 개정	2013년	없음
96	가나가와현립 고등 직업 기술 학교 등에 관한 조례	1979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1호	상공노동국 산업인재과	구직자 등에게 직업에 필요한 기능 및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직업 훈련 시설인 가나가와현립 고등 직업 기술 학교 등의 설치,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을 검토함 <상세> →2010년 12월 개정	2014년	없음

부 록

구분	조례명	조례번호	소관과	조례의 개요	재검토 결과	다음 재검토 예정	재검토 규정의 유무
97	가나가와 현립 산업 기술 단기 대학교 조례	1994년 가나가와 현 조례 제2호	상공노동국 산업인재과	구직자 등에게 직업에 필요한 고도의 기능 및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직업 훈련 시설인 가나가와 현립 산업 기술 단기 대학교 설치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을 검토함 <상세> →2010년 12월 개정	2014년	없음
98	가나가와현립 가나가와 노동 플라자 조례	1995년 가나가와 현 조례 제6호	상공노동국 노동복지과	노동자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문화 활동의 장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가나가와 현립 가나가와 노동 플라자의 설치,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3년	없음
99	특정 비영리 활동 촉진법 시행 조례	1998년 가나가와 현 조례 제37호	현민국 NPO협동 추진과	지사가 관할하는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에 관한 특정 비영리 활동 촉진법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3년	있음
100	가나가와 자원봉사 활동 추진 기금 21조례	2001년 가나가와 현 조례 제 10호	현민국 NPO협동 추진과	자원봉사단체 등의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가나가와 자원봉사 활동 추진 기금 21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4년	없음

부록 2 가나가와현(神奈川県)의 조례평가 결과

구분	조례명	조례번호	소관과	조례의 개요	재검토 결과	다음 재검토 예정	재검토 규정의 유무
101	가나가와현 소비생활 조례	1980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1호	현민국 소비생활과	소비자의 권리를 확립하고 현민의 소비생활의 안정과 향상 및 친환경 소비 생활의 추진에 기여하기 위해, 현민의 소비 생활에 관해, 현 및 사업자의 책무를 밝혀 현이 실시하는 시책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4년	있음
102	가나가와현 교통안전대책 회의 조례	1970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45호	안전 방재국 생활 안전 교통과	교통 안전 대책 기본법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가나가와 현 교통 안전 대책 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3년	없음
103	가나가와현립 현민활동 지원 조례	1996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11호	현민국 NPO협동 추진과	현민의 자주적이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에 공헌하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인 가나가와 현립 가나가와 현민 활동 지원 센터의 설치,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4년	없음
104	가나가와현립 공문서관 조례	1993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24호	현민국 정보공개과	가나가와 현립 공문서관의 설치,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3년	없음

부 록

구분	조례명	조례번호	소관과	조례의 개요	재검토 결과	다음 재검토 예정	재검토 규정의 유무
105	가나가와현립 현민홀 조례	1974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1호	현민국 문화과	현민의 문화 예술 진흥 및 복지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로, 가나가와 현립 현민 홀 설치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을 검토함. <상세> →2009년 3월 개정	2013년	없음
106	가나가와현립 음악당 조례	1995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3호	현민국 문화과	현민의 음악 예술 진흥 및 복지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로, 가나가와 현립 음악당의 설치,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3년	없음
107	가나가와현립 가나가와현 근대 문학관 조례	1984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3호	현민국 문화과	근대 문학에 관련된 도서 및 그 저자의 유품 등을 수집해 정리 보존 및 전시해 및 근대 문학에 관련된 도서를 열람에 제공하는 시설인 가나가와 현립 가나가와 근대 문학관의 설치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3년	없음
108	가나가와현립 가나가와여성 센터 조례	1982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3호	현민국 인권남녀 공동참획과	가나가와 현립 가나가와 여성 센터의 설치,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4년	없음
109	가나가와현립 후지노 예술의 집 조례	1995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4호	현민국 청소년과	가나가와 현립 후지노 예술의 집의 설치,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을 검토함 <상세> →2010년 3월 개정	2014년	없음

부록 2 가나가와현(神奈川県)의 조례평가 결과

구분	조례명	조례번호	소관과	조례의 개요	재검토 결과	다음 재검토 예정	재검토 규정의 유무
110	가나가와현립 지구시민 가나가와 플라자 조례	1997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37호	현민국 국제과	가나가와 현립 지구 시민 가나가와 플라자의 설치,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을 검토함 <상세> →2010년 3월 개정	2014년	없음
111	가나가와현립 사가미호 교류 센터 조례	1999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40호	정책국 토지수자원 대책과	수원 지역의 자연 보전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아울러 현민에게 수원 지역의 자연과 접촉 및 다양한 교류 활동의 장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가나가와 현립 사가미 호 교류 센터 설치,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을 검토함 <상세> →2009년 12월 개정	2014년	없음
112	가나가와현 남녀공동참여 추진 조례	2002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8호	현민국 인권남녀 공동참여과	남녀 공동 참여 사회의 형성 촉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남녀 공동 참여의 추진에 관해, 현 사업자 및 현민의 책무를 밝히는 동시에, 남녀 공동 참여의 추진에 관한 시책의 실시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4년	있음
113	가나가와현 범죄없는 안전안심마을 만들기 추진 조례	2004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65호	안전 방재국 생활안전 교통과	가나가와 현의 구역에서의 범죄의 방지 등에 관해, 현, 현민 및 사업자의 책무, 범죄 발생할 기회를 줄이기 위한 대응을 추진하기 위한 시책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5년	있음

부 록

구분	조례명	조례번호	소관과	조례의 개요	재검토 결과	다음 재검토 예정	재검토 규정의 유무
114	가나가와현 청소년보호육 성 조례	1955년 가나가 와현 조례 제1호	현민국 청소년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나 환경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을 검토함 <상세> →2010년 10월 개정	2016년	있음
115	가나가와현 청소년 흡연음주 방지 조례	2006년 가나가 와현 조례 제66호	현민국 청소년과	청소년 흡연과 음주를 방지하는 사회 환경의 정비를 위해 청소년 흡연과 음주를 방지하기 위한, 현, 보호자, 사업자 및 현민의 책무를 밝히는 동시에 청소년의 흡연과 음주의 방지에 관한 시책의 실시 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7년	있음
116	가나가와현 청소년센터 조례	1964년 가나가 와현 조례 제11호	현민국 청소년과	가나가와 현립 청소년 센터의 설치,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4년	없음
117	가나가와현립 야나기시마 청소년 야영장 조례	1964년 가나가 와현 조례 제12호	현민국 청소년과	가나가와 현립 야나기 시마 청소년 야영장의 설치,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1년 4월 폐지	-	없음
118	가나가와현립 기요카와 청소년의 집 조례	1972년 가나가 와현립 조례 제49호	현민국 청소년과	가나가와 현립 기요카와(清川) 청소년의 집의 설치,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1년 4월 폐지	-	없음

부록 2 가나가와현(神奈川県)의 조례평가 결과

구분	조례명	조례번호	소관과	조례의 개요	재검토 결과	다음 재검토 예정	재검토 규정의 유무
119	학교법인 조성에 관한 조례	1950년 가나가 와현 조례 제40호	현민국 학사진흥과	사립 학교 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한 사립 학교 교육의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폐지를 검토함 <상세> →2010년 8월 폐지	-	있음
120	가나가와현립 보건복지대학 조례	2002년 가나가 와현 조례 제67호	보건복지국 보건복지 인재과	가나가와 현립 보건 복지 대학 설치,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4년	없음
121	가나가와현립 외국어단기대 학 조례	1967년 가나가 와현 조례 제35호	현민국 학사진흥과	현립 외국어 단기 대학의 설치,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폐지를 검토함 <상세> →2012년 6월 개정	-	없음
122	인정 유치원의 요건을 정하는 조례	2006년 가나가 와현 조례 제65호	현민국 학사진흥과	취학 전 아이에 관한 교육, 보육 등의 종합적인 제공의 추진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인정 어린이원 직원의 배치, 자격, 시설 설비나 교육의 내용 등에 대해 정하고 있다.	개정·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7년	있음
123	공장입지법 제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칙을 정하는 조례	2000년 가나가 와현 조례 제 63호	상공노동국 산업입지과	공장 입지 법 제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녹지율 등에 관한 준칙에 대해 정하고 있다.	개정·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4년	있음

부 록

구분	조례명	조례번호	소관과	조례의 개요	재검토 결과	다음 재검토 예정	재검토 규정의 유무
124	가나가와현 산업기술센터 수수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1995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8호	상공노동국 신산업 진흥과	가나가와 현 산업 기술 센터가 의뢰를 받아 하는 시험, 연구, 가공, 성적서의 복본의 교부 등에 관련된 수수료 및 기기 등의 사용에 관련된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4년	없음
125	가나가와현 계량법 관계수수료 조례	2000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12호	상공노동국 신산업 진흥과	계량 법에 기초한 도도부현에 실시가 의무화되고 있는 지정 검사 등에 관련된 수수료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4년	없음
126	가나가와 현립 아시노코 캠프촌 조례	1995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9호	상공노동국 관광과	가나가와 현립 아시노코 캠프촌의 설치,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을 검토함 <상세> →2010년 2월 개정	2013년	없음
127	가나가와현 환경기본조례	1996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12호	환경농정국 환경계획과	환경의 보전 및 창조에 관한 기본 이념, 현 · 시읍면, 사업자, 현민의 책무, 환경의 보전 및 창조를 추진하기 위한 시책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을 검토함 <상세> →2010년 3월 개정	2014년	있음
128	가나가와현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1997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35호	환경농정국 대기수질과	공장 및 사업장의 설치에 대한 규제, 사업 활동 및 일상 생활에서의 환경의 보전을 위한 조치 기타 환경 보전 상의 지장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을 검토함 <상세> →2011년 7월 개정	2017년	있음

부록 2 가나가와현(神奈川県)의 조례평가 결과

구분	조례명	조례번호	소관과	조례의 개요	재검토 결과	다음 재검토 예정	재검토 규정의 유무
129	가나가와현 환경영향평가 조례	1980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36호	환경농정국 환경계획과	가나가와 현 환경 기본 조례의 본뜻을 달성하기 위해 땅의 형상 변경, 공작물의 건설 등의 사업의 실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미리 조사, 예측 및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기 위한 수속 등의 환경 영향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을 검토함 <상세> →2010년 12월 개정	2014년	있음
130	자연환경보전 조례	1972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52호	환경농정국 자연환경 보전과	자연 환경의 보전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연 환경 보전 지역 지정, 해당 지역에서의 행위 규제, 자연 환경의 유지 및 회복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을 검토함 <상세> →2011년 3월 개정	2014년	있음
131	가나가와현 자연환경보전 심의회 조례	1973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5호	환경농정국 자연환경 보전과	자연 환경 보전 법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가나가와 현 자연 환경 보전 심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3년	없음

부 록

구분	조례명	조례번호	소관과	조례의 개요	재검토 결과	다음 재검토 예정	재검토 규정의 유무
132	가나가와현 라스트녹색 기금 조례	1986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4호	환경농정국 자연환경 보전과	가나가와의 뛰어난 자연 환경 및 역사적 환경을 보전해 푸른 가나가와를 대물림 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적립하기 위해 가나가와 트러스트 미도리 기금의 설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3년	없음
133	가나가와현 환경보전기금 조례	1990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2호	환경농정국 총무과	지역에 기인한 환경 보전 활동을 하기 위한 환경 보전 기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3년	없음
134	가나가와현 수원 환경 보전 및 재생 기금 조례	2005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88호	환경농정국 수원환경 보전과	수원 환경의 보전 및 재생에 이바지하는 사업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적립하기 위해 가나가와 현 수원 환경 보전 및 재생 기금의 설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7년	없음
135	가나가와현립 자연공원 조례	1959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6호	환경농정국 자연환경 보전과	자연 공원 법의 규정에 따라 현립 자연 공원에 관한 공원 계획의 결정, 지역 내에서의 행위 제한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을 검토함 <상세> →2011년 3월 개정	2014년	있음

부록 2 가나가와현(神奈川県)의 조례평가 결과

구분	조례명	조례번호	소관과	조례의 개요	재검토 결과	다음 재검토 예정	재검토 규정의 유무
136	캠프 금지 구역에 관한 조례	1964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15호	환경농정국 총무과	특정 구역에서의 캠프를 금지함으로써, 캠프를 하는 사람의 안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해당 구역 및 그 주변 지역에서의 양호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4년	있음
137	가나가와현립 자연환경보전 센터 조례	1978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34호	환경농정국 자연환경 보전과	자연의 보호 및 녹화에 관한 사상의 보급 및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인 가나가와 현립 자연 보호 센터의 설치,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을 검토함 <상세> →2009년 7월 개정	2013년	없음
138	가나가와현 환경심의회 조례	1994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28호	환경농정국 환경계획과	환경 기본 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나가와 현 환경 심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3년	없음
139	대기오염방지 법 제4조 제1항의 배출기준 및 수질 오염방지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 기준을 정하는 조례	1971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52호	환경농정국 대기수질과	현내의 구역에 대한 대기 오염 방지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 물질의 배출 기준을 정하고, 수질 오염 방지 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 물의 오염 상태에 관련된 배수 기준을 정하고 있다.	개정을 검토함 <상세> →2011년 3월 개정	2014년	있음

부 록

구분	조례명	조례번호	소관과	조례의 개요	재검토 결과	다음 재검토 예정	재검토 규정의 유무
140	가나가와현 자동차배출질 소산화물 및 미세먼지 총량삭감계획 책정 협의회 조례	1992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48호	환경농정국 대기수질과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질소 산화물 및 미세먼지의 특정 지역의 총량의 삭감 등에 관한 특별 조치 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나가와 현 자동차 배출 질소 산화물 및 미세먼지 총량 삭감 계획 책정 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3년	없음
141	공해분쟁처리법에 규정하는 압선, 조정 및 중재에 관련된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1970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44호	환경농정국 대기수질과	지방 자치 법 제227조 및 제228조 제1항의 규정 및 공해 분쟁 처리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해 분쟁 처리 법에 규정하는 아츠세은, 조정 및 중재에 관련된 수수료 등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3년	없음
142	가나가와현 산업 폐기물 처분에 관련된 수수료 징수 조례	2005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105호	환경농정국 폐기물 지도과	폐기물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현이 의뢰를 받아 하는 산업 폐기물 처분에 관련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6년	없음

부록 2 가나가와현(神奈川県)의 조례평가 결과

구분	조례명	조례번호	소관과	조례의 개요	재검토 결과	다음 재검토 예정	재검토 규정의 유무
143	가나가와현 폐기물의 부적정 처리 방지 등에 관한 조례	2006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67호	환경농정국 폐기물 지도과	폐기물에 관련된 환경 부하 저감을 도모하고 양호한 생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폐기물의 부적정 처리 방지에 관한 시책의 실시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7년	있음
144	가나가와현 방재회의의 조례	1962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40호	안전방재국 재해대책과	재해 대책 기본 법 제15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가나가와 현 방재 회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3년	없음
145	가나가와현 재해대책본부 조례	1962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41호	안전방재국 재해대책과	재해 대책 기본 법 제23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가나가와 현 재해 대책 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3년	없음
146	가나가와현 국민 보호대책본부 및 가나가와현 긴급대책사태 대책본부 조례	2004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63호	안전방재국 위기관리 대책과	무력 공격 사태 등의 국민의 보호를 위한 조치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제183조에서 준용하는 이 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가나가와 현 국민 보호 대책 본부 및 가나가와 현 긴급 대처 사태 대책 본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3년	없음

부 록

구분	조례명	조례번호	소관과	조례의 개요	재검토 결과	다음 재검토 예정	재검토 규정의 유무
147	가나가와현 국민보호협회의 조례	2004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64호	안전방재국 위기관리 대책과	무력 공격 사태 등의 국민의 보호를 위한 조치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가나가와 현 국민 보호 협회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3년	없음
148	재해 파견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1962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50호	총무국 노무급여과	지방 공무원 법 제2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재해 파견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3년	없음
149	재해시에 응급 조치의 업무에 종사한 자에 관련된 손해 보상에 관한 조례	1962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51호	안전방재국 재해대책과	재해 대책 기본 법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사 명령에 의한 응급 조치의 업무에 종사한 자에 관련된 손해 보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3년	있음
150	가나가와현 소방법 관계 수수료 조례	2000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 4호	안전방재국 소방과	소방 법에 규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수수료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3년	없음
151	가나가와현 석유 콤비나트 등 방재 본부 조례	1976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30호	안전방재국 공업보안과	석유 콤비나트 등 재해 방지 법 제28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가나가와 현 석유 콤비나트 등 방재 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3년	없음

부록 2 가나가와현(神奈川県)의 조례평가 결과

구분	조례명	조례번호	소관과	조례의 개요	재검토 결과	다음 재검토 예정	재검토 규정의 유무
152	가나가와현 지진 재해경계본부 조례	1979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34호	안전방재국 재해대책과	대규모 지진 대책 특별 조치 법 제17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가나가와 현 지진 재해 경계 본부에 관한 법에 정하는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3년	없음
153	가나가와현 화약류단속법 관계 수수료 조례	2000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5호	안전방재국 공업보안과	화약류 단속 법에 규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수수료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을 검토함 <상세> →2009년 3월 개정	2013년	없음
154	가나가와현 고압 가스보안법 관계 수수료 조례	2000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6호	안전방재국 공업보안과	고압 가스 보안 법에 규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수수료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을 검토함 <상세> →2009년 3월 개정	2013년	없음
155	가나가와현 액화 석유가스보안의 확보 및 거래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관계 수수료 조례	2000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7호	안전방재국 공업보안과	액화 석유 가스 보안의 확보 및 거래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수수료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을 검토함 <상세> →2009년 3월 개정	2013년	없음
156	사회복지법인의 구성에 관한 조례	1954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8호	보건복지국 총무과	사회 복지 법의 규정에 근거하는 사회 복지 법인에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4년	있음

부 록

구분	조례명	조례번호	소관과	조례의 개요	재검토 결과	다음 재검토 예정	재검토 규정의 유무
157	가나가와현 간병 복지사 및 사회 복지사 수탁 자금 대출 조례	1994년 가나가 와현 조례 제1호	보건복지국 보건복지 인재과	장래 현대 등에서 간병 복지사 또는 사회 복지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유능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가나가와 현 간병 복지사 및 사회 복지사 수탁 자금을 대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4년	있음
158	가나가와현 복지 마을 조성 조례	1995년 가나가 와현 조례 제5호	보건복지국 지역보건 복지과	장애자 등이 안심하고 생활해 자유롭게 이동 및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복지 마을 조성에 관한, 현 · 시읍면, 사업자, 현민의 책무, 현의 기본 방침이나, 시설 등을 장애자 등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를 추진하기 위한 정비 기준의 준수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을 검토함 <상세> →2008년 12월 개정	2014년	있음
159	가나가와현 중증 장애자 등 수당 지급 조례	1969년 가나가 와현 조례 제9호	보건복지국 장해복지과	재택의 중증 장애자 등에 대해 복지의 증진을 목적으로, 현이 주는 수당에 대해 정하고 있다.	개정을 검토함 <상세> →2009년 7월 개정	2015년	있음

부록 2 가나가와현(神奈川県)의 조례평가 결과

구분	조례명	조례번호	소관과	조례의 개요	재검토 결과	다음 재검토 예정	재검토 규정의 유무
160	가나가와현립 아동복지 시설에 관한 조례	1964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28호	보건복지국 가정과	아동 복지 법 제37조, 제41조 및 제44조에 각각 규정하는 가나가와 현립의 유아원, 아동 양호 시설 및 아동 자립 지원 시설의 설치 및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3년	없음
161	가나가와현 특별 모자복지자금 대출 조례	1970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30호	보건복지국 가정과	모자 복지 자금 또는 과부 복지 자금 대부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 아울러 대출하는 가나가와 현 특별 모자 복지 자금의 대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폐지를 검토함 <상세> →2010년 8월 폐지	—	있음
162	가나가와현립 여성상담소 조례	1964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26호	현민국 인권남녀 공동참획과	가나가와 현립 여성 상담소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을 검토함 <상세> →2009년 7월 개정	2013년	없음
163	가나가와현 여성보호시설 사츠키기숙사 조례	1964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27호	현민국 인권남녀 공동참획과	가나가와 현 여성 보호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을 검토함 <상세> →2009년 7월 개정	2013년	없음
164	가나가와현 장애인 시책 추진 협의회 조례	1971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 7호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기본 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가나가와 현 장애인 시책 추진 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3년	없음

부 록

구분	조례명	조례번호	소관과	조례의 개요	재검토 결과	다음 재검토 예정	재검토 규정의 유무
165	가나가와현립 지적장애아 및 장애인 지원 종합 시설에 관한 조례	1983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2호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서비스과	주로 지적 장애가 있는 아자에 대한 시설 장애인 복지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현립의 지적 장애아 시설 및 장애인 지원 시설의 설치 및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3년	없음
166	가나가와현 라이트센터 조례	1974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2호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신체 장애인 복지 법 제34조에 규정된 시청각 장애인 정보 제공 시설 중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정보 제공 시설인 가나가와현 라이트 센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3년	없음
167	가나가와현 청각장애자복지센터 조례	1980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2호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신체 장애인 복지 법 제34조에 규정하는 시청각 장애인 정보 제공 시설 중 청각 장애인 정보 제공 시설인 가나가와현 청각 장애인 복지 센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3년	없음

부록 2 가나가와현(神奈川県)의 조례평가 결과

구분	조례명	조례번호	소관과	조례의 개요	재검토 결과	다음 재검토 예정	재검토 규정의 유무
168	가나가와현 심신장애자 부양공제제도 조례	1970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31호	보건복지국 장애복지과	심신 장애자의 보호자의 상호 부조의 정신으로 보호자가 사망하거나 현저한 장애가 있는 상태가 된 후 심신 장애자 연금 등을 지급하는 심신 장애자 부양 공제 제도에 대해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3년	있음
169	가나가와현 장애자 자립지원대책 임시특례기금 조례	2007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7호	보건복지국 장애 서비스과	장애인 자립 지원 대책 임시 특례 기금의 설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7년	없음
170	가나가와현립 종합요양상담 센터 조례	1995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58호	보건복지국 가정과	신체 장애자 복지 법 제11조에 근거한 신체 장애자 재활 상담소 및 지적 장애자 복지 법 제12조에 근거한 지적 장애자 재활 상담소 외, 아동 및 신체 장애자, 지적 장애인의 진료, 교육 훈련 등을 실시하기 위한 시설인 가나가와 현립 종합 교육 상담 센터 설치,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3년	없음

부 록

구분	조례명	조례번호	소관과	조례의 개요	재검토 결과	다음 재검토 예정	재검토 규정의 유무
171	가나가와현 종합재활센터 조례	2004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52호	보건복지국 병원사업과	심신 장애인 및 중장년 등의 사회 복귀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복지와 의료 제휴에 의해 종합적이고 일관된 사회 복귀 요법을 실시하기 위한 시설이다. 가나가와 현 종합 재활 센터의 설치,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4년	없음
172	가나가와현 국민 건강보험 광역화 등 지원 기금 조례	2003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6호	보건복지국 의료보험과	가나가와 현 국민 건강 보험 광역화 등 지원 기금의 설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3년	없음
173	국민 건강 보험 법에 근거한 도도부현 조정 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조례	2005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 106호	보건복지국 의료보험과	국민 건강 보험 법의 규정에 의거 도도부현 조정 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5년	없음
174	개호보험법 시행 조례	2000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37호	보건복지국 고령복지과	개호 보험 법의 규정에 의거 도도부현 지사가 실시하고 있는 개호 보험에 관한 재정 안정화 기금, 심사회 수수료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개정을 검토함 <상세> →2009년 3월 개정	2013년	없음
175	가나가와현 진료소에 관한 조례	1964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41호	보건복지국 병원사업과	가나가와 현립의 진료소의 설치,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3년	없음

부록 2 가나가와현(神奈川県)의 조례평가 결과

구분	조례명	조례번호	소관과	조례의 개요	재검토 결과	다음 재검토 예정	재검토 규정의 유무
176	가나가와현 준 간호사 시험 위원회 조례	1952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35호	보건복지국 보건복지 인재과	보건사 조산사 간호사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준 간호사 시험 등의 조사 심의를 실시하기 위해 가나가와 현 준 간호사 시험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3년	없음
177	가나가와 현립 히라츠카 간호 전문 학교 조례	1971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54호	보건복지국 보건복지 인재과	가나가와 현립 히라츠카 간호 전문 학교의 설치,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4년	없음
178	가나가와 현립 요코하마 간호 전문 학교 조례	1974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57호	보건복지국 보건복지 인재과	가나가와 현립 요코하마 간호 전문 학교의 설치,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4년	없음
179	가나가와현립 위생간호전문 학교 조례	1978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35호	보건복지국 보건복지 인재과	가나가와 현립 위생 간호 전문 학교의 설치,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4년	없음
180	가나가와현 현립병원 등 간호사의 수학 자금 대부 조례	1964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39호	(구) 보건복지부 지역보건복지과	장래 현립병원 등에 근무할 유능한 간호사를 육성하기 위해 가나가와현 현립병원 등 간호사의 수학 자금 대부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폐지를 검토함 <상세> →2010년 4월 폐지	-	있음

부 록

구분	조례명	조례번호	소관과	조례의 개요	재검토 결과	다음 재검토 예정	재검토 규정의 유무
181	가나가와현 간호사 등의 수학 자금 대부 조례	1964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40호	보건복지국 보건복지 인재과	장래 현내에서 보건사, 조산사, 간호사 등의 업무에 종사할 유능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가나가와현 간호사 등의 수학 자금 대부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4년	있음
182	가나가와현 이학요법사 및 작업요법사 수학 자금 대부 조례	1970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3호	보건복지국 보건복지 인재과	장래 현내에서 이학요법사 또는 작업요법사 업무에 종사할 유능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가나가와현 이학요법사 및 작업요법사 수학 자금 대부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4년	있음
183	약물 중독 환자 신고에 관한 조례	1948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10호	보건복지국 약무과	약물로 인한 급성중독환자를 진단한 의사가 지사에 신고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폐지를 검토함 <상세> →2010년 8월 폐지	-	있음
184	위생시험, 치료 등에 관한 조례	1959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5호	보건복지국 총무과	위생연구소 및 온천지학연구소, 보건복지사무소의 위생시험(검사), 치료 등에 관해, 시험 의뢰 등이 가능한 자, 의뢰 신청 방법, 수수료 금액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을 검토함 <상세> →2009년 3월 개정	2013년	없음

부록 2 가나가와현(神奈川県)의 조례평가 결과

구분	조례명	조례번호	소관과	조례의 개요	재검토 결과	다음 재검토 예정	재검토 규정의 유무
185	소규모 특정 급식 시설의 영양 개선에 관한 조례	1999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42호	보건복지국 건강증진과	건강증진법에 규정된 특정급식시설보다 소규모인 급식시설에 대한 영양개선지도 기회를 확보하고, 현민의 건강 유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4년	있음
186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영업의 시설 기준 등에 관한 조례	2000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8호	보건복지국 식품위생과	식품위생법 제50조 제2항 및 제51조 규정에 따라, 영업시 강구해야 할 공중위생상 조치의 기준(관리운영기준) 및 영업 시설기준과 기타 식품위생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을 검토함 <상세> →2009년 3월 개정	2014년	있음
187	어패류 행상 등에 관한 조례	1966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42호	보건복지국 식품위생과	식품위생법상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패류 행상 등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들 영업으로 인한 식품위생상의 위해발생을 방지하고, 공중위생의 향상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을 검토함 <상세> →2010년 12월 개정	2014년	있음
188	가나가와현 복어 취급 및 판매 조례	1959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26호	보건복지국 식품위생과	복어의 적절한 취급 및 판매를 도모하고, 복어로 인한 중독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을 검토함 <상세> →2010년 8월 개정	2014년	있음

부 록

구분	조례명	조례번호	소관과	조례의 개요	재검토 결과	다음 재검토 예정	재검토 규정의 유무
189	여관업법 시행조례	1957년 가나가 와현 조례 제64호	보건복지국 환경위생과	여관업법 규정에 근거해, 여관업 영업 시설의 위생 조치 기준, 구조 설비 기준 및 그 밖의 여관업 업무의 적절한 운영 확보와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4년	있음
190	홍행장법 시행 조례	1984년 가나가 와현 조례 제25호	보건복지국 환경위생과	홍행장법 규정에 근거해 홍행장 설치 장소의 기준, 구조 설비 기준, 위생상 필요한 조치의 기준 및 그 밖의 홍행장 영업의 적절한 운영 확보와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을 검토함 <상세> →2010년 12월 개정	2014년	있음
191	공중 목욕탕 설치 장소의 배치 및 위생 조치 등의 기준 등에 관한 조례	1973년 가나가 와현 조례 제4호	보건복지국 환경위생과	공중목욕장(浴場)법 규정에 근거해, 대중목욕탕 설치 장소의 기준, 위생 및 풍기에 필요한 조치의 기준과 그 밖의 대중목욕탕의 적절한 영업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을 검토함 <상세> →2010년 12월 개정	2014년	있음
192	이용사법 시행 조례	2000년 가나가 와현 조례 제9호	보건복지국 환경위생과	이용사법 규정에 근거해, 이용업 운영시 강구해야 할 위생상 조치, 이용소에 강구해야 할 위생상 조치와 그 밖의 이용 업무의 적절한 운영확보와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을 검토함 <상세> →2013년 3월 개정	2014년	있음

부록 2 가나가와현(神奈川県)의 조례평가 결과

구분	조례명	조례번호	소관과	조례의 개요	재검토 결과	다음 재검토 예정	재검토 규정의 유무
193	미용사법 시행 조례	2000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10호	보건복지국 환경위생과	미용사법 규정에 근거해, 미용업 운영시 강구해야 할 위생상 조치, 미용소(미용실)에 강구해야 할 위생상 조치와 그 밖의 미용업무의 적절한 운영확보와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을 검토함 <상세> →2013년 3월 개정	2014년	있음
194	클리닝업법 시행 조례	2002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69호	보건복지국 환경위생과	클리닝업(세탁업)법 제3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영업자가 클리닝소(세탁소)에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는 조치를 정함과 동시에 클리닝소의 검사 등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4년	있음
195	가나가와현 수욕(水浴)장 등에 관한 조례	1959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4호	보건복지국 환경위생과	해수욕장, 강·계곡 등 물놀이 시설, 수영장 및 탈의휴게실에 대해 공중위생 및 공중위험 방지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을 검토함 <상세> →2010년 3월 개정	2013년	있음
196	태반 및 기타 출산 관련 폐기물 처리업자 조례	1950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52호	보건복지국 환경위생과	태반 및 기타 출산 관련 폐기물의 처리업에 종사하는 자와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을 검토함 <상세> →2013년 3월 개정	2014년	있음

부 록

구분	조례명	조례번호	소관과	조례의 개요	재검토 결과	다음 재검토 예정	재검토 규정의 유무
197	소규모 수도 및 소규모 수수조(受水槽) 수도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료수 확보에 관한 조례	1995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7호	보건복지국 환경위생과	수도법에서 규제 대상으로 하지 않는 소규모 수도(수도사업용으로 공급된 수도 및 전용수도 이외의 수도로, 지하수 또는 표류수를 수원으로 거주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는 수도) 및 소규모 수수조(저수조, 물탱크) 수도(수도사업용으로 공급된 수도, 전용수도 및 간이전용수도 이외의 수도로, 수도사업용으로 공급되는 수도에서 공급받은 물만을 수원으로 하며 그 물을 받기 위한 수조를 갖춘 수도)의 관리 등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3년	있음
198	도축장법 시행 조례	2003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7호	보건복지국 식품위생과	도축장법 시행령 제1조 제11호 규정에 근거해, 식용으로 공급하기 위한 수축(獸畜: 짐승, 가축)의 적절한 처리를 위해 공중위생적 견지에서 요구되는 도축장의 구조 설비 기준 등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과 동시에 도축 검사 등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규정하고 있다.	개정을 검토함 <상세> →2009년 3월 개정	2014년	있음

부록 2 가나가와현(神奈川県)의 조례평가 결과

구분	조례명	조례번호	소관과	조례의 개요	재검토 결과	다음 재검토 예정	재검토 규정의 유무
199	화제(化製)장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조례	1984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26호	보건복지국 식품위생과	화제장(폐가축부산물 재가공 시설)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제장법’)의 규정에 따라 화제장의 구조 설비 기준 등을 정함과 동시에 시설 설치 등의 허가에 필요한 수수료를 규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3년	있음
200	가나가와현 정화조 보수 점검 업체 등록에 관한 조례	1985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36호	보건복지국 환경위생과	정화조법 제48조 제1항 규정에 의거해, 정화조 보수점검업자 등록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정화조를 통한 배설물의 적절한 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을 검토함 <상세> →2010년 3월 개정	2014년	있음
201	가나가와현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1979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35호	보건복지국 식품위생과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애법’)에 근거해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3년	있음
202	가나가와현 동물보호센터 수수료 징수 조례	1972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8호	보건복지국 식품위생과	가나가와현 동물보호센터가 의뢰 받아 실시하는 개, 고양이와 그 밖의 작은 동물에 대한 검사, 처치 또는 진단서 등 문서 교부시의 수수료 징수와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3년	없음

부 록

구분	조례명	조례번호	소관과	조례의 개요	재검토 결과	다음 재검토 예정	재검토 규정의 유무
203	가나가와현 묘지 등의 경영 허가 등에 관한 조례	2002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68호	보건복지국 환경위생과	묘지, 이장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따라, 경영허가 등에 필요한 절차, 묘지 등의 구조설비기준 및 그 밖에 동법 시행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4년	있음
204	가나가와현 생활위생적정 화심의회 조례	2000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11호	보건복지국 환경위생과	생활 위생 관련 영업의 운영 적정화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59조 규정에 근거해, 가나가와현 생활위생적정화심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4년	없음
205	감염증 진단 협의회 조례	1999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4호	보건복지국 건강위기 관리과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6항 규정에 근거해, 감염증진단협의회와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3년	없음
206	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자 복지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임의입원자의 증상 등의 보고에 관한 조례	2006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69호	보건복지국 보건예방과	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자 복지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개선명령에 따라 5년이내의 정신과병원 또는 개선되지 않은 정신과병원에 대한 임의입원자의 증상 등의 보고의무와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7년	있음

부록 2 가나가와현(神奈川県)의 조례평가 결과

구분	조례명	조례번호	소관과	조례의 개요	재검토 결과	다음 재검토 예정	재검토 규정의 유무
207	가나가와현 정신 보건 복지 심의회 조례	1978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41호	보건복지국 보건예방과	정신보건 및 정신보건복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정신보건복지심의회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3년	없음
208	정신보건지정 의사의 보수 등에 관한 조례	1950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53호	보건복지국 보건예방과	정신보건 및 정신보건복지에 관한 법률 규정에 근거해, 지사가 정신보건지정의에게 정신장애 관련 진찰 등을 하도록 했을시의 보수 및 비용변상의 지급에 대해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3년	없음
209	가나가와현 정신 보건복지센터 사용료 및 수수료 조례	2002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9호	보건복지국 보건예방과	가나가와현 정신보건복지센터에서 실시하는 진찰 등에 드는 사용료 및 수수료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3년	없음
210	가나가와현 병원 사업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1966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49호	보건복지국 병원사업과	현민의 건강 보호유지에 필요한 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병원사업의 설치에 대해 정하고 있다.	개정을 검토함 <상세> →2009년 12월 개정	2014년	없음
211	가나가와현 병원 사업청 기업 직원 급여의 종류 및 기준에 관한 조례	2004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66호	(구) 병원 사업청 병원국 현립병원과	지방공영기업법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병원사업청 기업직원의 급여 종류 및 기준을 정하고 있다.	폐지를 검토함 <상세> →2010년 4월 폐지	-	없음

부 록

구분	조례명	조례번호	소관과	조례의 개요	재검토 결과	다음 재검토 예정	재검토 규정의 유무
212	가나가와현 중산간지역 등 농업 활성화 지원 기금 조례	2000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62호	(구) 환경농정부 농지과	중산간지역 등(평야 외연부에서 산간지까지의 농업 생산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의 지속적인 농업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가나가와현 중산간지역 등 농업 활성화 지원 기금의 설치, 관리 및 처분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0년 3월 실효	-	없음
213	가나가와현 도시농업추진 조례	2005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90호	환경농정국 농정과	도시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대한 기본이념을 정하고 현 및 현민 등의 책무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도시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관한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6년	있음
214	가나가와현립 가나가와농업 아카데미 조례	1970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46호	환경농정국 취농참여 지원과	가나가와현립 가나가와농업아카데미의 설치 및 관리와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3년	없음
215	주요농작물 종자법의 실시에 관한 조례	1952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49호	환경농정국 농업진흥과	주요농작물 종자법에 근거해 현이 실시하는 종자생산포장(圃場)의 지정 및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3년	없음

부록 2 가나가와현(神奈川県)의 조례평가 결과

구분	조례명	조례번호	소관과	조례의 개요	재검토 결과	다음 재검토 예정	재검토 규정의 유무
216	가나가와현 지방도매(卸売) 시장 조례	1971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65호	환경농정국 농업진흥과	도매시장법 제68조 및 제74조 규정에 근거해, 지방도매시장의 개설 및 업무, 중앙도매시장 및 지방도매시장 이외의 도매시장의 개설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을 검토함 <상세> →2010년 8월 개정	2014년	있음
217	가나가와현 도매(卸売)시장 심의회 조례	1971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66호	환경농정국 농업진흥과	도매시장법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나가와현 도매시장심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3년	없음
218	가나가와현립 플라워센터 오후나(大船) 식물원 조례	1964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49호	환경농정국 농정과	화훼(花卉)원예의 진흥, 식물에 관한 지식의 보급 및 현민이 식물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가나가와현립 플라워센터 오후나(大船) 식물원의 설치, 관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4년	없음
219	현영(縣營) 토지개량사업 분담금 징수 조례	1956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58호	환경농정국 농지보전과	토지개량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영(縣營) 토지개량사업으로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분담금을 부과징수한다.	개정을 검토함 <상세> →2009년 7월 개정	2013년	없음

부 록

구분	조례명	조례번호	소관과	조례의 개요	재검토 결과	다음 재검토 예정	재검토 규정의 유무
220	가나가와현 꿀벌 전사(轉飼) 조정 조례	1954년 가나가 와현 조례 제48호	환경농정국 축산과	현내에서의 양봉사업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전사(벌치는 장소의 이동) 허가 및 수수료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4년	있음
221	가나가와현 종축(種畜) 검사 조례	1952년 가나가 와현 조례 제6호	(구) 환경 농정부 축산과	가축의 개량을 도모하기 위해 현이 실시하는 종축(種畜) 검사와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폐지를 검토함 <상세> →2010년 3월 폐지	-	있음
222	가나가와현립 오노(大野)산 유우(乳牛) 육성 목장 조례	1968년 가나가 와현 조례 제13호	환경농정국 축산과	우량 후계우를 육성함으로써 낙농업의 진흥을 도모하고, 더불어 현민의 축산업에 대한 이해 고취의 장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가나가와현립 오노(大野)산 유우(젖소) 육성 목장의 설치, 관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4년	없음
223	가나가와현 현행 조림(縣行造林) 조례	1936년 가나가 와현 조례 제4호	(구) 환경 농정부 삼림과	치수, 국토보안 및 삼림 자원의 배양보호유지를 목적으로, 현이 토지 소유자와 수익분수(分收) 방법에 따라 사유림 등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폐지를 검토함 <상세> →2009년 7월 폐지	-	없음

부록 2 가나가와현(神奈川県)의 조례평가 결과

구분	조례명	조례번호	소관과	조례의 개요	재검토 결과	다음 재검토 예정	재검토 규정의 유무
224	가나가와현립 21세기 숲 조례	1983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3호	환경농정국 삼림재생과	삼림 및 임업에 관한 지식의 보급 및 향상과 임업의 진흥을 도모하고, 더불어 현민의 보건 및 휴양에 이바지하기 위한 시설인 21세기 숲의 설치, 관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3년	없음
225	가나가와 산림기금 조례	1990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7호	환경농정국 삼림재생과	건전한 삼림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한 가나가와 산림기금의 설치, 관리 및 처분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을 검토함 <상세> →2010년 3월 개정	2014년	없음
226	가나가와현립 후다카케(札掛) 숲의 집 조례	1992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8호	환경농정국 삼림재생과	현민의 삼림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현민이 참여하는 삼림 육성 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시설인 후다카케(札掛)숲의 집의 설치, 관리 등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3년	없음
227	가나가와현 삼림 병해충 등 방제(防除)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분담금에 관한 조례	1951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1호	환경농정국 수원환경 보전과	삼림 병해충 등 방제(防除)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해, 분담금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 범위 및 기준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3년	없음

부 록

구분	조례명	조례번호	소관과	조례의 개요	재검토 결과	다음 재검토 예정	재검토 규정의 유무
228	가나가와현 어항(漁港) 관리 조례	1969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44호	환경농정국 수산과	현이 관리하는 어항(漁港)의 유지관리와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4년	없음
229	가나가와현 공영 기업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1966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50호	기업청 기업국 총무과	지방공영기업법에 의거해, 가나가와현 공영기업의 설치 등에 대해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4년	없음
230	가나가와현 기업 직원 급여의 종류 및 기준에 관한 조례	1953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23호	기업청 기업국 총무과	지방공영기업법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해, 기업 직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3년	없음
231	가나가와현 현영 상수도 조례	1954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11호	기업청 기업국 업무과	가나가와현 현영 상수도의 급수 등에 대해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3년	없음
232	사가미(相模)강 종합개발 공동사업에 지방공영기업법 전부를 적용하는 조례	1960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39호	기업청 기업국 총무과	지방공영기업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가미(相模)강 종합개발 공동사업에 지방공영기업법 전부를 적용할 것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3년	없음
233	사카와(酒匂)강 종합 개발 사업에 지방공영기업법 전부를 적용하는 조례	1969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12호	기업청 기업국 총무과	지방공영기업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해, 사카와(酒匂)강 종합개발사업에 지방공영기업법 전부를 적용할 것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3년	없음

부록 2 가나가와현(神奈川県)의 조례평가 결과

구분	조례명	조례번호	소관과	조례의 개요	재검토 결과	다음 재검토 예정	재검토 규정의 유무
234	공영기업자금 등 운용사업에 지방공영기업법 전부를 적용하는 조례	1958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5호	기업청 기업국 총무과	지방공영기업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해, 공영기업자금 등 운용사업에 지방공영기업법 전부를 적용할 것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3년	없음
235	가나가와현 법정 외 공용재산 사용료 징수 조례	1999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43호	현토정비국 용지과	국유재산법 제18조 제6항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성 소관 법정외의 공공용재산의 사용을 허가한 경우의 사용료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4년	없음
236	가나가와현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1953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19호	현토정비국 도로관리과	도로법 규정에 근거해 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점용자로부터 징수할 점용료 금액 및 징수방법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을 검토함 <상세> →2010년 8월 개정	2014년	없음
237	연도(沿道)구역 지정 기준에 관한 조례	1957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45호	현토정비국 도로관리과	도로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해, 도로관리자가 도로에 접근하기 위해 필요한 구역을 연도(沿道)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의 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4년	있음
238	가나가와현 도로 부속물 자동차 주차장 조례	2000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74호	현토정비국 도로관리과	도로법 제24호2 제1항에 규정된 주차장요금의 징수를 위한 도로부속물인 자동차주차장의 관리 등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을 검토함 <상세> →2010년 12월 개정	2014년	없음

부 록

구분	조례명	조례번호	소관과	조례의 개요	재검토 결과	다음 재검토 예정	재검토 규정의 유무
239	가나가와현 유수(流水) 점용료 등 징수 조례	1999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44호	현토정비국 유역해안 기획과	하천법상 유수(流水) 혹은 토지의 점용, 폐천(廢川)부지의 사용 또는 토석 등의 채취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동법 제32조 규정에 의거해 징수하는 유수점용료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4년	없음
240	사가미(相模)호(湖), 쓰쿠이(津久井)호, 단자와(舟沢)호, 사무카와(寒川)체수역(滯水域), 사케(社家)체수역, 이즈미(飯泉)체수역 등 수역에서의 행위 규제에 관한 조례	1964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94호	현토정비국 유역해안 기획과	사가미(相模)호(湖) 등 수역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 수역에서의 주정(舟艇) 운항 등의 행위 제한 등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을 검토함 <상세> →2010년 12월 개정	2014년	있음
241	항만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1964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93호	현토정비국 사방해안과	현이 설치하는 항만의 설치 및 관리 등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4년	없음
242	항만 임항(臨港) 지구내의 분구(分區)에서의 구조물 건축의 규제에 관한 조례	2005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13호	현토정비국 사방해안과	현이 관리하는 항만의 임항(臨港)지구 내에 건축되는 구조물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5년	있음

부록 2 가나가와현(神奈川県)의 조례평가 결과

구분	조례명	조례번호	소관과	조례의 개요	재검토 결과	다음 재검토 예정	재검토 규정의 유무
243	가나가와현 해안 점용료 등 징수 조례	1999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45호	현토정비국 사방해안과	해안법 제11조 및 제37조의8 규정에 의거해 해안보전구역 혹은 일반공공해안구역의 점용 허가 또는 해안보전구역내 혹은 일반공공해안구역내에 서의 토석의 채취 허가에 드는 점용료 등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4년	없음
244	가나가와현 레저용 보트의 보관 장소에 관한 조례	2001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64호	현토정비국 유역해안 기획과	공공 수역 및 육상구역에서의 질서 유지를 도모하기 위해, 레저용 보트 소유자 등의 책무 및 보관 장소 신고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4년	있음
245	가나가와현 사방(砂防) 지정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2003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8호	현토정비국 사방해안과	사방(砂防)법 및 사방법시행규정에 근거한 사방 지정지(사방법 제2조 규정에 의거해 국토교통대신이 지정한 토지)의 관리, 사방설비점용료의 징수 및 그 외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4년	있음

부 록

구분	조례명	조례번호	소관과	조례의 개요	재검토 결과	다음 재검토 예정	재검토 규정의 유무
246	흙 채취 규제 조례	1972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10호	현토정비국 사방해안과	흙의 채취로 인한 재해를 방지함과 동시에 채토완료구역에 녹화 등의 정비를 실시함으로써, 현민의 안전 유지와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흙의 채취와 관련한 규제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4년	있음
247	가나가와현 토사의 적정 처리에 관한 조례	1999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3호	현토정비국 기술관리과	토사의 적절한 처리를 추진하기 위해 토사 반출, 반입, 매립 등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4년	있음
248	가나가와현 수방(水防)협의회 조례	1949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50호	현토정비국 하천과	수방(水防)법 제8조 규정에 의거해, 수방 계획 및 그 밖의 수방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조사심의하는 가나가와현 수방협의회 조직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을 검토함 <상세> →2009년 12월 개정	2014년	없음
249	가나가와현 토지이용조정 조례	1996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10호	정책국 토지수자원 대책과	한정된 자원인 현토(縣土)를 적정하게 보전하고 계획적인 이용을 확보함으로써, 현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현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개발행위 등의 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을 위한 협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4년	있음

부록 2 가나가와현(神奈川県)의 조례평가 결과

구분	조례명	조례번호	소관과	조례의 개요	재검토 결과	다음 재검토 예정	재검토 규정의 유무
250	가나가와현 국토이용계획 심의회 조례	1974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53호	정책국 토지수자원 대책과	국토이용계획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해, 가나가와현 국토이용계획심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3년	없음
251	가나가와현 토지이용심사회 조례	1974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54호	정책국 토지수자원 대책과	국토이용계획법 제39조 제10항의 규정에 근거해, 가나가와현 토지이용심사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3년	없음
252	가나가와현 도시계획 심의회 조례	1969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11호	현토정비국 도시계획과	도시계획법 제77조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해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가나가와현 도시계획심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3년	없음
253	가나가와현 토지수용사업 인정심의회 조례	2002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42호	현토정비국 용지과	토지수용법 제34조7의 규정에 근거해 조사심의하는 가나가와현 토지수용사업인정심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3년	없음

부 록

구분	조례명	조례번호	소관과	조례의 개요	재검토 결과	다음 재검토 예정	재검토 규정의 유무
254	가나가와현 개발심사회 조례	1969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45호	현토정비국 건축안전과	도시계획법 제78조 제8항의 규정에 근거해, 동법에서 그 권한으로 지정한 사항 및 심사청구에 대한 재결(裁決)을 위해 설치된 가나가와현 개발심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3년	없음
255	공유지 확대 추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 제3항 단서의 규모를 정하는 조례	2003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5호	정책국 토지수자원 대책과	공유지 확대 추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정령’) 제3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근거해, 도시계획시설 등의 구역내에 소재하는 토지의 유상양도시 신고가 필요한 구역 및 규모를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3년	있음
256	도시계획법 제34조 제12호 규정에 따른 개발허가 등 기준을 정한 조례	2001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63호	현토정비국 건축지도과	도시계획법 제34조 제12호에 근거한 시가화(市街化) 조정 구역내에서의 개발 허가 등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개정을 검토함 <상세> →210년 8월 개정	2014년	있음
257	풍치 지구 조례	1970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5호	환경농정국 자연환경 보전과	도시계획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풍치지구내에서의 행위와 관련해 필요한 규제를 정하고 있다.	개정을 검토함 <상세> →2010년 8월 개정 →2015년 4월 폐지	-	있음

부록 2 가나가와현(神奈川県)의 조례평가 결과

구분	조례명	조례번호	소관과	조례의 개요	재검토 결과	다음 재검토 예정	재검토 규정의 유무
258	가나가와현 도시공원 조례	2003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5호	현토정비국 도시공원과	가나가와현이 조성한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4년	없음
259	가나가와현 경관 조례	2006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55호	현토정비국 도시정비과	경관 조성과 관련해, 기본 이념, 현 · 현민 · 사업자의 책무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경관 조성 관련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 등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6년	있음
260	가나가와현 옥외광고물 조례	1949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62호	현토정비국 도시정비과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옥외 광고물 및 옥외 광고물을 거치하는 물건에 대한 규제에 관한 사항 및 지역 경관 형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을 검토함 <상세> →2010년 12월 개정	2016년	있음
261	가나가와현 건축기준 조례	1960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28호	현토정비국 건축지도과	건축기준법에 근거해, 건축물 등의 제한 및 그 밖의 건축기준법 시행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을 검토함 <상세> →2010년 12월 개정	2014년	있음
262	가나가와현 건축심사회 조례	1950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56호	현토정비국 건축안전과	건축기준법 제83조 규정에 따라, 동법이 규정하는 동의 및 심사청구에 대한 재결(裁決)을 위해 설치된 가나가와현 건축심사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3년	없음

부 록

구분	조례명	조례번호	소관과	조례의 개요	재검토 결과	다음 재검토 예정	재검토 규정의 유무
263	가나가와현 건축사법 관계 수수료 조례	2000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14호	현토정비국 건축안전과	택지건물거래업법에서 규정하는 사무에 드는 수수료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을 검토함 <상세> →2000년 3월 개정	2013년	없음
264	가나가와현 택지조성 등 규제법 관계 수수료 조례	2000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15호	현토정비국 건축지도과	택지조성 등 규제법에 따른 신청에 대해 징수하는 수수료와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4년	없음
265	가나가와현 택지건물 거래업법 관계 수수료 조례	2000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17호	현토정비국 건설업과	택지조성 등 규제법에 따른 신청에 대해 징수하는 수수료와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4년	없음
266	가나가와현 현영주택 조례	1997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36호	현토정비국 공공주택과	공영주택법에 근거한 공영주택 및 공동시설과 주택지구개발법에 근거한 개량주택 및 지구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을 검토함 <상세> →2010년 3월 개정	2014년	있음
267	가나가와현의 후생주택에 관한 조례	1964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54호	(구) 현토 정비부 주택과	현영 후생주택의 설치, 관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폐지를 검토함 <상세> →2010년 4월 폐지	-	있음
268	가나가와현영(縣營) 리로케이션 주택 조례	1995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10호	(구) 현토 정비부 주택과	현영(縣營) 리로케이션 주택의 설치, 관리 등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폐지를 검토함 <상세> →2010년 4월 폐지	-	있음

부록 2 가나가와현(神奈川県)의 조례평가 결과

구분	조례명	조례번호	소관과	조례의 개요	재검토 결과	다음 재검토 예정	재검토 규정의 유무
269	가나가와현 임차 공공임대주택 조례	1993년 가나가 와현 조례 제1호	현토정비국 주택계획과	현 임차(借上) 공공임대주택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을 검토함 <상세> →2019년 12월 개정	2014년	있음
270	가나가와현 교육위원회 조직 조례	1999년 가나가 와현 조례 제39호	총무국 인재과	지방교육행정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단서의 규정에 근거해, 가나가와현 교육위원회의 위원 수에 대해 정하고 있다.	개정·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4년	없음
271	가나가와현립 종합교육센터 조례	2002년 가나가 와현 조례 제10호	교육위원 회 교육국 총무과	교육관계직원의 연수, 교육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기관인 가나가와현립 종합교육센터의 설치 등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3년	없음
272	가나가와현 교과용도서선 정심의회 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1964년 가나가 와현 조례 제70호	교육위원회 교육국 어린이교육 지원과	의무교육학교의 교과용 도서 무상조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 제11조 제2항에 근거해, 현 교육위원회가 설치한 교과용도서선정심의회 의 위원의 정수를 정하고 있다.	개정·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3년	없음

부 록

구분	조례명	조례번호	소관과	조례의 개요	재검토 결과	다음 재검토 예정	재검토 규정의 유무
273	가나가와현 스포츠진흥심의회 조례	1962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7호	교육위원회 교육국 스포츠과	스포츠진흥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 교육위원회가 설치하는 가나가와현 스포츠진흥심의회의 위원 정수, 임기 및 기타 심의회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0년 10월 폐지	-	없음
274	가나가와현 교육위원회 사무처리 특례에 관한 조례	1999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46호	교육위원회 교육국 행정과	지방교육행정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 가나가와현 교육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시정촌(市町村)이 처리하는 것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4년	없음
275	시정촌(市町村)립 학교직원 정수 조례	1951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40호	총무국 인재과, 교육위원회 교육국 소중학교 인사과	지방교육행정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1조 규정에 근거해, 현비(縣費)부담교직원의 정수를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4년	없음
276	교육장의 급여 등에 관한 조례	1949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42호	총무국 인재과	지방자치법 제2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해, 교육장의 급여, 수당 및 여비와 그 지급 방법에 대해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3년	없음

부록 2 가나가와현(神奈川県)의 조례평가 결과

구분	조례명	조례번호	소관과	조례의 개요	재검토 결과	다음 재검토 예정	재검토 규정의 유무
277	학교 직원의 급여 등에 관한 조례	1957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56호	총무국 노무급여과	지방공무원법 제24조 제6항, 지방교육행정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시정촌(市町村)립학교직원의 급여부담법 제3조의 규정에 근거한 현립학교(대학교 제외)직원 및 시정촌립학교직원의 급여부담법 제1조 및 제2조에서 규정하는 직원의 급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3년	없음
278	공립 의무교육학교 등의 교육직원의 급여 등에 관한 특별조치에 관한 조례	1971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67호	총무국 노무급여과	지방공무원법 제24조 제6항, 지방교육행정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2조, 공립 의무교육학교 등의 교육직원의 급여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해, 모든 공립 의무교육학교 등의 교육직원의 급여와 그 밖의 근무 조건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3년	없음

부 록

구분	조례명	조례번호	소관과	조례의 개요	재검토 결과	다음 재검토 예정	재검토 규정의 유무
279	학교 직원의 근무 시간, 휴가 등에 관한 조례	1957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57호	총무국 노무급여과	지방공무원법 제24조 제6항 및 지방교육행정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2조 규정에 의거해, 현립학교(대학교 제외)직원(이하 ‘현립학교직원’) 및 시정촌(市町村)립 학교직원의 급여부담법 제1조 및 제2조에서 규정하는 직원(이하 ‘현비부담교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3년	없음
280	시정촌(市町村)립 학교 현비부담교직원의 분한(分限)에 관한 조례	1956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35호	총무국 인재과	지방교육행정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해, 시정촌(市町村)립 학교직원의 급여부담법 제1조 및 제2조에서 규정하는 직원(이하 ‘현비부담교직원’)의 뜻에 반하는 휴가 및 급여삭감의 이유, 현비부담교직원의 뜻에 반하는 강직, 면직, 휴직 및 급여삭감의 절차 및 효과와 현비부담교직원의 실직의 예외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3년	없음

부록 2 가나가와현(神奈川県)의 조례평가 결과

구분	조례명	조례번호	소관과	조례의 개요	재검토 결과	다음 재검토 예정	재검토 규정의 유무
281	시정촌(市町村)립 학교 현비부담교직원의 징계 절차 및 효과에 관한 조례	1956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36호	총무국 인재과	지방교육행정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3항에 근거해, 시정촌(市町村)립학교교직원의 급여부담법 제1조 및 제2조에서 규정하는 직원의 징계 절차 및 효과에 대해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3년	없음
282	외국 지방공공단체 기관 등에 파견된 시정촌(市町村)립 학교 현비부담교직원의 처우 등에 관한 조례	1988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7호	총무국 인재과	외국 지방공공단체 기관 등에 파견된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처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7조 및 부칙 제2조의 규정에 근거해, 외국 지방공공단체 기관 등에 파견된 시정촌(市町村)립학교교직원의 급여부담법 제1조 및 제2조에 규정된 직원(이하 ‘현비부담교직원’)의 처우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3년	없음
283	가나가와현립 고등학교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1964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68호	교육위원회 교육국 행정과	가나가와현이 설립한 고등학교, 중등교육학교 및 특별지원학교의 명칭 및 위치에 대해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3년	없음

부 록

구분	조례명	조례번호	소관과	조례의 개요	재검토 결과	다음 재검토 예정	재검토 규정의 유무
284	현립학교 수업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	1958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3호	교육위원회 교육국 학교경리과	지방자치법 제225조 및 제227조와 학교교육법 제6조의 규정에 근거해, 가나가와현립 고등학교, 중등교육학교 및 특별지원학교의 수업료 및 기타 비용의 징수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4년	없음
285	현립학교의 증명서 교부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	1955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12호	교육위원회 교육국 학교경리과	현립학교의 학생이었던 자가 재학기간 상황 등을 증명하기 위해 서류를 발급받을 시의 절차 및 수수료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4년	없음
286	가나가와현 장학금 대부 조례	1964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69호	교육위원회 교육국 학교경리과	가나가와현 교육위원회가 소장(소관)하는 장학금의 대부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을 검토함 <상세> →검토 결과 개정필요 없음	2014년	있음
287	가나가와현 평생 학습 심의회 조례	1992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9호	교육위원회 교육국 생애학습과	생애(평생)학습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체계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근거해, 현 교육위원회에 설치하는 가나가와현 생애학습심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4년	없음

부록 2 가나가와현(神奈川県)의 조례평가 결과

구분	조례명	조례번호	소관과	조례의 개요	재검토 결과	다음 재검토 예정	재검토 규정의 유무
288	가나가와현 사회교육위원회 정수 및 임기에 관한 조례	1949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52호	(旧) 교육위원회 교육국 생애학습문화재과	사회교육법 제15조 제1항에 근거해, 현의 교육위원회에 설치하는 사회교육위원회의 정수 및 임기와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폐지를 검토함 <상세> →2010년 4월 폐지	-	없음
289	가나가와 현립 도서관 조례	1958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32호	교육위원회 교육국 생애학습과	현민의 지식 및 교양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교육시설인 가나가와현립 도서관의 설치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4년	없음
290	가나가와 현립 가나자와(金沢) 문고 조례	1967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5호	교육위원회 교육국 생애학습과	현민의 지식 및 교양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교육시설인 가나가와현립 가나자와(金沢)문고의 설치, 관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4년	없음
291	가나가와 현립 박물관 조례	1966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43호	교육위원회 교육국 생애학습과	현민의 지식 및 교양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교육시설인 가나가와현립 박물관의 설치, 관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4년	없음
292	가나가와현 현립 근대미술관 조례	1967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6호	교육위원회 교육국 생애학습과	현민의 지식 및 교양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교육시설인 가나가와현립 근대미술관의 설치, 관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4년	없음

부 록

구분	조례명	조례번호	소관과	조례의 개요	재검토 결과	다음 재검토 예정	재검토 규정의 유무
293	가나가와 현립 만남의 마을(ふれあいの村) 조례	1990년 가나가와 현 조례 제26호	교육위원회 교육국 교육기획 지원과	아동, 학생, 청소년 등이 자연을 체험하고 타인과의 교류를 통해 자립심, 협동심 등을 기를 수 있는 어우러짐 활동을 위한 시설로써의 가나가와현립 만남의 마을(ふれあいの村)의 설치, 관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3년	없음
294	가나가와 현립 스포츠 회관 조례	1984년 가나가와 현 조례 제4호	교육위원회 교육국 스포츠과	스포츠의 진흥을 도모하고, 현민 심신의 건전한 발달에 기여하기 위한 시설인 가나가와현립 스포츠회관의 설치, 관리 등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4년	없음
295	가나가와 현립 무도(武道)관 조례	1982년 가나가와 현 조례 제4호	교육위원회 교육국 스포츠과	무도(武道)의 진흥을 도모하고, 현민의 심신의 건전한 발달에 기여하기 위한 시설인 가나가와현립 무도관의 설치, 관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4년	없음

부록 2 가나가와현(神奈川県)의 조례평가 결과

구분	조례명	조례번호	소관과	조례의 개요	재검토 결과	다음 재검토 예정	재검토 규정의 유무
296	가나가와현립 체육센터 및 가나가와현립 세이쇼(西湘)지구 체육센터에 관한 조례	1965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26호	교육위원회 교육국 스포츠과	체육의 진흥을 도모하고 현민 심신의 건전한 발달에 기여하기 위한 시설인 가나가와현립 체육센터 및 가나가와현립 세이쇼(西湘)지구 체육센터의 설치, 관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4년	없음
297	가나가와 현립 사가미(相模)호 조정장 조례	1963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40호	교육위원회 교육국 스포츠과	보트 경기 등을 통한 현민의 스포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인 가나가와현립 사가미(相模)호 조정장의 설치, 관리 등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4년	없음
298	가나가와 현립 이세하라(伊勢原) 사격장 조례	1997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11호	교육위원회 교육국 스포츠과	현민에게 사격 관련 지식의 습득 및 기술의 향상을 위한 장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현민의 스포츠 진흥에 기여하기 위한 시설인 가나가와현립 이세하라(伊勢原) 사격장의 설치, 관리 등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을 검토함 <상세> →2010년 3월 개정	2014년	없음

부 록

구분	조례명	조례번호	소관과	조례의 개요	재검토 결과	다음 재검토 예정	재검토 규정의 유무
299	가나가와현립 산악스포츠센터 조례	1997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12호	교육위원회 교육국 스포츠과	현민에게 등산 관련 지식의 습득, 기술의 향상 및 레크레이션의 장을 제공하고, 이로써 현민의 스포츠 진흥에 기여하기 위한 시설인 가나가와현립 산악스포츠센터의 설치, 관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4년	없음
300	가나가와현 문화재 보호 조례	1955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13호	교육위원회 교육국 문화유산과	문화재보호법(이하 ‘법’) 제18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 문부과학대신이 지정한 문화재 이외의 문화재 중에서 현 관할구역내에 존재하며 현에 중요한 문화재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4년	있음
301	가나가와현 문화재 보호 심의회 조례	1976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5호	교육위원회 교육국 문화유산과	문화재보호법 제190조 제1항에 근거해, 현 교육위원회에 설치된 가나가와현 문화재보호심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4년	없음
302	공안 위원회 위원의 복무 선서에 관한 조례	1954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34호	경찰본부 총무부 총무과	경찰법 제42조에서 준용하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규정에 근거해, 공안위원회 위원의 복무 선서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4년	없음

부록 2 가나가와현(神奈川県)의 조례평가 결과

구분	조례명	조례번호	소관과	조례의 개요	재검토 결과	다음 재검토 예정	재검토 규정의 유무
303	경찰조직에 관한 조례	1954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28호	경찰본부 경무부 경무과	경찰법 제47조 제4항 및 제53조 제4항의 규정에 근거해, 경찰조직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4년	없음
304	가나가와현 경찰서 협의회 조례	2001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11호	경찰본부 총무부 광보현민과	경찰법 제53조2 제4항의 규정에 근거해, 가나가와현 경찰서협의회의 설치, 위원 정수, 임기 및 기타 경찰서협의회와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4년	없음
305	가나가와현 경찰관에 대한 지급품 및 대여 물품에 관한 조례	1954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29호	경찰본부 총무부 장비과	가나가와현 경찰관에게 그 직무수행상 필요한 복장을 지급하고 장비물품을 대여하는 것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4년	없음
306	가나가와현경찰 교통순시원에 대한 지급품 및 대여품에 관한 조례	1970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47호	경찰본부 총무부 장비과	가나가와현경찰 교통순시원(순찰원)에게 그 직무수행상 필요한 복장을 지급하고, 장비물품을 대여하는 것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4년	없음
307	가나가와현 유치 시설 시찰 위원회 조례	2007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8호	경찰본부 총무부 유치관리과	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21조 제6항의 규정에 근거해, 유치시설시찰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7년	없음

부 록

구분	조례명	조례번호	소관과	조례의 개요	재검토 결과	다음 재검토 예정	재검토 규정의 유무
308	가나가와 현 지방 경찰 직원 정수 조례	1954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32호	총무국 인재과, 경찰본부 경무부 경무과	경찰법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해, 지방경찰직원 정수의 규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개정을 검토함 <상세> →2012년 3월 개정	2014년	없음
309	경찰관 직무에 협력원조한 자에 대한 재해급부에 관한 조례	1985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30호	경찰본부 경무부 경무과	경찰관의 직무에 협조한 자의 재해(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로 인한 요양 및 그 밖의 급부와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4년	있음
310	집회, 집단 행진 및 집단 시위 운동에 관한 조례	1950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69호	경찰본부 경비부 경비과	집회, 단체행진 및 집단시위운동과 관련해, 공공의 안전을 보호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4년	있음
311	가나가와현 민폐행위 방지 조례	1963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26호	경찰본부 생활안전부 생활안전 총무과	현민 및 체류자의 생활의 평온을 유지하기 위해, 난폭행위, 치한 및 도촬 등의 난잡행위, 풍속환경을 저해하는 행위 등 대중에게 현저하게 민폐를 끼치는 행위의 방지 및 단속 등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4년	있음
312	확성기 사용으로 인한 폭소음 규제에 관한 조례	1992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36호	경찰본부 경비부 공안제일과	현민의 일상생활을 위협할만한 확성기의 사용에 대해 필요한 규제를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4년	있음

부록 2 가나가와현(神奈川県)의 조례평가 결과

구분	조례명	조례번호	소관과	조례의 개요	재검토 결과	다음 재검토 예정	재검토 규정의 유무
313	풍속영업 등의 규제 및 업무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조례	1984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44호	경찰본부 생활안전부 생활안전총무과	풍속영업 등의 규제 및 업무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근거해, 풍속영업 등의 영업장소와 영업시간의 제한, 풍속영업자의 준수사항, 풍속영업 허가신청 수수료 등에 대해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4년	있음
314	투견, 투계, 투우 등의 방지에 관한 조례	1956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40호	경찰본부 생활안전부 생활경제과	난폭하고 잔혹한 풍조를 조성할 우려가 있는 투견, 투계, 투우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4년	있음
315	가나가와현 도로교통법 관계 수수료 조례	2000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18호	경찰본부 교통부 교통총무과	도로교통법 제112호(면허 등에 관한 수수료)에서 규정하는 사무에 드는 수수료의 징수와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4년	있음
316	가나가와현 폭주족 등의 추방 촉진에 관한 조례	2003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73호	경찰본부 교통부 교통수사과	폭주족 및 폭주행위를 하는 자의 추방 촉진과 관련해, 현, 현민, 보호자 등의 책무 및 폭주행위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4년	있음

부 록

구분	조례명	조례번호	소관과	조례의 개요	재검토 결과	다음 재검토 예정	재검토 규정의 유무
317	자동차 보관장소 증명서 교부 신청 수수료 등 징수 조례	1972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12호	경찰본부 교통부 주차대책과	경찰서장이 시행하는 자동차 보관장소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관장소법’)에 관한 사무에 소요되는 수수료의 징수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4년	없음
318	가나가와현 경찰교통 안전센터의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1967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37호	경찰본부 교통부 교통총무과	가나가와현 경찰교통안전센터에서 실시하는 운전자의 성격 등에 관한 적성검사의 수수료 징수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 · 폐지 필요없음 <상세>	2014년	없음